

# 老父母 虐待 實態에 관한 事例研究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

曹 愛 姐

金 勝 權

金 柔 敬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 리 말

인구구조의 변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한 高齡層 人口의 증가로 우리 나라도 老齡化 社會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고령층 인구의 증가는 그 만큼 身體的, 經濟的, 心理的으로 의존성이 높은 인구가 많아짐을 뜻하며, 이는 노인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원의 扶養負擔을 증가시켜 老父母 虐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아직까지 상당수의 노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고, 노인과 그들을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社會的 支援策이 미비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부모 학대 문제는 점차 심각한 社會問題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서구 선진국에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은 197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여러 측면에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노부모 학대에 관한 문제는 가족의 私的인 문제로써 외부의 노출을 꺼려하고, 은폐하려는 文化的 特性으로 社會問題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이 시행된 후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주요 관심은 대부분 아동학대와 아내학대에 관한 것으로서 가정폭력의 또 다른 유형인 성인자녀에 의한 老父母 虐待에 관해서는 큰 관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존성 높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核家族化, 취업여성의 증가, 家族扶養機能의 弱化, 價値觀 變化 등으로 인하여 노인학대 문제는 점차 심각해져 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 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原因과 對策

은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研究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私的 領域인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老父母 虐待 實態를 파악하여 정책차원에서의 피해노인 및 노부모 부양 자녀를 위한 支援對策 등을 강구하고, 아울러 노부모 학대 豫防對策을 마련하기 위한 目的으로 시도된 것이다.

본 연구가 노인과 그들 가족의 삶의 質을 向上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相關분야 연구자나 政策立案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지조사를 위해 행정적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保健福祉部와 相關 市·區廳 關係官, 그리고 老人(綜合)福祉會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면접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조사원들에게도 심심한 辭意를 표한다. 아울러 조속한 자료처리를 하여주신 정보통계실의 李蓮喜 主任研究員, 朴大順 主任研究助員, 그리고 보고서의 원고정리와 편집을 성실하게 도와준 孫淑子 主任研究助員에게도 감사를 표하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본 보고서를 검독하여 주신 鄭京姬 責任研究員과 李三植 責任研究員에게 感謝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들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본 연구원의 公式 見解가 아님을 밝혀두는 바이다.

1999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鄭 敬 培

# 目 次

要 約 .....	11
第1章 序 論 .....	31
第1節 研究背景 및 目的 .....	31
第2節 研究方法 .....	33
第3節 研究內容 .....	35
第4節 研究의 制限點 .....	36
第2章 理論的 考察 .....	38
第1節 老人虐待의 概念 및 類型 .....	38
第2節 老人虐待 關聯 先行研究 .....	42
第3節 本 研究를 위한 老父母 虐待의 概念 .....	54
第3章 老父母虐待 實態調查 應答者의 特性 .....	56
第1節 老父母-子女關係 把握을 위한 豫備調查 應答者의 特性 .....	56
第2節 老父母-子女關係 實態調查 應答者의 特性 .....	58
第4章 老父母 虐待 實態 .....	76
第1節 老父母 虐待 加害者의 特性 .....	76
第2節 老父母 虐待 實態 .....	83
第5章 老父母 虐待 關聯 法·制度의 認知 및 態度 .....	135
第1節 老父母 虐待 關聯 法·制度 .....	135
第2節 老父母 虐待 關聯 法·制度의 認知 .....	139
第3節 老父母 虐待에 대한 老人의 態度 .....	143

第6章 老父母 虐待 豫防 및 治療對策 .....	162
第1節 老父母 虐待의 豫防對策 .....	162
第2節 老父母 扶養家庭의 支援 .....	164
第3節 老父母 虐待의 被害者 保護對策 .....	164
第4節 老父母 虐待 加害者 處罰 .....	165
第5節 老父母 虐待의 關聯 法の 補完 .....	166
第7章 要約 및 結論 .....	167
參 考 文 獻 .....	170
附 錄 .....	175

## 表 目 次

〈表 2- 1〉 國內外 研究에서의 老人虐待의 概念 .....	41
〈表 2- 2〉 老人虐待 類型別 經驗率 .....	47
〈表 2- 3〉 老人虐待 類型別 分布 .....	51
〈表 3- 1〉 全體 應答老人의 性別 分布 .....	56
〈表 3- 2〉 全體 應答老人의 性別 特性 .....	57
〈表 3- 3〉 被害老人의 性別 特性 .....	59
〈表 3- 4〉 被害老人의 性別 住宅所有 形態 .....	60
〈表 3- 5〉 被害老人의 性別 住宅名義 .....	61
〈表 3- 6〉 被害老人의 住宅所有別 住宅名義 .....	61
〈表 3- 7〉 住宅名義別 不動產 時價 .....	62

〈表 3- 8〉 被害老人의 性別 動産有無 .....	63
〈表 3- 9〉 被害老人의 性別 收入源別 比率 .....	64
〈表 3-10〉 被害老人의 性別 收入源數別 分布 .....	65
〈表 3-11〉 被害老人의 特性別 平均 收入源 數 .....	65
〈表 3-12〉 被害老人의 性別 가장 큰 收入源 .....	66
〈表 3-13〉 全體 被害老人中 子女로부터 補助받는 老人의 比率 .....	68
〈表 3-14〉 被害老人의 特性別 子女로부터의 補助額 .....	69
〈表 3-15〉 被害老人의 性別, 年齡別 主觀的 經濟狀態 .....	70
〈表 3-16〉 被害老人의 特性別 日常生活 遂行能力 .....	72
〈表 3-17〉 被害老人의 特性別 手段的 日常生活 遂行能力 .....	73
〈表 3-18〉 被害老人의 性別, 年齡別 主觀的 健康狀態 .....	74
〈表 4- 1〉 加害者의 性別 特性 .....	77
〈表 4- 2〉 加害者의 性別 就業與否 및 職種 .....	78
〈表 4- 3〉 加害者의 特性別 老父母와의 平素 關係 .....	80
〈表 4- 4〉 加害者의 就業與否 및 同居與否別 老父母와의 平素 關係 .....	80
〈表 4- 5〉 加害者의 特性別 成長時 家庭暴力 目擊 및 經驗比率 .....	82
〈表 4- 6〉 加害者의 就業與否別 成長時 家庭暴力 目擊 및 經驗比率 .....	83
〈表 4- 7〉 全體老人의 特性別 虐待經驗 與否 .....	84
〈表 4- 8〉 全體老人의 特性別 虐待經驗 比率 .....	85
〈表 4- 9〉 全體 應答老人의 性別 虐待類型別 虐待 經驗比率 .....	86
〈表 4-10〉 被害老人의 性別 虐待·暴力 平均 經驗 回數 .....	87
〈表 4-11〉 加害者의 特性別 老父母虐待 頻度 .....	88
〈表 4-12〉 加害者의 就業與否 및 同居與否別 老父母虐待 頻度 .....	89
〈表 4-13〉 加害者의 特性別 老父母虐待 理由 .....	90
〈表 4-14〉 加害者의 就業與否 및 同居與否別 老父母虐待 理由 .....	92
〈表 4-15〉 虐待 結果 나타난 身體的 症狀 有無 .....	93

〈表 4-16〉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身體的 症狀 有無 .....	94
〈表 4-17〉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身體的 症狀 有無 .....	94
〈表 4-18〉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	95
〈表 4-19〉虐待類型別 精神的 症狀 有無 .....	96
〈表 4-20〉性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	97
〈表 4-21〉年齡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	98
〈表 4-22〉身體的 健康狀態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	99
〈表 4-23〉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有無 .....	100
〈表 4-24〉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類型 .....	100
〈表 4-25〉加害者數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有無 및 類型 .....	101
〈表 4-26〉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身體的·精神的 症狀이 있는 경우 醫療處置 經驗率 .....	102
〈表 4-27〉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醫療處置 經驗率 .....	103
〈表 4-28〉加害者數 및 虐待頻度別 醫療處置 經驗率 .....	104
〈表 4-29〉社會人口學的 特性別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方法 .....	106
〈表 4-30〉勤勞所得 有無, 經濟狀態 및 健康狀態別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方法 .....	107
〈表 4-31〉加害者數 및 虐待頻度別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方法 .....	108
〈表 4-32〉虐待類型 및 虐待經驗別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方法 .....	109
〈表 4-33〉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被害老人의 對應方法 .....	110
〈表 4-34〉虐待當時 老人이 참는 理由 .....	113
〈表 4-35〉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참는 理由 .....	114

〈表 4-36〉 加害者數別 虐待 被害老人이 참는 理由 .....	115
〈表 4-37〉 虐待類型 및 虐待頻度別 虐待 被害老人이 참는 理由 ..	116
〈表 4-38〉 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虐待 被害老人이 참는 理由 .....	117
〈表 4-39〉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加害者와의 同居率 .....	118
〈表 4-40〉 勤勞所得 有無, 經濟狀態 및 健康狀態別 虐待 被害老人의 加害者와의 同居率 .....	120
〈表 4-41〉 虐待頻度別 虐待 被害老人의 加害者와의 同居率 .....	120
〈表 4-42〉 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別 加害者와의 同居率 .....	121
〈表 4-43〉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警察 申告經驗率 .....	122
〈表 4-44〉 勤勞所得 有無, 經濟狀態 및 健康狀態別 虐待 被害老人의 警察 申告經驗率 .....	123
〈表 4-45〉 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同居與否別 被害老人의 警察申告 經驗率 .....	124
〈表 5- 1〉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의 認知率1) .....	140
〈表 5- 2〉 家庭暴力被害者의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 認知率 .....	141
〈表 5- 3〉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의 認知經路 .....	141
〈表 5- 4〉 家庭暴力被害 對象者別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 認知經路 .....	142
〈表 5- 5〉 虐待 被害老人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本人家庭 內 老人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	146
〈表 5- 6〉 虐待 被害老人의 健康狀態別 本人家庭 內 老人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	147



〈表 5- 7〉 虐待 被害老人의 虐待類型, 虐待經驗數 및 加害者數別 本人家庭 內 老人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 149	149
〈表 5- 8〉 虐待 被害老人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이웃家庭 內 老人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 151	151
〈表 5- 9〉 虐待 被害老人의 虐待類型, 虐待經驗數 및 加害者數別 이웃家庭 內 老人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 153	153
〈表 5-10〉 虐待 被害老人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老人被害者保護施設 必要率 및 入所意向 ····· 155	155
〈表 5-11〉 虐待 被害老人의 健康狀態別 老人被害者 保護施設 必要率 및 入所意向 ····· 157	157
〈表 5-12〉 虐待 被害老人의 虐待類型, 虐待經驗數 및 加害者數別 老人被害者 保護施設 必要率 및 入所意向 ····· 158	158
〈表 5-13〉 虐待 被害老人의 老父母 虐待 豫防을 위한 建議內容 ··· 160	160

## 要約

### 1. 研究目的 및 方法

- 本 研究에서는 成人子女의 老父母 虐待의 實態를 파악하여 학대피해 노인 및 노부모 부양자녀를 위한 支援對策을 강구하고, 노부모 학대의 예방대책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가족원간의 유대강화 및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 설문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 老父母-子女關係 실태파악을 위한 豫備調査 實施: 일차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를 自記式 記入方法과 面接調査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함.
  - 예비조사 결과에서 가족의 虐待經驗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2次的으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를 본 연구진 및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로 실시함.
  - 본 조사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설문서를 통한 직접 면접조사로서 훈련된 지도원급 조사원 2명과 본 연구진 3명에 의해 1999. 5. 18~6. 9 기간 동안 전국 6개 대도시의 노인(종합)복지관 각 2개소씩을 선정하여 총 12개 老人(綜合)福祉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임.
  - 본 조사결과 6개 대도시 12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총 865명에 대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와 71명에 대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가 완료되었음.

## 2. 主要 研究結果

### 가. 老父母-子女關係 豫備調査 應答對象의 特性

- 전국 6개 대도시의 각 2개소씩 1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865명 중 남자노인이 205명(23.7%), 여자노인이 660명(76.3%)으로 대부분이 여자노인들이었음.
  - 이들 응답노인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74세가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75세 이상은 20.9%이었음.
  - 이들 노인들의 平均年齡을 보면 남자노인들은 71.9세, 여자노인들은 71.0세로 남자노인들이 여자노인들 보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더 높았음.
  - 이들의 教育水準을 보면 전체 응답노인의 79.9%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었으며, 고등학교 이상이 20.1%이었으며, 여자노인들 보다 남자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았음.
  - 結婚狀態는 유배우 상태가 43.7%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의 비율(56.3%)이 더 높고, 조사당시 가구유형은 노인들만이 사는 노인단독가구는 50.6%이었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 및 기타 가구는 49.4%이었음.

### 나. 老父母-子女關係 實態調査 應答對象의 特性

#### 1) 一般特性

- 피해노인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74세가 74.6%, 75세 이상의 고령층은 25.4%임.
  - 전체 노인 평균 연령은 71.2세이나 피해노인들은 72.0세이며, 전

체 노인 중 남자노인은 71.9세, 여자노인은 71.0세이었으나 피해 노인 중에서는 남자노인이 73.7세, 여자노인은 71.5세로 모두 피해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았음.

-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中學校 以下の 學歷(88.7%)이며, 결혼상태는 유배우 상태인 경우가 31.0%로 2/3 이상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임. 남자노인의 경우 有配偶率이 41.2%인데 비해 여자노인의 유배우율은 27.8%임. 이를 전체 노인들과 비교해 볼 때 교육수준은 低學歷層은 피해노인들의 비율이 더 높았고, 고학력층은 전체 노인들의 비율이 더 높으며, 결혼상태별로는 전체 노인보다 피해노인의 無配偶率이 더 높았음.
- 가구유형은 노인 혼자 살고있거나 노인부부만이 살고 있는 노인 단독가구는 40.9%이었으며, 전체 노인에 비해 자녀동거 노인의 비율이 더 높은 편임.

## 2) 經濟狀態

- 노인학대 피해노인들의 自家 所有率은 57.4%, 전세나 월세는 42.6%로 남자노인들은 자가비율이 62.5%이고 여자노인들은 55.8%로 남자노인들의 자가비율이 높았음.
- 노인학대 피해노인들 중 83.1%가 動産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자노인들의 72.6%가 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반면, 여자노인들의 경우는 84.4%가 非所有하고 있어 성별 경제상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3) 收入源

- 피해노인들의 수입원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勤勞所得은 전체

피해노인의 7.8%가, 저축·증권 등의 이익배당으로 인한 수입은 21.9%, 부동산 임대료와 生活保護對象者나 老齡手當에 의한 수입은 각각 7.8%이었으며, 자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노인은 70.3%나 되었음.

- 성별로는 남자노인들은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저축·증권 利益配當과 年金으로 인한 수입에서 여자노인들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여자노인들은 不動產 賃貸料와 자녀로부터의 보조, 생활보호대상·노령수당 등에서 남자노인들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 － 전체 收入源 중 이들 피해노인들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는 子女로부터의 보조로서 전체 노인의 60.9%가 이에 해당되었음.
  -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43.8%, 저축·증권이자 25.0%, 本人 및 配偶者 勤勞所得이 12.5% 등이었으나 여자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66.7%로 남자노인들 보다 22.9%포인트나 높았음. 생활보호대상자·노령수당 지급받는 대상도 여자노인들이 더욱 많았음. 이 외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소득은 2.1%로 남자노인들 보다 10.4%포인트나 낮았으며, 저축·증권 이자 등도 남자노인들 보다 10.4%포인트 낮았음(남자노인: 25.0%, 여자노인: 14.6%).
  - 피해노인의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보조 36.4%, 저축·증권 이자 31.8%,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13.6%의 순으로, 무배우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보조 73.8%, 저축·증권 이자와 생활보호대상·노령수당은 각각 9.5%이었음.

#### 4) 主觀的 經濟狀態

- 노부모학대 피해노인들이 생각하는 主觀的인 經濟狀態는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1%이었고, 전체 피해노인의 47.1%가 자신의 경제상태는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음.
-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5.0%, ‘나쁜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43.7%인데 비해 여자노인의 경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17.3%,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자노인들이,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자노인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5) 健康狀態

##### (가) 日常生活 遂行能力

- 전체 피해노인들 중 62.3%는 日常生活 遂行能力에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應答하였으며, 나머지 37.7%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 문제가 있는 노인들로 약간 어렵다와 보통이다는 30.4%,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는 전체 피해노인의 7.2%이었음.
- 被害老人들의 성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보면 남자노인들의 경우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 17.7%인데 비해, 여자노인들은 3.8%이었으며,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는 비율은 65~74세가 5.9%, 75세 이상은 11.2%이었음.

## (나) 手段的 日常生活 遂行能力

- 전체중 노인 42.0%가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이 매우 어렵다거나 전혀 할 수 없다는 14.5%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피해노인들의 性別로는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는 남자 노인이 23.6%인데 비해 여자노인들은 11.5%로 남자노인들이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낮은 연령층일수록 높았으며,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는 75세 이상의 高齡層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음.

## (다) 主觀的 健康狀態

- 학대노인들이 평가하고 있는 자신의 健康狀態는 56.5%가 나쁜 편이라고 스스로 評價하고 있었음.
- 性別로는 男子老人들은 35.2%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평가한데 비해, 여성노인들은 63.4%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어 性別에 따른 健康狀態의 主觀的 認識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음.
- 연령별로는 低年齡層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65~74세는 62.8%가, 그리고 75세 이상은 38.9%가 나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다. 老父母虐待의 定義

- 本 研究에서의 老父母虐待는 대부분의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정의와는 달리 配偶者의 虐待는 제외하였으며, 자녀 및 그 배우자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기타 친·인척으로써 주로 卑屬에 속하는 대상으로 限定하였음.
- 虐待類型에 있어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형으로서 身體的 虐待, 言語·心理的 虐待, 經濟的 榨取, 放任 및 其他 등으로 구분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노부모학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子女 및 그 配偶者 또는 노인을 扶養하는 其他 家族員으로써 주로 卑屬에 속하는 가족원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에 관한 학대를 받은 대상으로 하였음.

라. 老父母虐待 實態

1) 老父母虐待 加害者의 一般特性

- 加害者의 年齡은 40대는 전체 응답자의 48.4%, 30대 이하는 26.9%, 그리고 50대 이상은 24.7%이었음.
  - 남자 40대는 46.5%, 50대 이상 27.9%, 그리고 30대 이하 25.6%의 순인데 비해, 여자는 40대 50.0%, 30대 이하 28.0%, 그리고 50대 이상은 22.0%로 남자보다는 40대 이하의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의 비율은 낮은 편임.
- 教育수준은 71.4%가 高等學校 以上の 學歷者로서 남자는 67.4%, 여자는 75.0%이었으며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학



력 비율이 높은 편이었음. 또한 結婚狀態는 91.1%가 유배우 상태로 남자보다는 여자의 有配偶 상태가 더 높았고,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이 42.6%, 며느리가 44.7%, 딸·사위 등은 12.8%로써 노인의 자녀가 51.1%, 자녀의 배우자 및 기타는 48.9%이었음.

- 이들의 就業率은 48.8%로 남자 가해자는 59.0%가, 그리고 여자 가해자는 40.4%가 취업 중이었음.
  - 가해자의 職種別로는 서비스·판매직이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단순노무직이 24.4%, 고위 관리직 및 준 전문직이 19.5%, 그리고 事務職 12.2% 순서이었음.
  - 성별로는 남자는 單純勞務職의 비율이 가장 높아 34.8%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서비스·판매직과 고위관리직 및 준전문직이 각각 33.3%로 가장 높으며, 그 외 무급가족종사자, 단순노무직의 순으로 되어 있음.

## 2) 加害者와 老父母와의 平素 關係

- 가해자와 노부모와의 평소관계는 전체적으로는 나쁜 편인 경우가 34.0%로 老父母와의 家族關係別로 보면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나쁜 편이 가장 높아 45.0%이었으며, 며느리인 경우에는 33.3%, 기타 가족원의 경우는 나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음.
- 加害者의 特性別 노부모와의 평소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여자일 때 보다는 남자일 경우, 연령이 40대 이하일 경우 보다는 50세 이상인 경우에 노부모와의 평소 관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학교 이하의 低學歷 水準일 경우에, 유배우 보다는 무배우일 경우에, 취업중인 경우 노부모와의 관계가 나

쁜 편은 28.6%이었으나 비취업중일 경우에는 38.6%로 부양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노부모와의 관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 현재 동거중인 경우에는 31.8%가 나쁜 경우이었으나非同居중인 경우에는 36.0%로 비동거중일 경우 가해자와 노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나쁜 것으로 보임.

### 3) 加害者 成長時 虐待目擊 및 經驗與否

－ 전체 가해자중 성장시 家庭暴力을 目擊한 비율은 26.8%이었으며, 실제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17.5%에 달하였음.

- 남녀 모두 가정폭력을 경험한 비율에 비하여 목격하고 성장한 비율이 높았음. 남자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가 27.5%로 여자 가해자의 25.0% 보다 높은 편이었고, 실제로 경험한 경우는 男子 加害者(15.0%) 보다 여자 가해자가 높은 비율(23.5%)이었음.
- 연령별로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성장한 경우는 30대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높았고, 경험한 비율은 高年齡層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졌음.
-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이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층 보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경험한 비율이 모두 높은 수준이었음.
- 가해자가 就業者일 경우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35.7%, 경험한 경우는 10.7%이었고, 비취업자인 경우는 목격한 경우보다 (20.8%) 실제로 경험한 경우가 비율이 더 높아 25.0%로 가해자 4명중 1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4) 老父母 虐待實態

##### (가) 全體 老人 應答者의 老父母 虐待 經驗

- 전체 응답노인중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그 가족원으로부터 虐待를 받은 經驗이 있었음.
  - 남자노인들은 8.3%, 여자노인들은 8.2%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지는 않았음. 연령별로는 高齡일수록 높은 虐待經驗率을 보여 7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7.7%,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9.9%가 학대를 경험하였음.
  -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 低學歷層에서의 학대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남(중학교 이하: 9.3%, 고등학교 이상: 4.7%).
  - 유배우는 5.9%가, 그리고 무배우자는 10.2%가 학대 경험이 있었으며, 老人單獨家口는 6.7%가,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가구는 10.0%가 학대를 경험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부모부양 부담에 따라 자녀들로부터의 虐待可能性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음.
- 피해노인들의 性別 年齡別 학대경험률을 보면 65~74세 노인들의 경우 남자노인들 중에는 5.4%가, 그리고 여자노인들 중에서는 8.4%가 경험하고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남자노인들 중에서는 16.1%가 경험한 반면, 여자노인들 중에서는 7.2%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남자노인들의 학대 경험률이 높았음.

##### (나) 老父母 虐待 類型別 經驗比率 및 回數

- 전체 응답노인의 虐待類型別 經驗比率를 보면, 身體的 虐待·暴力의 경우는 전체 노인의 0.3%만이 경험하여 학대유형 중 가장 낮

은 비율을 보였고, 言語·心理的 虐待의 경우는 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음. 그 외 經濟的 搾取는 2.1%, 放任은 2.5%, 그리고 기타 학대 경험비율은 1.0%이었음.

- 지난 1년동안 평균 3.6회 정도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남자노인은 4.1회, 여자노인은 3.4회로 남자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는 횟수가 더 많았음.
- 虐待類型別로는 신체적 학대·폭력은 남녀 노인 모두 1.0회로 가장 적은 회수를 보여주었고, 언어·심리적 학대는 2.7회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들 보다 약간 더 많은 회수를 경험하였음. 經濟的 搾取는 남자노인은 1.0회인데 비해 여자노인들은 1.3회로 남자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착취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은 여자노인들 보다는 남자노인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남자노인: 1.8회, 여자노인: 1.5회).

(다) 老父母 虐待 頻度 및 理由

- 老父母 虐待의 發生頻度を 보면, 전체 노부모 학대 건수중 44.4%는 ‘거의 매일’, 24.7%는 ‘2~3개월에 1회’, 그리고 12.3%는 ‘월 1~2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거의 매일 학대가 발생한다는 비율은 남자 가해자일 경우 46.2%이었고, 여자 가해자는 40.0%이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수준은 낮을수록, 학대자가 노부모의 아들일 경우, 非就業中이며, 노부모와 동거하는 경우 거의 매일 학대한다는 비율도 높아졌음 .
-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經濟的인 問題(39.5%)이었으며, 그 다음은 성격차이(22.1%)였음.

- 남녀 가해자 모두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문제로 남자 가해자의 비율이 더 높았으며(남자: 60.0%, 여자: 21.7%), 연령별로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저학력층에서, 배우자가 없는 無配偶일 때, 그리고 가해자가 노부모의 아들일 경우 비율이 높았음.

#### 라) 被害老人의 症狀 및 醫療處置率

- 자녀 및 기타 家族으로부터 虐待를 받은 노인의 9.5%가 身體的 症狀을 보였고,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멍한 경우이었으며,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도의 쇼크 등으로 나타났음.
- 신체적 증상은 남자노인에게 발견되었고, 前期 老人層(65세~74세 미만)이 후기 노인층(75세 이상)보다 2.7배나 높게 나타났음. 加害者가 아들일 때와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 신체적 증상을 많이 보였음.
- 虐待 被害老人 중 76.6%가 精神的 症狀을 갖고 있었고, 평균 1.3종류로 나타남. 가장 많은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30.8%)과 ‘매사에 불안, 우울함’(29.7%)으로, ‘죽고싶다’는 위험스러운 생각을 하는 경우도 22.0%나 되었음.
- 정신적 증상은 여자노인에게 많이 나타났고, 남자노인의 가장 많은 증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자아상실’(35.7%)과 ‘매사에 불안, 우울함’(35.7%)인 반면, 女子老人은 ‘죽고 싶다는 생각’(23.4%)이 많아서 深刻한 狀態인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前期 老人層(83.8%)인 경우 정신적 증상이 많이 나타났고, 증상은 ‘죽고싶다는 생각’(24.3%)으로 후기 노인층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음.

- 身體的 健康狀態가 나쁠수록 학대결과가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고(중음: 66.7%, 보통; 78.6%, 나쁨: 80.4%), 증상은 ‘매사에 불안, 우울함’(31.6%)과 ‘죽고싶다는 생각’(28.1%)이어서 健康이 나쁠수록 否定的이고 심각한 상태에 있었음.
  - 가해자가 며느리(78.6%)인 경우와 加害者와 非同居(80.0%) 하는 경우에 정신적 증상이 많이 발견되었고, 加害者數가 많을수록 정신적인 증상을 보였음. 특히 가해자와 同居하는 노인과 노인을 虐待하는 加害者數가 2명일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증세가 심하게 나타나 危險한 상태에 있음을 示唆하고 있음.
- 신체적·정신적으로 증상이 있는 노인의 19.4%가 醫療處置를 한 經驗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처치 경험률은 성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 교육수준 및 건강상태별로는 差異를 보였음. 즉 前期 老人層(22.8%)과 중학교 이하의 低學歷層 老人(21.0%) 및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20.0%)의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가해자가 아들(23.3%)일 때와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25.0%) 그리고 가해자에게 매일 학대(23.2%)를 받는 노인의 경우에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음. 이는 加害者가 血肉일 때와 동거할 경우 피해가 더욱 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음.

마)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行動

- 자녀 및 가족원에 의해 학대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노인의 과반수 이상인 62.8%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여서 상당수의 노인이 학대에 매우 受動的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집안

밖으로 무조건 피하는 경우(7.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4.3%)하는 등의 능동적인 노인도 있었고 또한 가해자에게 함께 맞 대응하는 경우(24.5%)도 상당수 보였음.

- 여자노인(65.3%)과 後期 老人層(73.1%) 및 低學歷 老人(66.3%)은 ‘끝까지 참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남자노인(31.8%), 전기 노인층(29.4%) 그리고 고학력 노인(45.5%)은 ‘맞 대응’하는 등의 能動的인 對處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勤勞所得이 없거나 경제상태가 나쁜 노인은 ‘끝까지 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은 오히려 ‘무조건 피하거나’, ‘주위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능동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였음. 또한 虐待頻度와 虐待經驗數가 많을수록 함께 ‘맞 대응’하는 노인이 많았고,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학대가 ‘끝날 때까지 참는 것’(52.3%)으로 나타난 반면, 非同居인 경우는 ‘주위의 도움을 요청’(72.0%)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음.
  - 虐待類型에 따른 對應은 다양하게 나타났음. 즉 신체적인 학대를 당한 경우는 ‘무조건 피하였고’(66.7%), 언어·심리적인 학대는 ‘끝날 때까지 참으면서’(62.2%)도 ‘함께 맞 대응’(25.6%)하는 경우도 많았음. 그리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였거나 방임상태에 있는 노인인 경우는 주로 ‘끝까지 참는 것’(78.3%)으로 나타났음.
- 학대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회관이었음. 이와 같은 경향은 노인이 창피해서 친구 및 친척에게 갈 수 없거나 도움을 요청할 機關이 없음을 보여줌. 그리고 피해

- 노인의 도움요청 대상은 따로 사는 자녀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웃, 친구와 목사, 신부님 등이었음.
- 노인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학대를 참는 가장 주된 理由는 ‘子女(家族)이기 때문’(28.6%)와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18.6%)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16.9%),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15.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음.
    - 이는 학대를 받으면서도 혈육을 중요시하는 家族主義 價値觀과 신체 및 경제적으로 自立할 能力이 없기 때문에 환경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우리 나라 노인의 性向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됨.
  - 학대 피해노인이 加害者와 同居하는 비율은 46.8%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어서 虐待가 계속 發生할 확률이 상당히 높음을 추정할 수 있음.
    - 남자노인(54.5%), 그리고 전기 노인층(48.5%) 및 저학력층(47.0%)의 노인이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고, 또한 근로소득이 없거나(50.6%), 경제(39.1%) 및 건강상태(46.4%)가 나쁜 노인의 경우 역시 높은 동거율을 보였음. 이는 학대를 받을 수 있는 環境에 약간 더 露出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학대받은 노인이 警察에 申告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학대 피해노인층은 여자노인(1.4%)과 前期 老人層(1.5%), 그리고 중학교 이하의 低學歷層(1.2%)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2.2%) 및 건강상태(1.8%)가 나쁜 노인과 가해자가 아들(2.5%)인 경우와 가해자와 비동거(2.0%)하는 경우에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었음. 이는 다른 노인층에 비해 학



대가 더욱 심하였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학대에 積極적으로 대처하려는 意志 및 機會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3. 老父母 虐待 關聯 法·制度의 認知 및 態度

#### 가. 老父母 虐待 關聯 法·制度

- 노부모의 학대에 관련된 법·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다만 형법과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에서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노부모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임.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하는데, 가족구성원을 광의로 개념화하고 있어 老父母 虐待의 對象은 매우 넓다고 하겠음. 즉,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②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嫡母庶子の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③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임(동법 제2조 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부모에 대한 학대의 범위도 身體的 暴力뿐만 아니라 遺棄 및 虐待, 명예훼손, 모욕, 협박, 권리행사방해, 精神的 虐待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 등 소극적인 행위, 非作爲的 行爲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짐.
- 학대의 頻度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된 규정이 없어서 한번의 학

대에도 노부모 학대로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임. 일반적으로 刑法은 특정행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常習犯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노부모 학대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나. 老父母 虐待 關聯 法·制度의 認知

- 전체 虐待 被害老人의 44.1%가 노부모 학대 관련 법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施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여자노인(47.1%)과 65~74세 이하의 젊은 층의 노인(50.0%)이 同法の 認知를 많이 하고 있었음. 또한 高等學校 以上の 학력수준을 가진 노인(62.5%)과 자녀 등 기타 가족원과 같이 살고 있는 노인(53.7%)인 경우 그리고 經濟狀態가 높을수록(좋은 편 61.5%, 보통 56.5%, 나쁜 편 29.0%) 법 인지율이 높게 나타남.
- 법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학대 경험노인을 대상으로 認知經路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0.6%가 TV 및 신문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였고, 이웃·친구 등을 통해서는 6.3%로 밝혀졌음.

#### 다. 老父母 虐待에 대한 老人의 態度

##### 1) 老父母 虐待 發生時 申告

- 노부모 학대의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의 26.9%가 本人家庭에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본인가정에서 노부모 학대가 발생할 경우 남자노인과 年齡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老人單獨家口의 老人이,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경제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에 申告意向

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인지여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40.0%의 높은 신고의향을 보였음.

- 虐待類型別 신고의향을 보면 노인의 財産을 擄取하는 경우에는 신고의향이 가장 높은 31.3%이었으며, 言語 및 心理的 虐待의 경우는 25.0%, 그리고 노부모를 放任하는 경우에는 23.8%가 신고의향을 보였음. 이는 대부분의 노인이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겠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있음.
- 노인이 받은 학대경험의 수와 加害者數에 따른 신고의향은 다른 樣相을 보였음. 즉, 3번 이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무려 59.7%나 높은 신고의향을 비추었으나, 가해자수(1명: 26.1%, 2명: 31.3%)에 따라서는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학대경험수의 增加에 비하여 높은 신고의향을 보이지는 않았음. 결국 加害者의 數보다는 虐待經驗의 數가 학대 피해노인으로 하여금 신고의지를 높게 만드는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학대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노인의 73.1%가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83.7%가 ‘가족이므로’로 응답하였으며, ‘대화로 풀기를 원함’, ‘창피해서’, 그리고 ‘더 학대받을 까봐’ 등도 다소 있었음. 이는 한 마디로 노인들의 家族主義的 價値觀이 집안에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 등에 의하여 외부로 표출시키지 않고 혼자서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시사하고 있음.
- 노부모 학대의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의 58.8%가 이웃가정에 학대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본인가정에 노부모 학대가 발생할 경우의 申告率 26.9%의 무려 2배가 넘는 비율임. 이와 같은 결과는 본인가정은 가족이기 때문에 차마 신고할 수 없지만 客觀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며 加害者를 處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됨.
- 그런데 이웃가정에서 노부모 학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非申告 理由는 ‘남의 일이므로’(74.1%)가 가장 높았으며, ‘보복이 두려워’(11.1%), ‘직접 충고’(11.1%), 그리고 ‘젊은이들을 경찰서에 보내면 안되므로’(3.7%)로 나타났음.

## 2) 老父母 虐待 被害者 保護施設

- 전체 노인의 88.2%가 老人被害者 保護施設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入所할 意向이 있는 노인은 55.9%로 나타났음.
- 입소의향은 남자노인(64.7%)이 높았고, 家口形態에 따라서는 시설의 필요율과 입소의향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음. 즉, 노인끼리만 살고 있는 경우보다는 자녀 등 다른 가족원과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이 보호시설의 필요성과 입소율이 높게 나타났음. 그리고 勤勞所得이 없고 健康狀態가 나쁠수록 施設의 必要性이 높았으나 입소율과는 다른 경향을 보임. 또한 학대의 경험수와 학대를 가하는 가족원수가 많을수록 시설의 필요율과 입소의향이 높은 비율로 밝혀졌음.

## 3) 老父母 虐待豫防을 위한 政策的 建議

- 전체 학대 피해노인의 73.6%가 政策的 建議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하게 제시한 건의내용은 ‘老人保護施設의 擴充’(41.0%), ‘연

금확대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독립'(25.6%)을 바라고 있어 資源不足으로 인하여 학대를 받고 있거나 경제적 문제로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측면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또한 노인의 17.9%는 '교육 및 계몽'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노부모 봉양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음을 개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孝思想」의 鼓吹가 필요함을 의미함.

- 이들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확충', '치매환자 보호시설의 확충', '복지관의 무료이용' '무료숙식', '노인학대자 처벌 관련 법제정', 등 다양하였음.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研究背景 및 目的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망률 감소 및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1995년 현재 전체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은 5.9%이나 2000년에는 7.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본格的인 老齡化 社會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는 10.0%, 2020년에는 13.2%로 증가하게 되어 老齡社會가 될 전망이다 (統計廳, 1996).

이들 노인인구는 身體的, 精神的, 經濟的으로 의존성이 높은 脆弱集團으로 가족이나 사회의 扶養負擔을 증가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sup>1)</sup>.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그들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특히 노인부양의 主 擔當者는 여성들로서, 이들 여성들의 就業率의 上昇 및 自我實現 등을 위한 사회진출로 가족내 노부모 扶養機能이 弱化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령층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자녀들도 이미 중년기에 속한 경우가 많아 이들도 신체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변화를 겪게 되며, 부모부양까지 담당하게 됨으로서 노부모에 대한 학대나 방치 등을 할 수 있는 潛在性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김태현 외, 1997).

1998년 7월 『家庭暴力防止 및 被害者保護 등에 관한 法律』이 시행

---

1)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부모의 노후 부양책임에 대하여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1983년 20.5%에서 1994 9.9%, 그리고 1998년에 8.1%로 감소하였으며, 자녀들이 부양해야 한다는 1983년 71.7%에서 1991년 78.7%, 1994년 87.3%, 그리고 1998년에는 89.9%로 증가하였음(통계청, 1999a).

됨에 따라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 문제의 대부분은 부부폭력과 아동학대에 관한 것으로서 가정폭력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서 우리의 주위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成人子女의 父母虐待에 관해서는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중요시하는 우리 나라의 사회·문화적인 특성상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쉽게 露出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성인자녀의 부모학대에 대한 概念조차 불명확하고, 虐待類型 및 水準이 전혀 파악되지 못한 실정이다.

老父母 虐待에 관한 문제는 다른 가정폭력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가족 내 私的인 領域의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노출되기보다는 은폐될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가족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나 갈등이 노출되는 것을 매우 꺼려하는 우리 문화의 배경은 우리 사회에서 노부모 학대가 더욱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가 가정 내 폭력의 은폐적 속성에 더하여 문화적 배경의 특성으로 인해 보다 장기화, 잠재화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송현애 외, 1998). 이러한 성인자녀의 부모학대 문제는 가족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노인 및 그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노부모학대가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과 특성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자녀의 老父母 虐待의 實態를 파악하여 학대피해 노인 및 노부모 부양 자녀를 위한 支援對策 등을 강구하고 노부모 학대의 豫防對策을 마련하며, 더 나아가 가족원간의 紐帶強化 및 삶의 質을 提高시킬 수 있는 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 第 2 節 研究方法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노부모 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실태조사는 『노부모-자녀관계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와 예비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 1. 老父母-子女關係 實態把握을 위한 豫備調査

전국의 6개 대도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중 각 2개소씩 12개의 老人(綜合)福祉會館을 선정한 후 동 회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본 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설문서로 조사대상 노인들의 自己記入式 方法과 조사원에 의한 面接調査를 병행, 실시한 것이다.

본 예비조사에서 사용한 노부모학대 측정을 위한 항목은 Straus(1979)<sup>2)</sup>와 김미혜 등(1998)<sup>3)</sup>이 老人虐待 測定道具로써 개발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학대유형별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身體的 虐待에 관한 항목은 ① 물건을 던지는 행위, ② 꼬집거나 핼리는 행위 ③ 손·발 등으로 때리는 행위, ④ 몽둥이나 칼 등

2) Straus(1979)는 폭력의 의도나 동기에 관련 없이 상해가능성에 따라 폭력을 8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신체적 폭력에 포함시켰음. 즉,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을 밀치거나 몸을 잡아 흔드는 행위, 뺨을 때리는 행위, 발이나 주먹으로 한두 대 때리는 행위, 몽둥이 같은 물건으로 때리려 하거나 한두 대 때리는 행위, 닥치는 대로 때리는 행위, 칼 같은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칼 같은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임(金勝權 外, 1998에서 재인용).

3) 김미혜 등(1998)이 개발한 총 48개 항목(신체적 학대: 9항목, 심리·정서적 학대: 16항목, 재정적 학대: 6항목, 방임: 6항목, 자기방임: 11개 항목)중 본 연구의 목적과 일치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자들이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해할 소지가 있는 항목은 제외하였음. 또한 자기방임은 본 연구의 응답대상자가 노인 자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하였음.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⑤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⑥ 노인을 강제적으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두는 행위, ⑦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두는 행위, ⑧ 노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⑨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⑩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2~3일 이상 혼자 집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다.

둘째, 言語·心理的 虐待에 관한 항목은 ①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②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③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향을 지르는 행위, ④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⑤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 ⑥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⑦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는 행위, ⑧ 노인을 향해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계 닫는 등 거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등이다.

셋째, 經濟的 搾取에 관한 항목으로는 ①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빼앗는 행위, ②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채는 행위, ③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④ 노인에게서 빌린 돈이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⑤ 노인에게 돈벌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넷째, 방임에 관한 항목으로는 ①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②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 행위, ③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④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 등이다.

## 2. 老父母-子女關係 實態調査

1차적으로 실시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결과 가족으로부터 虐待받은 經驗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만을 대상으로 2차적으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는 본 研究陣 및 훈련된 調査員에 의한 面接調査로 실시되었다.

이상의 2가지 형태의 조사는 본 연구진에 의해 훈련된 지도원급 조사원 2명과 본 연구진 3명에 의해 1999. 5. 18~6. 9 기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노부모-자녀관계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는 총 865명에 대하여, 그리고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는 71명에 대하여 調査가 完了되었다.

## 第3節 研究內容

본 연구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2가지 형태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본 章에 이어 第2章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한 노인학대의 이론적 고찰과 본 연구에서의 노부모 학대에 관한 概念을 定立하고, 第3章에서는 본 연구의 응답대상자들에 대한 특성을 언급하였다. 즉, 『노부모-자녀관계 실태파악을 위한 예비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성,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및 가구유형과 같은 人口·社會學的인 特性을 분석하였고,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 대상자들의 경우는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외에 노인들의 經濟狀態 및 健康狀態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택형태 및 명의, 부동산 및 동산, 수입원, 주관적 경제상태, 금전적·물질적 수혜여부 및 대상자, 그리고 일상생활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상 어려움 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였다.

第4章에서는 노부모 학대 가해자의 특성과 노부모와 학대 가해자와의 평소관계, 동거여부, 가해자의 과거 가정폭력 목격 및 경험여부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노부모 학대 발생빈도 및 이유, 학대결과 나타난 신체적·정신적 증상 및 의료처치 경험여부, 학대에 대한 노부모의 대응방법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老父母 虐待 事例를 類型別로 제시함으로써 노부모학대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第5章에서는 노부모학대 관련 법·제도의 인지여부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家庭暴力 犯罪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시행에 관하여 학대 피해노인들이 어느 정도 認知하고 있는지 여부와 認知經路를 분석하였으며, 응답자 본인과 이웃가정에 노인학대 발생시 경찰에 신고여부와 비신고 이유를 확인하여 노부모학대에 관한 申告態度 등을 파악하였다. 이 외 피해노인들의 보호시설 필요성 및 본인의 입소의향 등을 파악함으로써 피해노인들의 保護施設에 대한 欲求를 파악토록 하였으며, 피해노인 자신들이 생각하는 老人虐待 豫防을 위한 建議事項을 정리하였다.

第6章에서는 노부모학대를 예방하고, 피해노인과 가해자를 모두 치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며, 第7章에서는 요약 및 결론으로 전체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政策的 示唆點을 제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 第 4 節 研究의 制限點

노부모 학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전국 규모의 표본조사를 통해 노인들이 그들을 보호, 수발하는 자녀나 기타 부양자로부터 어느 정도 학대를 받고 있는지 등

우리 나라 老父母 虐待의 水準把握이 이루어져야 하나 예산 및 인력 등의 제약으로 전국 단위의 표본조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을 6개 대도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각 2개소씩 선정하여 동 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노인을 대표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限界點을 지니고 있다.

또한 노인들의 노부모학대에 관한 인식의 부족 등으로 피해노인들을 발견하기 위한 노부모-자녀관계 예비조사에서 조사대상 노인들의 자녀들의 노부모 학대에 관한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고, 피해자로 발견된 노인들의 경우에도 심층조사인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를 거부한 경우도 있어 조사실시에 많은 隘路點이 있었으며, 따라서 자료의 충분한 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외 본 조사의 대상이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이며, 조사내용도 본인 가족원간의 관계 및 학대에 관한 사항이라는 조사의 특성상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에 있어 歪曲의 可能性을 완전히 排除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限界性을 지닐 수 밖에 없다.

## 第 2 章 理論的 考察

### 第 1 節 老人虐待의 概念 및 類型

老人虐待를 정의하는 기준은 社會的·文化的 差異에 따라 국가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虐待者와 被虐待者의 주관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실제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인학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일관된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즉, 일부 학자들은 노인학대라는 용어대신 放任 또는 放置(neglect)나 不適切한 處遇(maltreat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廣義的 概念에서의 老人虐待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정서적 학대 또는 언어적 학대, 의료적 학대, 성적 학대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協議的 概念에서는 단지 신체적 증거가 명백한 신체적인 학대만을 노인학대로 간주하기도 한다(김현수, 1997).

노인학대는 광범위하게 ①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② 요양원 등의 노인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가해지는 노인학대, 그리고 ③ 노인이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자기-방임이나 자기-학대 등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기도 한다(Tatara, 1990).

Block & Sinnott(1979)는 학대의 종류로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착취, 강제로 거처를 외부로 옮기는 것, 약물을 과도하게 먹이는 것으로 분류했으며, O'Malley 등(1979)은 心理的 虐待를 노인학대에 포함시키고 노인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노인학대는 심리적, 신체적 또는 경

제적 상태에 부적절하거나 해로운 결과를 가져온 행동으로 정의하고 방임은 노인에게 중요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Lau & Kosberg(1979)는 노인학대가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공격, 경제적 남용 또는 소유물이나 재산의 남용, 노인의 권리침해를 포함한다고 했다. 한편 Rathbone-McCuan(1980)과 Pillemer(1985)는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身體的 虐待만을 論議하였다. Hickey & Douglass(1981)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로 보고, 이는 消極的 및 積極的 放任, 언어적 또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중 소극적 방임은 노인을 홀로 남겨놓거나 고립시키거나 잊어버리는 상황으로, 흔히 이러한 일은 수발자가 의존적인 노인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 에너지, 기술 혹은 재정적 자원이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수반된다. 반면 적극적 방임이란 수발자가 교묘하게 기본욕구에 대한 근접성을 제한하고 부인함으로써 노인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HSCA(House Select Committee on Aging, 1981)은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부주의, 경제적 탈취, 심리적 학대, 권리침해, 자기방임, 성학대로 구분했다. Chen 등(1981)은 노인학대 유형에 노인에 대한 고의적인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 영양의 결핍, 정서적 손상, 정신적 고통, 무분별한 구금, 정서적 방임, 강간과 강간미수, 서비스의 박탈, 비자발적 고립과 재정적 남용을 포함시켰다.

英國의 대표적 학자인 Eastman(1984)은 노인학대를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家族에 의한 計劃된 身體的, 情緒的, 經濟的 학대로써 突發的인 부상과 구별하고 있다. 신체적 학대로는 직접적 暴力 外에 적절히 약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식사, 난방,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사람을 집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포함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위협

과 모욕, 안정과 감정억제를 말하고, 經濟的 虐待는 노인의 이해없이 노인의 재산을 남용하는 것이라 하였다(Eastman, M. 1984; 이해영:1996에서 재인용)

Sengstock & Hwalek(1986)은 신체적 학대와 방임, 심리적 학대와 방임, 물질적 학대, 개인적 권리의 침해를 포함하며, 이 학대는 意圖의 또는 비의도적일 수 있으며, 自己虐待와 自己放任까지 포함시켰다.

Godkin, Wolf and Pillemer(1989)는 노인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물질적 학대, 적극적 방임과 소극적 방임으로 범주화하고 각 유형을 정의하였다. 우선 신체적 학대는 身體的 苦痛과 抑壓을 가하는 것으로, 심리적 학대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물질적 학대는 財産 또는 다른 자원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이용을 의미한다. 적극적 방임이란 의도적으로 보살필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소극적 방임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나 보살필 의무를 이행하길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최해경(1993)은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학대와, 의료적 부적절한 처우, 방임 및 재정적 착취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의 경우도 신체적 폭력,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 및 방임으로 구분하였다.

<表 2-1> 國內外 研究에서의 老人虐待의 概念

연구자(연도)	신체적 학대	심리적 /정서 적학대	언어 적학대	경제적 /재정 적착취	성적 학대	노인의 권리 침해	방입	자기 방입	비고
Block & Sinnott(1979)	0	0		0					
Lau & Kosberg(1979)	0	0		0			0		
Douglas et al.(1980)	0	0	0				0*		*적극적 방치, 수동적 방치
Hickey & Douglas(1981)	0	0		0	0	0	0	0	*소극적 방입 수동적 방입
House Select Committee on Aging(1981)	0	0	0	0		0		0	
O'Malley et al.(1983)	0	0						0	
Sengstock & Hwalk(1986)	0	0		0		0		0	*신체적 방입 *심리적 방입
Pillemer & Finkelhor(1988)	0	0							
Godkin et al.(1989)	0	0		0			0*		*적극적 방입, 수동적 방입
Rosenblatt(1997)	0*	0*		0*		0			*신체적 방입, *심리적 방입 *경제적 방입
최해경(1993)	0	0	0	0	0	0	0	0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0	0	0					0	
이해영(1996)	0	0		0				0	
한동희(1996)	0	0	0	0				0	
이영숙(1997)	0	0	0						
김현수(1997)	0	0	0	0				0	
김미경(1996)	0	0	0	0				0	
송현애 등(1998)	0	0		0				0	

\* 최해경(1993), 송현애 등(1998),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들을 분류 정리한 것임.

이해영(1996)의 경우에도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및 방입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폭력이나 상해, 음식제공, 의료처치 등의 거부, 방치, 감금, 폭언, 모욕, 노인재산의 유용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양거부 및 노인유기를 포함할 것을 제외



하였다.

이영숙(1997)은 정서적 학대, 언어적 공격, 신체적 학대로 구분하였고, 김현수(1997)와 김미경(1998)은 身體的 虐待, 心理的 虐待, 經濟的 榨取(재정적 학대), 언어학대 및 방임으로, 그리고 송현애 등(1998)은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학대 및 방임으로 분류하되 신체적 및 심리적인 경우를 학대와 방임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은 研究者마다 다르게 유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第 2 節 老人虐待 關聯 先行研究

노인학대는 복합적이고 多次元的인 問題들이 얽혀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 相關요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힘들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수행되었던 先行研究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1. 外國의 老人虐待 關聯 先行研究

우선 노인학대를 취급하는 專門家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살펴보면 Hickey & Douglass(1981)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健康保護와 保護的 社會서비스(protective social services)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인에게 대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22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依存的 老人으로 인한 부양부담이 학대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 중 60%의 응답자들이 매주 노인학대 사례를 다루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여러 가지 학대유형 중 능동적 방임과 언어적·정서적 학대를 빈번하게 경

험하는 것으로 報告하였다.

전문가 대상의 또 다른 연구중의 하나인 Steinmetz(1988)에 의해 수행된 연구<sup>4)</sup>에서는 家族중 의존적인 노인이 여성인 경우가 약 75%(232사례)이었으며, 調査對象者의 57.3%는 노인이 가족구성원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이 되었던 가족들 중 여러 형태의 의존성과 관련한 가정 내 갈등을 보고한 경우가 약 96%이었으며, 갈등을 보고한 가족들 중에서 54.6%가 노인을 구타하는 등의 신체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은 부양자에 대한 조사로써 Steinmetz와 Amsden(1983)의 연구<sup>5)</sup>는 老人의 依存性 및 그로 인해 유발된 스트레스와 가족부양자에 의한 학대 사이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부양자가 인식한 스트레스와 의존적 노인의 要求 사이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Godkin, Wolf, 그리고 Pillemer(1989)는 가정보호기관에 의뢰된 클라이언트 중 59명의 학대받는 노인을 표본집단으로, 그리고 49명의 학대받지 않는 노인을 통제집단으로 한 사례연구를 통해 부양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부양자 스트레스와 노인학대간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선행연구에서는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노인의 의존성, 扶養負擔 및 스트레스가 노인학대와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요약된다. 이어서 1990년대에 들어 수행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학대에 관한 Wisconsin 보고(1990)에서는 노인학대 關聯要因을

- 
- 4) Delaware 지역에 근무하는 성직자, 의사, 간호사, 그리고 사회사업가 153명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학대사례로 인식하였던 309가족에 대한 경험을 기술토록 한 것임.
  - 5) 이는 의존성이 있는 노인과 같은 집에서 생활하면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Delaware 지역의 부양자 104명을 대상으로 한 것임.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家族危機 要因으로는 配偶者의 죽음, 健康의 喪失, 독립성의 상실, 이전의 가정폭력 내력, 가족문제 및 빈약한 가족관계 내력, 부양자나 가족의 노화에 대한 知識이나 이해 부족, 부양자나 노인의 약물남용, 과도한 요구로 인한 부양부담이나 갈등해결 기술의 미숙, 부양자가 노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경우, 非合理的 期待, 부양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등을 들고 있다.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요인으로는 노인과 부양자의 사회적 고립, 부양자를 위한 경제적·사회적 지지의 부족, 부양으로 인한 經濟的 壓力, 노인의 經濟的 無能力, 사회적 서비스 자원의 부족, 노화에 대한 지식의 부족, 노화학대 발견과 보고를 위한 적절한 절차 부재, 노인에 대한 醫療的 關心의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Pillemer와 Suitor(1992)<sup>6)</sup>의 연구에서는 부양요구, 상호작용적 스트레스, 부양자의 특성, 그리고 부양맥락<sup>7)</sup>이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상호작용적 스트레스가 부양관계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① 노인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을수록, ② 노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③ 노인이 분열성 행동을 보일수록, ④ 부양자의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⑤ 부양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⑥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⑦ 부양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와 ⑧ 노인과 부양자가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부양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6) 알츠하이머병이나 기타 비가역적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의 부양자 236명을 대상으로 부양자가 실질적으로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가를 검증한 것임.

7) 부양맥락(caregiving context)과 관련된 변수에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노인과 부양자의 구조적 관계(structural relationship), 주거상태(living arrangement) 등이 포함되어 있음.

두려움을 갖거나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Christine과 McDaniel(1997)은 노인학대의 原因을 다음과 같이 4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노인의 의존성으로 대표되는 개인적 요인(personal factors), 노인과 부양자 사이의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과거의 葛藤 및 힘의 갈등과 같은 노인과 부양자간의 요인(interpersonal factors), 夫婦問題, 경제적 어려움이나 財政的 스트레스, 장기간 계속된 부양부담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리고 의료적인 문제 등을 포괄하는 상황적 요인(situational factors), 노인이 否定的인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社會文化的 要因(sociocultural factors) 등으로 要約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양자와 같은 공간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많을수록 노인학대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우리 나라의 老人虐待 關聯 先行研究

우리 나라에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全國 規模의 調査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노인학대의 피해대상자인 노인들이 학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출을 꺼려하여 조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도 있으나 그 보다는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정경희, 1998).

그간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학대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해경(1993)의 「老人虐待에 관한 認識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는 대전의 60세 이상 여성노인 30명을 대상으로 13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시나리오의 피해자는 여성노인을, 가해자는 가족으로 설정하였다. 13개의 시나리오는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의료적 부적절한 처우, 방임 및 재정적 착취 등 노인학대유형을 모두 포함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 면접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잠재적 학대상황이 우리 나라 노인에게 어떻게 認識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조사결과 성적학대, 재정적 학대, 신체적 학대, 의료적 방임 및 신체적 방임과 같은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노인이 身體的 또는 認知的 기능손상으로 부양자(수발자)의 부담이 높은 상황에 있어서는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自己虐待나 自己放任은 노인학대 유형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원조요청 의사를 강하게 나타낸 것은 의료적 방임, 성적 학대, 심한 재정적 착취이었으며, 상대적으로 정서적 학대나 약한 財政的 擄取狀況의 경우 원조요청 의사는 약하게 나타났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의 60세 이상 노인 593명을 대상<sup>8)</sup>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동 조사는 형법상의 유기죄 및 학대죄의 구성요건을 토대로 하여 8개의 항목을 구성한 후 각 항목에 대하여 빈도는 어느 정도였는지를 질문한 것이다(表 2-2 참조).

전체 8가지 문항중 가장 경험률이 높은 것은 노인의 부양자로부터 없어서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경우로 17.3%이었으며, 그 다음은 부양자로부터 폭언이나 모욕을 받은 경험으로 17.0%, 2~3일 이상 혼자 집에 내버려 두어진 적이 있는 경우도 14.8%나 되

8) 이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전체 조사대상중 남자 39.3%, 여자 60.7%였으며, 연령별로는 65세 이하가 35.1%, 66~70세 30.4%, 71세 이상이 34.5%이었음. 그리고 교육수준은 68.9%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이었고, 중학교 14.7%, 고등학교 이상 16.4%이었음(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었다. 또한 부양자가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 번 옮긴 적이 있는 노인도 14.6%였으며, 잠자리를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거나 분위기를 해쳐 잠을 자지 못한 적이 있다 12.6%, 돈벌이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 와 집에서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가 각각 9.9%, 그리고 부양자로부터 신체적인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가 7.5%로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表 2-2〉 老人虐待 類型別 經驗率

노인학대 유형	경험률 (단위: %)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부양을 꺼려서 거처를 여러 번 옮기는 행위	14.6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으로부터 없어서 주었으면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17.3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잠자리를 제대로 마련해 주지 않거나 분위기를 해쳐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	12.6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돈벌이를 강요하는 행위	9.9
2~3일 이상 노인을 혼자 집에 내버려 두는 행위	14.8
집에서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끼니를 거르게 하는 행위	9.9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폭언 및 모욕을 주는 행위	17.0
노인을 돕거나 보호해 주는 사람이 신체적인 폭행을 가하는 행위	7.5

資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1995, p.127 <表 4-62>를 재구성한 것임.

노인들의 경우 身體的인 暴力을 당하기보다는 言語的 暴力이나 정서적인 학대 및 방임 등의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노인학대 발생시 피해노인의 대응을 보면,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63.7%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그냥 참았으며, 나머지 36.3% 중 상담전화로 통해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22.8%,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화를 낸 경우 12.6%,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0.8%)도 있었다. 신고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비신고 이유

를 들어본 결과 ‘신고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39.2%, ‘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34.4%로 73.6%가 학대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고 참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학대의 원인으로서는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가 53.8%, ‘상대방의 부도덕’함 20.8%, ‘전반적인 사회적 풍조 19.2%, ‘기타’ 6.2%로 대부분 학대자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피해노인 자신의 문제로 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노인의 유기 및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노인의 自立能力 정도와 집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었는지의 여부이었다. 즉, 자립능력이 없을수록 遺棄, 학대의 피해경험이 많았으며, 집에 있을 때 주로 가족이나 친척과 함께 있을수록 유기 또는 학대의 피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스스로가 자립능력이 없으므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으며, 집에서 혼자 지내는 노인의 경우 과거보다 生活領域이 축소되고 대인관계 역시 이전에 비해 활발하지 못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가족들로부터의 무관심으로 인해 혼자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이해영(1996)은 노인학대의 주대상은 고령층의 여성노인이 가장 많고,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가해자는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이며, 개인적 병리, 알코올, 과도한 수발부담, 貧困 등이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족갈등과 경제적 동기도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신체적 폭력이나 성적 학대가 많은 아동학대와는 달리 노인의 경우는 방치, 방임, 심리적 학대 등이 비교적 많으며, 노인이 갖고 있는 재산, 연금, 수당을 착취하는 경우가 많아 經濟的 獨立의 경우도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학대발생의 요인으로는 ① 피해자 노인측의 요인으로는 신체적, 정

신적, 경제적 의존상태, ② 학대자 측의 요인으로는 음주, 질병, 실업, 정신장애 등의 스트레스, ③ 가족간의 인간 관계적 요인으로는 불화, 가족간의 평등의식의 결여와 개인으로서의 인간존중의 경시 등이 나타났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동희(1996)가 학대받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연구의 결과에 의해 부양자의 무능력, 부양자의 스트레스, 힘의 견제, 재산문제, 상호관계의 심리적 문제 등을 虐待要因으로 제시하였다.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을 한 김태현 등(1997)의 연구에서도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노인학대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였는데, 크게 나누어 노인과 관련된 특성, 부양자와 관련된 특성 및 가족체계와 관련된 특성으로 범주화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학대 가능성이 큰 노인과 관련된 특성으로는 여성, 높은 연령, 높은 의존성, 알코올중독, 세대간 갈등, 과거의 학대경험, 극기형 및 분노형의 성격, 그리고 社會的 孤立을 제시하였다. 둘째, 알코올중독, 의료적 또는 약물중독, 부양자 자신의 노인성 치매, 정서적·육체적·장애, 부양의 미숙, 경제적 고충, 아동기 때의 학대경험, 스트레스, 외부와의 연결 두절, 성격특성(비난형, 냉담형, 비판형), 이해부족, 비현실적 기대, 경제적인 의존 등으로 요약되는 부양자와 관련된 특성을 들었다. 셋째, 가족지원의 부족, 마지못해 하는 부양, 過密한 住居環境, 고립, 부부간 갈등, 經濟的 壓迫, 가족 내문제, 책임감 공유의 부조화 등의 가족체계와 관련된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소로 ① 수명의 연장으로 육체적 혹은 정신적으로 손상된 노인이 증가하여 가족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② 노령과 만성적 질병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의존성은 학대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며, ③ 스트레스<sup>9)</sup> ④ 어릴

9) 개인이나 가족의 정신병리의 현상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또 다른 학자들은



때의 학대경험이 노인학대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으며, 학대자의 개인적 문제, 알코올이나 정신병, 관계의 不適應 등을 요인으로 들고 있다(King, 1986, 이해영, 1996: 306에서 재인용).

김현수(1997)의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는 파고다 공원의 65세 이상 남녀 노인 80명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한 것으로 응답노인의 43.8%가 학대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심리적 학대 경험은 35.0%, 경제적 착취 22.5%, 방임 18.8%, 언어학대 15.0%의 순이었으며, 신체적 학대 경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유형별 가해자는 심리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및 방임은 며느리에 의해, 그리고 경제적 착취는 아들에 의해 행해지는 비율이 높았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과 학대경험과의 관계를 보면, 성, 연령, 교육수준 등과 같은 일반적 특성과는 유의미한 차이를 볼 수 없었으나, 家族關係와는 상당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관계가 나쁜 경우에 학대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대경험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수입이 적은 노인의 경우 수입이 많은 노인보다 방임 경험률이 높았으며, 결혼상태별로는 혼자사는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보다 방임 경험률이 높았다.

자신이 학대받은 사실에 대한 도움요청 경험은 대부분(91.3%)이 없어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집안일(41.4%)이라서, 창피해서(37.9%)라고 응답한 율이 약 80%정도로서 아직까지 傳統的인 思考方式으로 인해 家庭問題의 노출을 꺼려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족이더라도 과도한 수발부담으로 학대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노령, 질병으로 인한 노인의 성격변화는 돌보는 가족을 지치게 하고, 의료비용의 과중한 부담 또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이해영, 1996).

〈表 2-3〉 老人虐待 類型別 分布

유형	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언어학대	방임
내용	- 가족들로부터 소외 당하는 느낌(39.3%)	- 용돈 등 생활에 필요한 돈을 주지 않음(77.8%)	- 거부적 언어(33.3%) - 폭언, 언성높힘 (16.7%)	- 음식을 주지않아 식사 못함(66.7%) - 오랜기간 혼자
	- 가족들로부터 함께 살기 싫어하는 느낌(32.1%)	- 재산착취(11.1%) - 돈벌이 강요(11.1%)	- 적대적 언어(16.7%) - 원망적 언어(16.7%)	- 내버려짐(26.7%) - 기타 (6.7%)
	- 못마땅한 표정, 내색(17.9%)		- 경멸적인 언어 및 기타(16.6%)	
	- 기타 (10.7%)			
	계	100.0	100.0	100.0

資料: 金玟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이영숙(1997)의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여성노인이 고부관계에서 경험하는 학대행위, 고부관계에서 경험한 학대유형별 양상 및 여성노인이 며느리의 학대로부터 받는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k시에 거주하는 며느리와同居 經驗이 있거나 현재 동거중인 여성 노인 117명을 대상(50세 이상)으로 학대행위와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를 질문한 것으로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4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고,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5점 Likert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원, 노인정, 교회, 사찰 등의 노인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실시한 후 심층면접 대상은 임의로 선정, 면접조사 한 것으로 학대유형을 情緒的 虐待, 言語的 攻撃, 身體的 虐待로 구분하였다<sup>10)</sup>.

10) 정서적 학대에 관한 항목으로 부루통하다, 말하는 도중 나가버린다거나, 필요한 것(먹을 것, 입을 것 등)을 충분히 해주지 않거나 말을 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고의로 하루종일 혼자 있게 한다 등이며, 언어적 공격은 소리지르다, 욕을 하다, 비꼬면서 말하거나, 말로 위협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신체적 학대에

조사결과 정서적 학대는 모든 노인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학대이었으나 노인들은 학대라고 인식하는율이 높지 않았다. 언어적 공격에 대해 경험한 노인은 전체의 71.8%,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6%이었다. 신체적 학대 경험한 노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나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 및 언어적 공격과 같은 다른 유형의 학대와 같이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다.

김미경(1998)은 청주시 2개구의 경로당중 각각 20개씩을 추출하여 동 경로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30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유형과 노인의 심리적 디스트레스(우울, 불안)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 유형별 虐待程度의 차이와 노인학대 유형과 우울 및 불안과의 상관관계, 노인학대 유형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측정도구로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으로 구성된 노인학대별 유형 각 5문항씩 20개 문항과 우울, 불안척도 각 10문항,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調査結果 노인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살펴보면 성별은 재정적 학대의 경우에만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학대를 더 많이 받았으며, 연령은 방임의 경우에만 80세 이상 고령노인이 그 이하 노인보다 학대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結婚狀態 및 교육수준별로는 신체적 학대와 방임의 경우 사별노인이, 그리고 無學의 노인이 더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상태 및 경제상태가 나쁜 노인의 경우 좋은 노인보다 모든 학대유형에서 보다 더 학대받았으며, 자녀와

---

관한 항목으로는 무엇을 아무데나 던진다거나 할머니를 향해 던지는 경우, 밀거나 움켜잡는 경우, 때리려고 위협하거나 실제 때리는 경우, 묶어놓거나 가두워 두는 경우 등을 포함함.

의 접촉빈도가 적을수록 더 학대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현애 등(1998)은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160명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 및 경험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노인학대 인식과 經驗實態 把握을 위해 심리적 학대와 방임, 신체적 방임, 신체적 학대 및 유기, 재정적 학대 및 방임 등 인식에 관한 질문 26문항과, 경험실태에 관한 질문 22문항이 이용되었으며, 가족관계 만족도, 扶養 期待感, 가족지지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조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조사결과 전반적인 老人忽待의 경험은 낮았으며, 대체로 신체적 학대 및 유기 경험은 매우 낮게, 그리고 심리적 방임이나 신체적 방임의 경험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이 생각하는 노인학대의 원인으로는 노인자신의 측면에서 학대의 원인이 있다는 노인들이 36.6%, 부양자 측면에 원인이 있다고 응답한 노인은 28.7%, 사회구조적 측면에서는 25.0%, 관계적 측면에서는 9.7%로 나타났다. 개인적, 관계적 변인에 따른 노인학대 경험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노인의 가족지지도가 높을수록, 가족원과의 관계가 만족할수록, 그리고 자녀와의 접촉정도가 많을수록 노인학대 경험이 낮게 나타났다.

김한곤(1998)의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sup>11)</sup>는 불교복지회에서 제공하는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21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응답자들 중 노인학대를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30.4%이었으며, 노

11) 노인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과 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0~60세 미만의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성인을 모집단으로하여 900명을 표본추출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587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음.

인학대 유형으로는 언어적 학대가 50.0%, 방치 29.8%, 경제적 착취 16.3%의 순이었으며, 육체적 학대는 3.9%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노인학대의 피해대상자는 여성(57.3%)이 남성(42.7%)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가해자는 直系家族이 4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노인학대 현장을 목격한 사람중 50.6%가 방관한 상태로 가장 많았는데 방관한 이유를 보면 가족내의 문제로 간주하고 다른 사람의 家族問題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 第 3 節 本 研究를 위한 老父母 虐待의 概念

노부모 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학대가 누구에 의해 발생하는가와 그 類型 및 範圍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어느 정도의 頻度로 발생하는 경우에 노부모학대로 볼 것인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동거하고 있는 가족원과, 비동거중인 가족원, 기타 친족원 등 어디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으며, 가족원인 경우에도 노인을 부양하는 가족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노인을 부양하지는 않지만 가족원일 경우 모두 포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 볼 때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 경제적 착취 등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는 폭력이나 육체적 해를 가하는 행위이고, 심리적 학대(psychological abuse)는 정신적 고통, 공포 혹은 불안을 야기하는 위협, 폭언, 모욕 등을 말하며, 방임(negligence)은 노인에게 해를 가져오는 의무의 불이행, 무관심, 권리침해를 말한다. 경제적 착취(financial exploitation)는 노인의 재산이나 돈을 횡령하는 것으로 때로 협박, 폭력, 거짓말 등을 포함한다(이해영, 1996).

이제까지의 대부분의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에서는 배우자에 의한 학대와 자녀 및 기타 친·인척에 의한 학대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학대는 제외하였으며, 자녀 및 그 배우자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기타 친·인척으로써 주로 비속에 속하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배우자의 학대에 관한 연구는 夫婦暴力의 범주에서 많이 다루어져 왔으며,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노인학대의 일종에 속하는 자기학대 및 자기방임에 관해서는 본 조사의 응답대상이 노인 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실제적인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학대유형에 있어서는 최근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유형으로서 신체적 학대, 言語·心理的虐待, 경제적 착취, 방임 및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다. 학대빈도는 노인들의 경우 젊은 사람들과 달리 단 한번의 폭력이나 단순한 밀침 등으로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심리적인 학대 등은 신체적 폭력, 학대 보다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1년동안의 노인 자신이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모두 포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노부모학대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써 자녀 및 그 배우자 또는 노인을 부양하는 기타 가족원으로써 주로 비속에 속하는 가족원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심리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등에 관한 학대를 받은 대상으로 하였다.

### 第 3 章 老父母虐待 實態調查 應答者의 特性

本 調査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老父母-子女關係 實態把握을 위한 豫備調査」와 동 예비조사 결과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 第 1 節 老父母-子女關係 把握을 위한 豫備調査 應答者의 特性

전국 6개 대도시의 각 2개소씩 12개의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부모-자녀관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65명이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그 중 남자노인이 205명(23.7%), 여자노인이 660명(76.3%)으로 대부분이 여자노인들이었다.

〈表 3-1〉 全體 應答老人의 性別 分布

성	(단위: %)		
	남자	여자	계
비율(명)	23.7(205)	76.3(660)	100.0(865)

이들 응답노인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表 3-2>와 같다. 우선 연령별 분포를 보면 65~74세가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75세 이상은 20.9%이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의 경우는 65~74세 연령층이

72.7%인데 비해 여자노인의 경우는 동일한 연령층이 81.1%로 남자노인들 보다 높은 비율이었다<sup>12)</sup>. 이들 노인들의 平均年齡을 보면 남자노인들은 71.9세, 여자노인들은 71.0세로 남자노인들이 여자노인들 보다 75세 이상 高齡層의 비율이 더 높아 평균연령도 남자노인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3-2〉 全體 應答老人의 性別 特性

특성	남자	여자	전체
연령			
65~74세	72.7	81.1	79.1
75세 이상	27.3	18.9	20.9
평균 연령	71.9	71.0	71.2
교육수준 <sup>1)</sup>			
중학교 이하	50.0	89.2	79.9
고등학교 이상	50.0	10.8	20.1
결혼상태 <sup>2)</sup>			
유배우	79.9	32.3	43.7
무배우	20.1	67.7	56.3
가구유형 <sup>3)</sup>			
노인단독가구	57.8	48.3	50.6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	42.2	51.7	49.4
계	100.0	100.0	100.0
(명)	(205)	(660)	(865)

註: 1) 무응답 15명 제외  
 2) 무응답 13명 제외

12) 일반적으로는 남자노인 보다는 여자노인이 고령자의 비율이 높으나 본 조사의 경우는 남자노인의 고령자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이는 본 조사대상들은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로 한정되어 있으며,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특성상 여성노인들의 연령구성이 일반여성 노인들보다는 낮으며, 남성노인들의 경우 여성노인들 보다 취업률이 높아 정년 퇴직후 등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게 됨으로써 여성노인들 보다 고령층의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이들의 교육수준을 보면 전체 응답노인의 79.9%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이었으며, 고등학교 이상이 20.1%이었다. 성별로는 여자노인들은 중학교 이하가 89.2%인데 비해 남자노인들은 50.0%로 여자노인들 보다 남자노인들의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상태는 유배우 상태가 43.7%로 배우자가 없는 노인들의 비율(56.3%)이 더 높았다. 특히 여자노인들의 경우 無配偶率이 67.7%로 남자노인들의 20.1%에 비해 3배 이상이나 높았다.

이들 노인들의 조사당시 家口類型은 노인들만이 사는 老人單獨家口는 50.6%이었으며, 자녀동거 노인가구 및 기타 가구는 49.4%이었다.

## 第 2 節 老父母-子女關係 實態調查 應答者의 特性

### 1. 一般特性

다음은 노부모-자녀관계 파악을 위한 예비조사에서 가족으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虐待被害老人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피해노인들의 年齡別 分布를 보면 65~74세가 74.6%로 전체 응답노인들과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75세 이상의 고령층은 피해노인들의 비율이 더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으로 볼 경우에도 전체 노인들의 경우 71.2세이나 피해노인들의 경우에는 72.0세이었다. 성별 평균연령도 전체 노인중 남자노인은 71.9세, 여자노인은 71.0세이었으나 피해노인 중에서는 남자노인이 73.7세, 여자노인은 71.5세로 모두 피해노인들의 평균 연령이 높은 것으로 보아 노인들의 연령이 가족으로부터의 학대나 폭력의 主要 原因이 됨을 間接的으로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은 대부분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88.7%)이며, 특히 여자노

인의 경우 92.6%가 중학교 이하로 남자노인에 비해 학력이 낮은 편이다. 結婚狀態는 유배우 상태인 경우가 31.0%로 2/3 이상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다. 性別로는 남자노인의 경우 유배우율이 41.2%인데 비해 여자노인의 유배우율은 27.8%로 배우자가 없는 비율은 여자노인들이 더 높은 편이다. 이는 남녀의 平均壽命의 差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학대 피해노인들의 가구유형을 보면 노인 혼자 살고있거나 노인부부만이 살고 있는 老人單獨家口는 40.9%이었으며, 여자노인의 경우 42.6%로 남자노인(35.3%)에 비해 7.3%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노인 부부만이 살고 있는 경우는 14.1%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인데 이는 결혼상태에서 남자노인의 유배우 비율이 여자노인에 비해 높은 것과 관련하여 당연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表 3-3〉 被害老人의 性別 特性

(단위: %)

특성	남자	여자	전체
연령			
65~74세	47.1	83.3	74.6
75세 이상	52.9	16.7	25.4
평균 연령	73.7	71.5	72.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6.5	92.6	88.7
고등학교 이상	23.5	7.4	11.3
결혼상태			
유배우	41.2	27.8	31.0
무배우	58.8	72.2	69.0
가구유형			
노인단독가구	35.3	42.6	40.9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	64.7	57.4	59.1
계	100.0	100.0	100.0
(명)	(17)	(54)	(71)

학대 被害老人들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구형태는 자녀와 동거중인 경우로 전체 피해노인의 56.3%가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 보다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더 높은 편이다.

이를 예비조사에서 응답한 전체 노인들의 가구유형과 비교할 때 노인들만이 사는 노인단독가구는 전체 응답노인들이 높았으며, 子女同居老人家口 및 기타 가구의 경우는 피해노인들의 비율이 전체 응답노인들의 비율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는 자녀들과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 보다 학대를 經驗하는 비율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經濟狀態

### 가. 自家所有 與否 및 住宅名義

노인학대 피해노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居住하고 있는 住宅의 所有 形態를 살펴보면 자가인 경우가 57.4%, 전세나 월세인 경우가 42.6%로 남자노인들은 자가비율이 62.5%이고 여자노인들은 55.8%로 남자노인들은 自家比率이 높으며, 여자노인들은 전세나 월세인 비율이 높다.

〈表 3-4〉 被害老人의 性別 住宅所有 形態

(단위: %)			
자가여부	남자	여자	전체
자가	62.5	55.8	57.4
전세·월세 및 기타	37.5	44.2	42.6
계	100.0	100.0	100.0
(명)	(16)	(52)	(68)

註: 무응답 3명 제외

다음은 피해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자가이던 또는 전세나 월세이던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이는 피해노인들의 經濟狀態를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表 3-5〉 被害老人의 性別 住宅名義<sup>1)</sup>

(단위: %)

주택명의	남자	여자	전체
본인	58.8	40.4	44.9
배우자	-	15.4	11.6
자녀	35.3	32.7	33.3
자녀의 배우자 및 기타	5.9	11.5	10.1
계	100.0	100.0	100.0
(명) <sup>2)</sup>	(17)	(52)	(69)

註: 1) 자가, 전·월세 모두 포함하여 현 주택의 명의를 누구로 되어 있는가를 질문한 것임.

2) 무응답 2명 제외

전체 피해노인의 44.9%가 자기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외 자녀명의로 된 경우가 33.3%, 그리고 배우자 명의로 된 경우 11.6% 등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被害老人의 경우 본인명의로 된 경우가 58.8%이었고 자녀명의로가 35.3%이었으며, 배우자의 명의로 된 경우는 하나도 없었다.

〈表 3-6〉 被害老人의 住宅所有別 住宅名義

(단위: %)

자가여부	본인	배우자	자녀	자녀배우자	계(명)
자가	38.5	17.9	35.9	7.7	100.0(39)
전·월세 및 기타	55.2	3.4	27.6	13.8	100.0(29)
전체 <sup>1)</sup>	45.6	11.8	32.4	10.3	100.0(68)

註: 1) 무응답 2명 제외

그러나 여자 피해노인의 경우는 본인 명의는 40.4%, 자녀 명의 32.7%, 배우자 명의 15.4%, 그리고 자녀의 배우자 및 기타 가족원의 명의를 11.5%이었다. 이를 自家與否別 주택명의로 보면 자가인 경우 노인 본인의 명의로 된 경우가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자녀의 명의인 경우가 35.9%로 그 다음이었다.

전·월세인 경우는 노인 본인의 명의로 된 경우가 55.2%로 과반수 이상을 넘었으며,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는 27.6%로 자가인 경우 보다 8.3%포인트나 낮았다.

#### 나. 不動産 및 動産

주택명의로 별 부동산 시가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택명의로 학대 피해 노인 및 배우자로 되어 있는 경우 5,000만원 미만이 53.3%이었으며, 1억 이상의 不動産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30.0%나 되었다. 자녀나 기타 가족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5,000만원 미만은 66.7%, 1억 이상은 16.7%로 1억 이상은 오히려 피해노인 및 배우자들 보다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表 3-7〉 住宅名義別 不動産 時價

부동산 시가			(단위: %)
	본인 및 배우자	자녀·배우자 및 기타	전체
1,000만원 미만	30.0	16.7	26.2
1,000~4,999만원	23.3	50.0	31.0
5,000~9,999만원	16.7	16.7	16.7
1억 이상	30.0	16.7	26.2
계	100.0	100.0	100.0
(명) <sup>1)</sup>	(30)	(12)	(42)

註: 무응답 29명 제외

다음은 노인학대 피해노인들이 소유한 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83.1%가 動産을 소유하지 않고 있었으며, 성별로는 남자노인들의 27.4%가 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반면, 여자노인들의 경우는 15.6%만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性別 經濟狀態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남자노인들에 비해 여자노인들은 취업하는 비율이 낮고<sup>13)</sup> 대부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經濟的으로 依存하게 됨으로써 경제상태가 남자노인들 보다 劣惡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表 3-8〉 被害老人의 性別 動産有無

(단위: %)

동산유무	남자	여자	전체
없음	78.6	84.4	83.1
있음	27.4	15.6	16.9
계 (명) <sup>1)</sup>	100.0 (14)	100.0 (45)	100.0 (59)

註: 1) 무응답 12명 제외

#### 다. 收入源

피해노인들의 收入源으로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과 저축·증권 등의 이자로 인한 소득, 부동산 임대료, 자녀로부터의 보조, 生活保護對象·老齡手當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수입원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은 전체 피해노인의 7.8%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저축·증권 등의 이익배당으로 인한 수입은 21.9%, 부동산 임대료와 생활보호대상자나 노령수당에 의한 수입은 각각 7.8%이었으며, 자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는 노

13)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남자노인들의 취업률은 39.8%인데 비해 여자노인들의 취업률은 22.6%로 여자노인들의 취업률이 남자노인 보다 낮은 편임(정경희 외, 1998:154).

인은 70.3%나 되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들은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 소득과 저축·증권 이익배당과 年金으로 인한 수입에서 여자노인들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여자노인들은 不動産 賃貸料와 자녀로부터의 보조, 생활보호대상·노령수당 등에서 남자노인들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表 3-9〉 被害老人의 性別 收入源別 比率<sup>1)</sup>

수입원	(단위: %)		
	남자	여자	전체
본인 및 배우자 소득	12.5	6.3	7.8
저축·증권 이익배당	31.3	18.8	21.9
부동산 임대료·집세	6.3	8.3	7.8
자녀로부터의 보조	56.3	75.0	70.3
연금	6.2	4.2	4.7
퇴직금	-	-	-
개인연금	-	-	-
생활보호·노령수당	6.2	8.3	7.8
(명)	(16)	(48)	(64)

註: 1) 각 수입원이 있는 비율이며, 중복응답임.

학대피해노인들의 수입원 수별 분포를 보면 75.4%가 1가지의 수입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2가지 이상의 수입원이 있는 노인은 17.4% 이었고, 수입원이 전혀 없는 노인들도 7.2%나 되었다. 성별로는 여자노인들의 경우 남자노인들에 비해 수입원이 없는 비율이 더 높았다.

이들 피해노인들의 평균 수입원 수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表 3-11>과 같다. 즉, 연령별로는 낮은 연령일 경우 평균 수입원 수가 가장 많아 1.14종류이었으며, 教育水準別로는 고학력일수록 수입원이 많고,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상태의 노인들이 무배우 상태의 노인들 보다 수입원 수가 많았다(유배우: 1.41 종류, 무배우: 0.98 종류).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단독가구일 경우 자녀동거가구 및 기타가구의 노인들 보

다 평균 수입원 수가 더 많았다.

〈表 3-10〉 被害老人의 性別 收入源數別 分布

(단위: %)

수입원수	남자	여자	전체
없음	5.9	7.7	7.2
1가지	76.5	75.0	75.4
2가지 이상	17.6	17.3	17.4
계 (명) <sup>1)</sup>	100.0 (17)	100.0 (52)	100.0 (69)

註: 1) 무응답 2명 제외

〈表 3-11〉 被害老人의 特性別 平均 收入源 數<sup>1)</sup>

(단위: 개)

특성	남자	여자	전체
연령			
65~74세	1.13	1.14	1.14
75세 이상	1.11	1.00	1.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00	1.08	1.07
고등학교 이상	1.50	1.50	1.50
결혼상태			
유배우	1.29	1.47	1.41
무배우	1.00	0.97	0.98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1.33	1.27	1.29
자녀동거 및 기타가구	1.00	1.04	1.03
전체	1.12(1.118)	1.12(1.115)	1.12(1.116)

註: 수입원이 있는 노인(69명)만을 대상으로 함.

이 경우 수입원 수가 많은 것이 반드시 收入額도 많다고는 할 수 없으나 노인들의 특성별로 볼 때 연령이 낮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을 확률이 높으며, 유배우 노인들은 무배우 노



인들 보다는 배우자까지 포함한 소득이 있을 것이며, 또한 노인들만이 생활하는 노인단독가구일 경우 자녀동거 노인가구 보다는 노인들만이 생활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고, 떨어져 사는 子女로부터의 補助 등으로 그렇지 않은 노인들 보다는 수입액이 많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전체 수입원 중 이들 피해노인들의 가장 큰 수입원으로는 자녀로부터의 보조로서 전체 노인의 60.9%가 이에 해당되었으며, 다음은 저축·증권 이자로 17.2%, 생활보호대상·노령수당 7.8%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43.8%, 저축·증권이자 25.0%,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이 12.5% 등이었으나 여자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66.7%로 남자노인들 보다 22.9%포인트나 높았고, 생활보호대상자·노령수당도 여자노인들이 더욱 높았다.

〈表 3-12〉 被害老人의 性別 가장 큰 收入源<sup>1)</sup>

(단위: %)

특성	본인· 배우자소득	저축· 증권이자	부동산 임대료	자녀로부터 보조	연금	생활보호 노령수당	계 (명)
성							
남자	12.5	25.0	6.3	43.8	6.3	6.3	100.0 (16)
여자	2.1	14.6	4.2	66.7	4.2	8.3	100.0 (48)
결혼상태 <sup>2)</sup>							
유배우	13.6	31.8	9.1	36.4	4.5	4.5	100.0 (22)
무배우	-	9.5	2.4	73.8	4.8	9.5	100.0 (42)
가구유형 <sup>2)</sup>							
노인단독가구	3.7	33.3	3.7	40.8	7.4	11.1	100.0 (27)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	5.4	5.4	5.4	75.7	2.7	5.4	100.0 (37)
전체 <sup>2)</sup>	4.7	17.2	4.2	60.9	4.7	7.8	100.0 (64)

註: 1) 수입원이 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5명 제외

이 외 본인이나 배우자 근로소득은 2.1%로 남자노인들 보다 10.4%포인트나 낮았으며, 저축·증권 이자 등도 남자노인들 보다 10.4%포인트 낮았다(남자노인: 25.0%, 여자노인: 14.6%).

피해노인의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보조 36.4%, 저축·증권 이자 31.8%, 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 13.6%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무배우 노인들은 73.8%가 자녀로부터의 보조이었고, 저축·증권 이자와 생활보호대상·노령수당은 각각 9.5%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즉, 유배우 노인들은 무배우 노인들 보다 자녀들로부터의 보조는 37.4%포인트나 높았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보조를 받거나 노령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5.0%포인트나 높았다.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단독가구 노인들과 자녀동거 노인 및 기타가구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보조가 가장 높은 비율로 각각 40.8%, 75.7%이었으며, 그 외 老人單獨家口의 노인들은 저축·증권 등의 利子配當으로 인한 수입(33.3%), 그리고 생활보호대상 지원(11.1%), 연금(7.4%)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나, 자녀동거 및 기타가구의 노인들은 자녀로부터의 보조 외의 수입원은 그리 높지 않은 비율이었다.

전체 학대피해 노인들중 자녀로부터 보조를 받는 노인은 63.4%로서 이들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자노인들 보다는 여자노인들이 높고, 75세 이상의 후기 老齡層 보다는 74세 이하의 전기 노령층에서, 그리고 고학력층 보다는 저학력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노인들 보다는 무배우 노인들이, 그리고 단독가구 노인들 보다는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보조받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이들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을 보면, 피해노인의 64.5%가 30만원 이하를 보조받고 있으며, 성별로는 30만원 이하를 보

조받는 경우는 남녀 노인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50만원 이상의 고액을 支援받는 경우는 여자노인들 보다 남자노인들의 비율이 더 높았다.

〈表 3-13〉 全體 被害老人中 子女로부터 補助받는 老人의 比率<sup>1)</sup>

(단위: %)

특성	비율	(명)
성		
남자	52.9	(17)
여자	66.7	(54)
연령		
65~74세	64.2	(53)
75세 이상	61.1	(1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5.1	(63)
고등학교 이상	50.0	( 8)
결혼상태		
유배우	54.5	(22)
무배우	67.3	(49)
가구유형		
노인단독가구	51.7	(29)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	71.4	(42)
전체	63.4	(71)

註: 1) 전체 피해노인중 자녀로부터 보조받는 노인의 비율임.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의 後期 年齡層에서는 30만원 이하의 보조를 받는 비율이 72.8%로 74세 이하의 전기 연령층 보다 높고, 교육수준 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층에서, 그리고 유배우 노인들과, 단독가구 노인들의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表 3-14〉 被害老人의 特性別 子女로부터의 補助額<sup>1)</sup>

(단위: %)

특성	10만원미만	10~29만원	30~49만원	50만원 이상	계(명)
성					
남자	33.3	33.3	-	33.3	100.0( 9)
여자	30.6	33.3	19.4	16.7	100.0(36)
연령					
65~74세	32.4	29.4	14.7	23.5	100.0(34)
75세 이상	27.3	45.5	18.2	9.0	100.0(1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7	34.1	17.1	17.1	100.0(41)
고등학교 이상	25.0	25.0	-	50.0	100.0( 4)
결혼상태					
유배우	33.3	33.3	8.3	25.0	100.0(12)
무배우	30.3	33.3	18.2	18.2	100.0(53)
가구유형					
노인단독가구	20.0	46.7	13.3	20.0	100.0(15)
자녀동거 및 기타 가구	36.7	26.7	16.6	20.0	100.0(30)
전체 <sup>5)</sup>	31.1	33.4	15.5	20.0	100.0(45)

註: 1) 피해노인중 자녀로부터 보조받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함.

#### 라. 主觀的 經濟狀態

노부모학대 피해노인들이 생각하는 主觀的인 經濟狀態를 살펴보면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9.1%이었고, 전체 피해노인의 47.1%가 자신의 경제상태를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를 1998년도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調査結果(정경희 외, 1998)와 비교하면 '98년 조사에서는 좋은 편이다 11.2%, 보통이다 38.9%, 나쁜 편이다가 49.9%로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본 조사대상 노인들이 7.9% 포인트 높은 편이나 보통이다와 나쁜 편이다는 '98년 조사결과가 각각 5.1%포인트와 2.8%포인트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

대상 노인들이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노인들로서 전체적인 在家老人들 보다 경제상태에 있어 더 좋은 편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表 3-15〉 被害老人의 性別, 年齡別 主觀的 經濟狀態

(단위: %)

특성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계(명)
성				
남자	25.0	31.3	43.7	100.0(17)
여자	17.3	34.6	48.1	100.0(52)
연령				
65~74세	20.0	36.0	44.0	100.0(51)
75세 이상	16.7	27.8	55.6	100.0(18)
전체 <sup>1)</sup>	4.4	33.8	17.7	100.0(69)

註: 1) 무응답 3명 제외

주관적인 경제상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노인의 경우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25.0%,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3.7%인데 비해 여자노인의 경우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17.3%,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8.1%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남자노인들이, 그리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자노인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도 조사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는 74세 이하의 低年齡層에서는 본인의 경제상태가 좋다는 경우는 20.6%이고, 나쁘다는 경우는 44.0%이었으나 7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는 각각 16.7%와 55.6%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 자신이 느끼는 경제상태는 점차 나쁘다고 認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 3. 健康狀態

#### 가. 日常生活 遂行能力

노인들의 日常生活 遂行能力은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sup>14)</sup>. 전체 피해노인들 중 62.3%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나머지 37.7%는 日常生活 遂行能力에 있어 문제가 있는 노인들이었다. 즉, 약간 어렵다와 보통이다는 30.4%이었으며,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는 경우<sup>15)</sup>는 전체 피해노인의 7.2%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었다. 1998년 조사결과(정경희 외, 1998)에서는 전체 노인들 중 68.1%의 노인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9%의 노인들이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일상생활 수행동작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본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부양자에게 依存的인 노인들의 경우 獨立的인 생활이 가능한 노인들 보다 확대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피해노인들의 성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보면 남자노인들의 경우는

- 
- 14) 대개의 경우 노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함에 있어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눕기 등의 각각의 일상생활 동작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다에서 전혀 할 수 없다 까지 5가지 척도로 질문을 하여 수행능력을 측정하는데, 본 조사에서는 전체 수행동작 중 한가지라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면 그 수행정도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는 본 조사의 특성상 각 수행동작별 수행여부 보다는 확대받는 노인이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 15) 일상생활 수행동작을 전혀 할 수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본 조사대상에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임.

전혀 어렵지 않다가 52.9%이고,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 17.7%인데 비해, 여자노인들은 전혀 어렵지 않은 경우가 65.4%이고,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는 비율은 3.8%이었다. 본 조사에서는 여자노인들 보다는 남자노인들의 일상생활 수행동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이는 남자노인들이 여자노인들 보다 연령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로 보여진다.

연령별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보면 65~74세의 노인 중 전혀 어렵지 않다는 69.0%로 23.5%가 약간이라도 어려운 경우와 보통인 경우이며, 75세 이상은 38.9%가 전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는 비율은 65~74세가 5.9%, 75세 이상은 11.2%이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있어 연령에 따른 有意味한 差異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表 3-16〉 被害老人의 特性別 日常生活 遂行能力

(단위: %)

특성	전혀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 + 보통	매우 어려움 + 전혀 할수 없음	계(명)
성 <sup>1)</sup>				
남자	52.9	29.4	17.7	100.0(17)
여자	65.4	30.8	3.8	100.0(52)
연령 <sup>1)</sup>				
65~74세	69.0	23.5	5.9	100.0(51)
75세이상	38.9	50.0	11.2	100.0(18)
전체	62.3	30.4	7.2	100.0(69)

註: 1) 무응답 2명 제외

#### 나. 手段的 日常生活 遂行能力

피해노인들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상생

활용품이나 약 사러가기, 전화걸기, 버스나 전철 혼자 타기, 청소, 쓰레기 버리는 일, 가벼운 집안 일 하기 등과 같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혼자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마찬가지로 학대 피해노인들의 경우 이러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동작의 어려움으로 正常的인 노인들 보다 학대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닌지를 間接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노인은 58.0%로 나머지 42.0%가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sup>.

이 외 본 조사에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이 매우 어렵다거나 전혀 할 수 없다는 14.5%로 手段的 日常生活 遂行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3-17〉 被害老人의 特性別 手段的 日常生活 遂行能力 (단위: %)

특성	전혀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보통	매우 어려움+ 전혀 할 수 없음	계(명)
성				
남자	58.8	17.7	23.5	100.0(17)
여자	57.7	30.8	11.5	100.0(52)
연령				
65~74세	60.8	27.5	11.8	100.0(51)
75세 이상	50.0	27.8	22.2	100.0(18)
전체 <sup>1)</sup>	58.0	27.5	14.5	100.0(69)

註: 1) 무응답 2명 제외

16) 이는 1998년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단적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노인은 56.6%이었으며,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은 43.5%이었음.



피해노인들의 성별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남자노인들(58.8%)이 여자노인들(57.7%) 보다 약간 더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는 比率도 남자노인은 23.6%인데 비해 여자노인들은 11.5%로 남자노인들이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에 있어 어려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혀 어렵지 않다는 낮은 연령층일수록 높았으며, 매우 어렵다와 전혀 할 수 없다는 74세 이하 보다는 75세 이상의 高齡層에서 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 다. 主觀的 健康狀態

학대노인들이 評價하고 있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살펴보면 56.5%가 자신의 健康狀態가 나쁘다고 하여 1/2 이상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남자노인들은 35.2%만이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평가한데 비해, 여성노인들은 63.4%가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어 성별에 따른 건강상태의 主觀的 認識에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表 3-18〉 被害老人의 性別, 年齡別 主觀的 健康狀態

특성				(단위: %)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계(명)
성				
남자	41.2	23.5	35.2	100.0(17)
여자	21.1	15.4	63.4	100.0(52)
연령				
65~74세	19.6	17.6	62.8	100.0(51)
75세 이상	44.4	16.7	38.9	100.0(18)
전체 <sup>1)</sup>	26.1	17.4	56.5	100.0(69)

註: 1) 무응답 2명 제외

연령별로는 低年齡層일수록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65~74세는 62.8%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75세 이상은 38.9%만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연령에 따른 主觀的 健康狀態의 有意한 差異는 보이지 않았다.

## 第 4 章 老父母 虐待 實態

### 第 1 節 老父母 虐待 加害者의 特性

노부모학대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노인의 부양자에 대한 지나친 의존성과 그로 인한 부양 스트레스가 노부모학대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그 외 부양자의 성격특성도 학대요인이 되고 있다. 즉, 扶養者가 自我尊重感이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노부모와 한 집에서 생활할수록 虐待可能性이 높다고 하였다. 부양자의 무능력과 빈곤 등도 학대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조사의 부양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老父母 虐待 加害者의 一般特性

우선 加害者의 年齡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8.4%는 4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이며, 그 다음은 30대 이하로 26.9%, 그리고 50대 이상은 24.7%이었다. 성별로는 남자는 40대가 46.5%, 50대 이상 27.9%, 그리고 30대 이하 25.6%의 순인데 비해, 여자는 40대 50.0%, 30대 이하 28.0%, 그리고 50대 이상은 22.0%로 남자보다는 40대 이하의 비율이 높고, 50대 이상의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이들의 平均 年齡은 남자는 45.7세, 여자는 43.6세로 남자의 평균 연령이 약 2세 정도 더 높다. 교육수준은 71.4%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로서 남자는 67.4%, 여자는 75.0%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로서 여자들이 남자들 보다 고등학교 이상의 學歷 比率이 높은 편이다.

결혼상태는 91.1%가 유배우 상태로 남자 보다는 여자의 유배우 상

태가 더 높다. 타 조사의 결과와는 달리 本 調査의 교육수준과 결혼 상태는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높거나 유배우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남자보다 여자의 연령이 낮은 것에서 原因을 찾을 수 있겠다. 즉, 연령이 낮은 경우 학력이 높고 有配偶일 경우가 더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表 4-1〉 加害者の 性別 特性

(단위: %)			
특성	남자	여자	전체
연령			
39세 이하	25.6	28.0	26.9
40~49세	46.5	50.0	48.4
50세 이상	27.9	22.0	24.7
평균(세)	45.7	43.6	44.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2.6	25.0	28.6
고등학교 이상	67.4	75.0	71.4
결혼상태			
유배우	87.2	94.1	91.1
무배우	12.8	5.9	8.9
노인과의 관계			
아들	93.0	-	42.6
며느리	-	82.4	44.7
기타 <sup>4)</sup>	7.0	17.6	12.8
종교유무 <sup>5)</sup>			
없음	55.3	33.3	43.0
있음	44.7	66.7	57.0
계	100.0	100.0	100.0
(명)	(43)	(51)	(94)

註: 1) 무응답 1명 제외      2) 무응답 3명 제외      3) 무응답 4명 제외  
 4) 기타에는 딸, 사위, 조카 등이 포함됨.      5) 무응답 8명 제외

가해자의 노인과의 관계는 아들이 42.6%, 며느리가 44.7%, 딸·사위 등은 12.8%로써 노인의 자녀가 51.1%, 子女의 配偶者 및 기타는 48.9%이다. 이들 가해자 중 宗教를 믿고 있는 대상자는 57.0%로 과반수 이상이 宗教를 믿고 있으며, 특히 여자 가해자의 경우 66.7%가 宗教를 믿고

있어 남자 부양자에 비해 22.0%포인트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의 就業率은 48.8%로 남자 가해자는 59.0%가, 그리고 여자 가해자는 40.4%가 취업중이다. 취업중인 가해자의 職種을 살펴보면 서비스·판매직이 3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單純勞務職이 24.4%, 고위 관리직 및 준 전문직이 19.5%, 그리고 사무직 12.2% 순이다. 성별로는 남자는 단순노무직의 비율이 가장 높아 34.8%이었고, 여자의 경우는 서비스·판매직과 고위관리직 및 준 전문직이 각각 33.3%로 가장 높으며, 그 외 無給家族從事者, 단순노무직의 순으로 되어 있다<sup>17)</sup>.

〈表 4-2〉 加害者の 性別 就業與否 및 職種

구분	남자	여자	전체
취업률	59.0	40.4	48.8
직종 <sup>1)</sup>			
고위관리직·(준)전문직	8.7	33.3	19.5
사무직	21.7	-	12.2
서비스판매직	30.4	33.3	31.7
농업·기계장치조작원	4.3	-	2.4
단순노무직	34.8	11.1	24.4
무급가족종사자	-	22.2	9.8
계	100.0	100.0	100.0
(명) <sup>2)</sup>	(23)	(18)	(41)

註: 1) 취업중인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함.

2) 무응답 1명 제외

17) 15세 이상 성인 남녀의 취업률과 비교해 보아도 본 조사의 가해자의 취업률이 낮다고 할 수 있음. 즉, 통계청 자료(1999b)에 의하면 15세 이상의 취업률은 56.5%로 본 조사 가해자의 취업률(48.8%) 보다 높으며, 성별로도 본 조사 가해자의 취업률이 낮음(15세 이상: 남자-69.4%, 여자-44.4%, 가해자: 남자-59.0%, 여자-40.4%). 남자의 취업직종별로 볼 때 고위 관리직 및 (준)전문직은 15세 이상 전체 남자가, 그리고 사무직과 서비스판매직 및 단순노무직은 본 조사의 가해자가 높음. 특히 단순노무직의 경우 전체 취업자 보다 4배 정도나 높아 본 조사의 학대가해자는 전체 남자의 경제수준 보다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이는 가해자의 경제적 수준과 노부모학대와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2. 加害者と老父母와의 平素 關係<sup>18)</sup>

가해자와 노부모와의 평소관계가 좋은 편이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나쁜 편인 경우가 34.0%로 좋은 편이나 보통이었다는 경우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加害者の 特性別 老父母와의 평소 관계를 보면 가해자가 여자일 때 보다는 남자일 경우, 연령이 40대 이하일 경우 보다는 50세 이상인 경우에 노부모와의 평소 관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學歷水準에 있어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인 경우보다는 중학교 이하의 低學歷水準일 경우에 관계가 보다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결혼 상태별로는 有配偶보다는 無配偶일 경우에, 그리고 종교가 있는 경우 보다는 없는 경우에 노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편이 많았다.

노부모와의 가족관계별로 보면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나쁜 편이 가장 높아 45.0%이었으며, 며느리인 경우에는 33.3%, 기타 가족원의 경우는 나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해자의 就業與否別로 보면 취업중인 경우의 노부모와의 관계는 좋은 편인 경우가 38.1%, 나쁜 편인 경우는 28.6%이었으나 非就業中일 경우에는 좋은 편인 경우가 25.0%, 나쁜 편인 경우 38.6%로 부양자의 취업여부에 따른 노부모와의 관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同居與否別로는 동거중인 경우에는 31.8%가 나쁜 경우이었으나 비동거중인 경우에는 36.0%로 비동거중일 경우 가해자와 노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나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동거중이라 노부모와의 관계가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기 때문에 비동거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18) 여기서의 평소관계는 학대가 발생하기 전의 관계를 의미함.

〈表 4-3〉 加害者の 特性別 老父母와의 平素 關係

(단위: %)

특성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계(명)
성				
남자	37.2	20.9	41.9	100.0( 43)
여자	29.4	43.1	27.5	100.0( 51)
연령 <sup>1)</sup>				
39세 이하	32.0	36.0	32.0	100.0( 25)
40~49세	35.6	33.3	31.1	100.0( 45)
50세 이상	30.4	30.4	39.1	100.0( 23)
교육수준 <sup>2)</sup>				
중학교 이하	26.9	23.1	50.0	100.0( 26)
고등학교 이상	36.9	35.4	27.7	100.0( 65)
결혼상태 <sup>3)</sup>				
유배우	31.7	36.6	31.8	100.0( 82)
무배우	50.0	12.5	37.5	100.0( 8)
종교유무 <sup>4)</sup>				
없음	32.4	21.6	46.0	100.0( 37)
있음	36.7	42.9	20.4	100.0( 49)
노부모와의 관계				
아들	37.5	17.5	45.0	100.0( 40)
며느리	21.4	45.2	33.3	100.0( 42)
기타	58.3	41.7	-	100.0( 12)
전체 <sup>5)</sup>	33.0	33.0	34.0	100.0( 94)

註: 1) 무응답 1명 제외      2) 무응답 3명 제외  
 3) 무응답 4명 제외      4) 무응답 8명 제외

〈表 4-4〉 加害者の 就業與否 및 同居與否別 老父母와의 平素 關係

(단위: %)

특성	좋은 편	보통	나쁜 편	계(명)
취업여부 <sup>1)</sup>				
취업중	38.1	33.1	28.6	100.0(42)
비취업	25.0	36.4	38.6	100.0(44)
동거여부				
동거	20.5	47.7	31.8	100.0(44)
비동거	44.0	20.0	36.0	100.0(50)
전체	33.0	33.0	34.0	100.0(94)

註: 1) 무응답 8명 제외

### 3. 加害者 成長時 虐待目擊 및 經驗與否

家庭暴力의 發生原因을 규명하기 위한 이론의 하나로 社會學習 및 役割模型理論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이 타인의 폭력행위를 관찰·모방함으로써 공격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하는 폭력행위 하나의 ‘학습된 현상’으로 보는 이론이다. 즉, 성장시 父 또는 母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성장했을 경우, 그들 자신이 성인이 된 후에 이와 같은 暴力의 役割을 模倣하게 된다는 것이다(Steinmetz, 1987; 김승권 외, 1998).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해자가 성장시 가정폭력을 목격하며 자랐거나 또는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성장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여 보았다. 전체 가해자중 성장시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26.8%이었으며, 실제 가해자가 家庭暴力를 經驗한 경우는 17.5%에 달하였다. 가해자의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녀 모두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보다는 목격하고 성장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남자 가해자는 가정폭력을 目擊하고 成長한 경우가 27.5%로 여자 가해자의 25.0% 보다 높은 편이었고, 실제로 경험한 경우는 남자 가해자(15.0%) 보다 여자 가해자가 높은 비율(23.5%)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성장한 경우는 30대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높았고, 경험한 비율은 高年齡層으로 갈수록 더욱 높아졌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의 학력인 경우 高等學校 이상의 學歷者보다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성장한 비율과 경험한 비율 모두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결혼상태별로는 현재 유배우인 가해자가 무배우인 경우 보다 목격, 경험 모두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가해자와 노부모와의 관계별로는 노부모와 며느리 관계일 경우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와 경험한 경우가 가장 높아 각각 28.6%와 33.3%이었으며, 그 다음은



아들일 경우로 28.2%, 15.4%이었으며, 기타 가족원일 경우는 가장 낮아 목격한 경우는 20.0%, 경험한 경우는 11.1%이었다.

〈表 4-5〉 加害者の 特性別 成長時 家庭暴力 目撃 및 經驗比率<sup>1)</sup>  
(단위: %)

특성	가정폭력	
	목격	경험
성		
남자	27.5	15.0
여자	25.0	23.5
연령		
39세 이하	41.7	7.1
40~49세	22.2	18.5
50세 이상	23.5	25.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4	25.0
고등학교 이상	26.3	15.0
결혼상태		
유배우	28.3	19.6
무배우	16.7	14.3
노인과의 관계		
아들	28.2	15.4
며느리	28.6	33.3
기타	20.0	11.1
전체 (명)	28.6 (15)	20.0 (10)

註: 1) 성장시 가정폭력 목격 및 경험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해자중 성장시 가정폭력을 목격, 경험하였다는 비율임.

가해자의 就業與否別로는 취업자인 경우 가정폭력을 목격하고 성장한 경우는 35.7%로 가해자의 약 1/3이상이 목격하고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험한 경우는 10.7%이었다. 반면 비취업자인 경우는 목격하며 성장한 경우보다(20.8%) 실제로 경험한 경우가 비율이 더 높아 25.0%로 가해자 4명중 1명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 加害者の 就業與否別 成長時 家庭暴力 目撃 및 經驗比率<sup>1)</sup>  
(단위: %)

취업여부	가정폭력	
	목적	경험
취업중	35.7	10.7
비취업	20.8	25.0
전체	28.8	17.3

註: 1) 성장시 가정폭력 목적 및 경험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해자중 성장시 가정폭력을 목적, 경험하였다는 비율임.

## 第 2 節 老父母 虐待 實態

### 1. 全體 老人 應答者의 老父母 虐待 經驗

전체 노인 應答者를 대상으로 虐待經驗 與否를 질문한 결과는 다음 <表 4-7>과 같다. 우선 전체 노인중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子女 및 그 家族員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노인들의 경우는 8.3%, 여자노인들은 8.2%로 성별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年齡別로는 高齡일수록 높은 虐待經驗率을 보여 74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7.7%만이 학대경험이 있는데 비해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9.9%가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教育水準別로는 중학교 이하 학력의 노인들은 9.3%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 학력의 노인들은 4.7%가 학대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低學歷層에서의 학대경험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表 4-7〉 全體老人의 特性別 虐待經驗 與否

(단위: %)

특성	학대경험 여부		계(명)
	없음	있음	
성			
남자	91.7	8.3	100.0(205)
여자	91.8	8.2	100.0(660)
연령			
65~74세	92.3	7.7	100.0(684)
75세 이상	90.1	9.9	100.0(181)
교육수준 <sup>1)</sup>			
중학교 이하	90.7	9.3	100.0(679)
고등학교 이상	95.3	4.7	100.0(171)
결혼상태 <sup>2)</sup>			
유배우	94.1	5.9	100.0(372)
무배우	89.8	10.2	100.0(480)
가구유형 <sup>3)</sup>			
노인단독가구	93.3	6.7	100.0(431)
자녀동거가구 및 기타	90.0	10.0	100.0(422)
전체	91.7	8.3	100.0(853)

註: 1) 무응답 15명 제외

2) 무응답 13명 제외

3) 무응답 12명 제외

結婚狀態別로는 유배우인 경우는 5.9%가, 그리고 無配偶者인 경우에는 10.2%가 학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배우상태에 따른 학대 경험 비율의 차이를 뚜렷이 보이고 있다. 家口類型別로는 노인들만이 사는 老人單獨家口의 경우는 6.7%가 학대를 경험하였고,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의 경우는 10.0%가 학대를 경험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자녀들로부터의 虐待可能性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4-8〉 全體老人의 特性別 虐待經驗 比率

(단위: %)

특성	남자	여자	전체
연령			
65~74세	5.4	8.4	7.7
75세 이상	16.1	7.2	9.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9	8.7	9.3
고등학교 이상	4.0	5.7	4.7
결혼상태			
유배우	4.3	7.2	5.9
무배우	24.4	8.9	10.2
가구유형			
노인단독가구	5.1	7.3	6.7
자녀동거가구 및 기타	12.8	9.2	10.0
전체	8.3	8.2	8.2

피해노인들의 性別 年齡別 虐待經驗率을 보면 65~74세 노인들의 경우 남자노인들 중에는 5.4%가, 그리고 여자노인들 중에서는 8.4%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노인들의 학대경험률이 높았다. 그러나 7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남자노인들 중에서는 16.1%가 경험한 반면, 여자노인들 중에서는 7.2%만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연령별 학대 경험률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中學校 以下の 學歷에서는 남자노인의 학대경험률이 높았으나(남자노인: 12.9%, 여자노인: 8.7%)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에서는 여자노인의 학대 경험률이 높았다(남자노인: 4.0%, 여자노인: 5.7%).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일 경우 남자노인은 4.3%가 학대를 경험한 것에 비해 여자노인은 7.2%로 여자노인이 높은 비율이었으며, 무배우일 경우에는 남자노인은 여자노인의 약 3배 정도의 학대경험률을 보였다(남자노인: 24.4%, 여자노인: 8.9%). 가구유형별로는 남녀노인 모두 자녀동거가구 및 기

타가구의 노인들이 학대경험률이 높았으며, 특히 남자노인들의 경우 단독가구 노인들은 5.1%인데 비해 子女同居家口 및 기타가구의 노인들은 12.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 2. 老父母 虐待類型別 經驗比率 및 回數

전체 응답노인의 虐待類型別 經驗比率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폭력의 경우는 전체 노인의 0.3%만이 경험하여 학대유형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언어·심리적 학대의 경우는 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외 경제적 착취는 2.1%, 방임은 2.5%, 그리고 기타 학대 경험비율은 1.0%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부 先行研究의 경우에도 노인의 신체적(육체적) 학대의 비율은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며, 언어적 학대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김한곤, 1998).

〈表 4-9〉 全體 應答老人의 性別 虐待類型別 虐待 經驗比率<sup>1)</sup>  
(단위: %)

학대유형	남자	여자	전체
신체적 학대·폭력	0.5	0.3	0.3
언어·심리적 학대	7.8	7.7	7.7
경제적 착취	2.0	2.1	2.1
방임	4.4	2.0	2.5
기타	0.5	1.2	1.0
전체	8.3	8.2	8.2

註: 1) 전체 65세 이상 응답노인 865명중 각 유형별 학대·폭력을 경험한 노인의 비율임.

노인학대를 경험한 노인들의 학대유형별 平均 經驗回數를 보면, 지난 1년 동안 3.6회 정도 학대를 경험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자노인은

4.1회, 여자노인은 3.4회로 여자노인들 보다 남자노인들이 학대를 경험하는 횟수가 더 많았다.

학대유형별로는 身體的 虐待·暴力은 남녀 노인 모두 1.0회로 가장 적은 회수를 보여주었고, 言語·心理的 虐待은 2.7회로 남자노인(2.9회)이 여자노인(2.7회)들 보다 약간 더 많은 회수를 경험하였다. 經濟的 搾取는 남자노인은 1.0회인데 비해 여자노인들은 1.3회로 남자노인들에 비해 경제적 착취는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임은 여자노인들 보다는 남자노인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노인: 1.8회, 여자노인: 1.5회).

〈表 4-10〉 被害老人의 性別 虐待·暴力 平均 經驗 回數

(단위: 회)

학대유형	남자	여자	전체
신체적 학대·폭력	1.0	1.0	1.0
언어·심리적 학대	2.9	2.7	2.7
경제적 착취	1.0	1.3	1.2
방임	1.8	1.5	1.6
기타	1.0	1.0	1.0
전체	4.1	3.4	3.6

### 3. 老父母虐待 發生頻度 및 理由

老父母虐待의 發生頻度を 보면, 전체 노부모학대 건수중 44.4%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4.7%는 2~3개월에 1회, 그리고 12.3%는 월 1~2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의 특성별로는 남자일 경우 거의 매일 과 2~3개월에 1회 발생하는 경우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여자는 주1회 이하, 월 1~2회 및 기타 등이 남자보다 높았다.

〈表 4-11〉 加害者の 特性別 老父母虐待 頻度

(단위: %)

특성	거의 매일	주 1회 이하	월 1~2회	2~3개월에 1회	기타	계(명)
성 <sup>1)</sup>						
남자	46.2	2.6	10.2	28.2	12.8	100.0(39)
여자	40.0	12.0	12.0	22.0	14.0	100.0(50)
연령 <sup>2)</sup>						
39세 이하	28.0	8.0	16.0	32.0	16.0	100.0(25)
40~49세	41.5	7.3	14.6	22.0	14.6	100.0(41)
50세 이상	59.1	9.1	-	22.7	9.1	100.0(22)
교육수준 <sup>3)</sup>						
중학교 이하	60.9	8.7	17.4	4.3	8.7	100.0(23)
고등학교 이상	34.9	7.9	9.5	31.8	15.9	100.0(63)
결혼상태 <sup>4)</sup>						
유배우	46.8	6.5	9.0	23.4	14.3	100.0(77)
무배우	25.0	25.0	12.5	25.0	12.5	100.0( 8)
노부모와의 관계 <sup>1)</sup>						
아들	47.4	2.6	10.5	28.9	10.5	100.0(38)
며느리	46.3	14.6	12.2	19.5	7.3	100.0(41)
기타	10.0	-	10.0	30.0	50.0	100.0(10)
전체 <sup>5)</sup>	42.7	7.9	11.2	24.7	13.5	100.0(94)

註: 1) 무응답 5명 제외      2) 무응답 6명 제외  
 3) 무응답 8명 제외      4) 무응답 9명 제외  
 5) 무응답 13명 제외

加害者の 年齢이 높아질수록 거의 매일 학대한다는 비율은 높아 39세 이하에서는 28.0%인데 비해, 40~49세는 41.5%, 50세 이상에서는 59.1%나 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이하인 경우는 거의 매일 발생하는 비율이 60.9%이었으나 고등학교 이상은 34.9%로 저학력일수록 학대발생률이 높았다. 결혼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무배우자 보다 거의 매일 학대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老父母와의 關係에서는 학대자가 노부모의 아들일 경우 거의 매일 학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47.4%이

었고, 며느리는 46.3%, 기타 가족원은 10.0%이었다.

加害者の 就業與否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취업중인 가해자는 거의 매일 학대하는 경우가 38.5%이었으나 비취업중인 가해자는 44.2%로 취업자 보다 거의 매일 학대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 외 주 1회 이하와 2~3개월에 1회도 비취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表 4-12〉 加害者の 就業與否 및 同居與否別 老父母虐待 頻度

(단위: %)

구분	거의 매일	주 1회 이하	월 1~2회	2~3개월에 1회	기타	계(명)
취업여부 <sup>1)</sup>						
취업중	38.5	5.1	12.9	25.6	17.9	100.0(39)
비취업	44.2	9.3	11.6	27.9	7.0	100.0(43)
동거여부 <sup>2)</sup>						
동거	50.0	15.9	18.2	13.6	2.3	100.0(44)
비동거	35.6	-	4.4	35.6	24.4	100.0(45)
전체	42.7	7.9	11.2	24.7	13.5	100.0(89)

註: 1) 무응답 12명 제외

2) 무응답 5명 제외

가해자와 노부모가 동거하는 경우 비동거하는 경우보다 학대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의 매일 학대하는 비율은 50.0%, 주 1회 이하는 15.9%, 그리고 월 1~2회 18.2%로 모두 동거자의 학대비율이 높아 학대자와 동거할 경우 노부모의 학대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노부모를 虐待하는 理由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經濟的 問題(39.5%)이었으며, 그 다음은 性格差異(22.1%)이었다. 가해자의 성별로는 남녀 모두 경제적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으나 그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 남자는 60.0%인데 비해 여자는 21.7%이었다.



〈表 4-13〉 加害者の 特性別 老父母虐待 理由<sup>1)</sup>

(단위: %)

학대이유	성		연령			전체
	남자	여자	39세 이하	40~49세	50세 이상	
가해자 오해	2.5	10.9	8.0	7.5	5.0	7.0
피해자 및 다른 가족 잘못	-	6.5	-	2.5	5.0	3.5
성격차이	22.5	21.7	24.0	22.5	20.0	22.1
가해자 술버릇	5.0	-	-	2.5	5.0	2.3
경제적 문제	60.0	21.7	32.0	40.0	50.0	39.5
가해자 자격지심	-	8.7	8.0	2.5	5.0	4.7
사소한 말다툼	-	6.5	4.0	2.5	5.0	3.5
상호 이해부족	5.0	6.5	12.0	5.0	-	5.8
피해자 재혼문제	2.5	6.5	4.0	7.5	-	4.7
기타 <sup>2)</sup>	2.5	10.9	8.0	7.5	5.0	7.0
계 (명) <sup>3)</sup>	100.0 (40)	100.0 (46)	100.0 (25)	100.0 (40)	100.0 (20)	100.0 (86)

註: 1) 노부모학대 이유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2) 기타 이유에는 사회적 이유, 가해자 이성문제 및 결혼반대, 피해자 무시, 부모 모시기 싫어서, 종교문제 등이 포함됨.

3) 무응답 1명 제외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성격차이에 의한 것으로 남녀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것은 남자는 가해자의 술버릇과 상호 이해부족을 이유로 든 반면, 여자는 가해자의 誤解와 가해자 자격지심에 의해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연령별로도 학대이유에 차이를 보였는데 경제적 문제는 고령층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인데 비해 성격차이는 저연령으로 갈수록 높은 비율이었다. 이 외 39세 이하의 低年齡層은 相互 理解不足을, 40~49세는 가해자 오해, 피해자 재혼문제 등을, 그리고 50세 이상은 나머지 이유가 고르게 나타나 별 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다.

〈表 4-13〉 계속<sup>1)</sup>

(단위: %)

학대이유	교육수준 <sup>3)</sup>		결혼상태 <sup>4)</sup>		노부모와의 관계			전체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이상	유배우	무배우	아들	며느리	기타	
가해자 오해	-	10.0	8.1	-	2.7	12.8	-	7.7
피해자 및 다른 가족 잘못	-	1.7	4.1	-	-	7.7	-	3.9
성격차이	21.7	23.3	23.0	12.5	24.3	23.1	10.0	21.8
가해자 술버릇	4.3	1.7	2.7	-	2.7	-	10.0	2.6
경제적 문제	56.5	35.0	36.5	62.5	59.5	15.4	60.0	41.0
가해자 자격지심	4.3	3.3	5.4	-	-	7.7	10.0	5.1
사소한 말다툼	-	5.0	4.1	-	-	7.7	-	3.8
상호 이해부족	-	8.3	4.1	12.5	5.4	7.7	-	6.4
피해자 재혼문제	-	6.7	5.4	-	2.7	5.1	10.0	1.3
기타 <sup>2)</sup>	13.2	5.0	6.7	12.5	2.7	12.8	-	6.4
계 (명)	100.0 (23)	100.0 (60)	100.0 (74)	100.0 ( 8)	100.0 (37)	100.0 (39)	100.0 (10)	100.0 (78)

註: 1) 노부모학대 이유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2) 기타 이유에는 사회적 이유, 가해자 이성문제 및 결혼반대, 피해자 무시, 부모 모시기 싫어서, 종교문제 등이 포함됨.

3) 무응답 3명 제외      4) 무응답 4명 제외      5) 무응답 8명 제외

교육수준별로도 經濟的인 問題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나 특히 중학교 이하의 저학력일 경우 더 높은 비율이었으며, 유배우 보다는 무배우자일 경우, 그리고 가해자가 노인의 아들일 경우 비율이 높았다. 학대자가 며느리일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는 性格差異에 의한 학대가 주원인이었다.

가해자의 취업여부별로는 就業者가 비취업자 보다 오히려 경제문제 때문에 학대하는 비율이 높았으며(취업자: 50.0%, 비취업자: 27.9%), 그 다음으로는 취업자는 성격차이(13.9%), 가해자 자격지심(8.3%) 순

이었고, 비취업자는 성격차이(37.9%), 가해자 오해(11.6%)이었다. 가해자와 노인과의 동거여부별로는 非同居者가 동거자 보다 경제적 문제 때문에 학대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表 4-14〉 加害者の 就業與否 및 同居與否別 老父母虐待 理由<sup>1)</sup>  
(단위: %)

학대이유	취업여부 <sup>3)</sup>		동거여부		전체
	취업중	비취업	동거	비동거	
가해자 오해	2.8	11.6	2.4	11.4	7.0
피해자 및 다른 가족 잘못	2.8	4.7	7.1	-	3.5
성격차이	13.9	27.9	21.4	22.7	22.1
가해자 술버릇	2.8	2.3	2.4	2.3	2.3
경제적 문제	50.0	27.9	38.1	40.9	39.5
가해자 자격지심	8.3	2.3	4.8	4.5	4.7
사소한 말다툼	5.6	2.3	7.1	-	3.5
상호 이해부족	5.6	7.0	4.8	6.8	5.8
피해자 재혼문제	5.6	4.7	2.4	6.8	4.7
기타 <sup>2)</sup>	2.6	9.3	9.5	4.6	7.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36)	(43)	(42)	(44)	(86)

註: 1) 노부모학대 이유가 있는 경우만 대상으로 함.

2) 기타 이유에는 사회적 이유, 가해자 이성문제 및 결혼반대, 피해자 무시, 부모 모시기 싫어서, 종교문제 등이 포함됨.

3) 무응답 7명 제외

#### 4. 被害老人의 身體的·精神的 症狀 및 醫療處置率

本 研究에서는 虐待받은 被害老人이 가해자에게 학대를 받은 결과 어떠한 症狀이 나타났는지 파악하고, 이러한 증상들로 인하여 醫療處置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身體的 症狀

학대 피해노인 중 身體的 症狀를 보인 경우는 9.5%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에서 분석된 虐待類型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노인이 학대를 받았던 주된 유형은 情緒的인 虐待로 신체적인 학대는 전체 노인의 극소수에 불과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sup>19)</sup>.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두통으로 머리가 멍한 경우’이었고, 심각한 신체적 증상은 ‘팔다리가 부러지는 등의 골절상’ 및 ‘정신과 치료를 받는 정도의 쇼크’ 등으로 나타났다(表 4-15 參照).

<表 4-15> 虐待 結果 나타난 身體的 症狀 有無<sup>1)</sup>

(단위: %)

신체적 증상 유무	비율
증상없음	91.5
증상있음	8.5
계	100.0
(명)	(94)

註: 1) 가해자수별 신체적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며, 중복응답임.

학대받은 被害老人의 特性別로 身體的 症狀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이 <表 4-16> 이다. 학대결과 신체적 증상은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에게서 발견되었고, 연령별로는 前期 老人層(65세~74세 이하)이 後期 老人層(75세 이상)보다 2.7배나 높았다.

19) 이혜영(1996년)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신체적 학대의 유경험자는 7.5%인 반면 정서적 학대는 17.3%로 밝히고 있음. 이영숙(1997년)은 대한가정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인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에서 6.0%를 신체적 유경험자로 제시하고 있고, 정서적 학대는 100%의 모든 노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학대라고 하였음. 그리고 반형욱(1997년)의 석사학위 논문인 『노인학대의 실태조사연구』에서는 8.5%가 신체적 학대의 경험자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정서적 학대를 받은 노인은 24.8%의 결과를 보여주었음.

〈表 4-16〉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身體的 症狀 有無<sup>1)</sup>

(단위: %)

구분	증상없음	증상있음	계(명)
성			
남자	90.9	9.1	100.0(22)
여자	91.7	8.3	100.0(72)
연령			
65~74세	89.7	10.3	100.0(68)
75세 이상	96.2	3.8	100.0(26)
전체	91.5	8.5	100.0(94)

註: 1) 가해자수별 신체적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며, 중복응답임.

그리고 학대결과 加害者가 며느리인 경우보다 아들인 경우에 신체적 증상을 많이 보였다(아들: 10.0%, 며느리: 7.1%). 또한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노부모가 가해자와 同居하는 노부모보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동거: 6.8%, 비동거: 10.0%).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고유의 家族主義에 근거한 扶養構造 속에서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큰 血緣關係일수록 신체적인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가해자와의 동거에서 오는 물리적인 접촉은 신체적 학대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4-17〉 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身體的 症狀 有無

(단위: %)

구분	증상없음	증상있음	계(명)
노인과의 관계			
아들	90.0	10.0	100.0(40)
며느리	92.9	7.1	100.0(42)
기타 <sup>1)</sup>	91.7	8.3	100.0(12)
동거여부			
동거	93.2	6.8	100.0(44)
비동거	90.0	10.0	100.0(50)
전체	91.5	8.5	100.0(94)

註: 1) 기타에는 딸·사위, 손자녀, 조카, 시동생·시누이, 동생 등의 가족원을 포함함.

## 나. 精神的 症狀

虐待 被害老人 중 76.6%가 정신적 증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노인의 대부분은 신체적인 고통보다는 精神的 苦痛을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現象은 調査結果 나타난 노인학대의 주된 유형이 言語나 情緒的 虐待로 발생한 정신적인 학대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피해노인은 평균 1.3종류의 정신적 증상수를 보였다. 가장 많이 나타난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30.8%)과 ‘매사에 불안, 우울함’(29.7%) 등이었으며, 또한 ‘죽고싶다’는 위험스러운 생각을 하는 경우도 22.0%나 되어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表 4-18〉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단위: %, 명)

정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비율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23.4
증상있음	76.6
계	100.0
(명)	(94)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30.8
매사에 불안, 우울함	29.7
죽고 싶다는 생각	22.0
기타 <sup>2)</sup>	17.5
(명)	(91)
피해노인 1인당 평균 정신적 증상수	1.3

註: 1) 정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중복응답임.

2) 기타에는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가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화가남, 안타까움, 섭섭함, 따로 살고싶음, 집을 나가고 싶음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학대결과 피해 노부모에게 精神的 症狀이 나타나게 하는 학대유형은 가해자에 의한 言語·心理的 虐待와 經濟的 搾取 및 放任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학대는 다른 학대유형에 비하여 비교적 정신적 증상으로까지 발전되는 경우는 적었다(表 4-19 參照).

〈表 4-19〉 虐待類型別 精神的 症狀 有無

(단위: %)

학대유형	증상없음	증상있음	계(명)
신체적학대	66.7	33.3	100.0( 3)
언어·심리적 학대	23.3	76.7	100.0(90)
경제적 착취	26.1	73.9	100.0(23)
방임	33.3	66.7	100.0(33)
기타	25.0	75.0	100.0(16)

加害者別로 학대결과 정신적 증상이 나타난 경우를 性別로 보면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에게서 정신적 증상이 나타나는 比重이 훨씬 높았다. 여자노인에게 나타나는 증세 중 ‘죽고싶다는 생각’(23.4%)이 차지하는 비중은 남자노인(14.3%)보다 훨씬 높았다. 반면 男子老人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자아상실’(35.7%)과 ‘매사에 불안, 우울함’(35.7%)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정신적인 학대로 인하여 나타나는 증상이 여자노인의 경우에 훨씬 고통을 주고 있음을 의미한다(表 4-20 參照).

〈表 4-20〉 性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단위: %)

정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남자	여자	전체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50.0	15.3	23.4
증상있음	50.0	84.7	76.6
계	100.0	100.0	100.0
(명)	(27)	(72)	(94)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35.7	29.9	30.8
매사에 불안, 우울함	35.7	28.6	29.7
죽고 싶다는 생각	14.3	23.4	22.0
기타 <sup>2)</sup>	14.3	18.2	17.5
(명)	(14)	(77)	(91)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수로 중복응답임.  
 2) 기타에는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가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화가남, 안타까움, 섭섭함, 따로 살고싶음, 집을 나가고 싶음 등이 포함되어 있음.

年齡別로는 후기 노인층(75세 이상)보다 前期 老人層(65~74세)에서 정신적 증상이 많이 나타났다. 전기 노인층은 ‘죽고싶다는 생각’(24.3%)을 하는 비율이 후기 노인층(11.8%)보다 높았고, 後期 老人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41.2%)이었다. 이는 전기 노인층이 후기 노인층보다 신체 및 경제적으로 自立的일 可能性이 높기 때문에 학대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도 더욱 클 수 있다고 사료된다.



〈表 4-21〉 年齡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단위: %)

정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65~74세	75세 이상	전체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16.2	42.3	23.4
증상있음	83.8	57.7	76.6
계	100.0	100.0	100.0
(명)	(68)	(26)	(94)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28.4	41.2	30.8
매사에 불안, 우울함	28.4	35.3	29.7
죽고 싶다는 생각	24.3	11.8	22.0
기타 <sup>2)</sup>	18.9	11.7	17.5
(명)	(74)	(17)	(91)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유무수로 중복응답임.

2) 기타에는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가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화가남, 안타까움, 섭섭함, 따로 살고싶음, 집을 나가고 싶음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리고 身體的 健康狀態가 나쁠수록 학대결과가 정신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다(좋은: 66.7%, 보통: 78.6, 나쁨: 80.4%). 또한 증상도 건강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건강이 좋거나 보통인 경우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정신적 증상은 각각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55.0%)과 ‘매사에 불안, 우울함’(42.9%)이었고, 건강이 나쁜 경우에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은 ‘매사에 불안, 우울함’(31.6%)과 ‘죽고싶다는 생각’(28.1%)으로 나타나 건강이 나쁠수록 否定的인 심리상태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依存性이 더욱 증가함으로 해서 扶養者의 스트레스가 加重될 경우 虐待에 더욱 露出될 수밖에 없는 연구결과<sup>20)</sup>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20) 건강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노인학대에 노출되어 있음(Pillemer & Finkelhor, 1988; 최해경, 1993; 한동희, 1996; 김미경, 1998).

〈表 4-22〉 身體的 健康狀態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단위: %)

정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좋음	보통	나쁨	전체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33.3	21.4	19.6	23.4
증상있음	66.7	78.6	80.4	76.6
계	100.0	100.0	100.0	100.0
(명)	(24)	(14)	(56)	(94)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55.0	21.4	24.6	30.8
매사에 불안, 우울함	15.0	42.9	31.6	29.7
죽고 싶다는 생각	10.0	14.3	28.1	22.0
기타 <sup>2)</sup>	20.0	21.4	15.8	17.5
(명)	(20)	(14)	(57)	(91)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유무수로 중복응답임.  
2) 기타에는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가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화가남, 안타까움, 섭섭함, 따로 살고싶음, 집을 나가고 싶음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가해자가 며느리인 경우에 피해노인이 정신적 증상(아들: 75.0%, 며느리: 78.6%)을 가진 경우가 약간 많았다. 가해자가 며느리인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은 ‘매사에 불안, 우울’(30.8%)이었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자아상실’(34.2%)은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에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아들: 21.1%, 며느리: 20.5%)은 加害者의 對象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가해자와 동거(72.7%)하는 경우보다 非同居(80.0%)하는 경우의 노인에게서 정신적 증상이 많이 발견되었다. 증상으로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감, 자아상실’은 비동거 노인(80.0%)에게서 많이 나타났고, ‘매사에 불안, 우울’(34.2%)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23.7%)은 同居 老人이 많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학대 피해노인이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심리적·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23〉 加害者と虐待被害老人과의關係 및 加害者同居與否別  
虐待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有無

(단위: %)

구분	증상없음	증상있음	계(명)
노인과의 관계			
아들	25.0	75.0	100.0(40)
며느리	27.4	78.6	100.0(42)
기타 <sup>1)</sup>	25.0	75.0	100.0(12)
동거여부			
동거	27.3	72.7	100.0(44)
비동거	20.0	80.0	100.0(50)
전체	23.4	76.6	100.0(94)

註: 1) 기타에는 딸·사위, 손자녀, 조카, 시동생·시누이, 동생 등의 가족원을 포함함.

〈表 4-24〉 加害者と虐待被害老人과의關係 및 加害者同居與否別  
虐待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 類型<sup>1)</sup>

(단위: %)

구분	자신에 대한 실망감, 무력 감, 자아상실	매사에 불안, 우울함	죽고싶다는 생각	기타	계(명)
노인과의 관계					
아들	34.2	26.3	21.1	18.5	100.0(38)
며느리	30.8	30.8	20.5	17.9	100.0(39)
기타 <sup>2)</sup>	21.5	35.7	28.6	14.2	100.0(14)
동거여부					
동거	66.7	34.2	23.7	27.5	100.0(38)
비동거	80.0	26.4	20.8	9.4	100.0(53)
전체	30.8	29.7	22.0	17.5	100.0(91)

註: 1) 정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2) 기타에는 딸·사위, 손자녀, 조카, 시동생·시누이, 동생 등의 가족원을 포함함.

加害者數別 정신적 증상유무와 증상유형을 <表 4-25>은 보여주고 있다. 가해자수가 많을수록 정신적 증상(1명: 72.3%, 2명 이상: 80.9%) 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증상유형도 가해자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해자수가 1명인 경우에 가장 많이 보이는 증상은

‘매사에 불안, 우울함’(37.8%)이었고, 가해자수가 2명일 때는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34.8%), ‘죽고싶다는 생각’(26.1%) 등으로 나타나 가해자수가 많을수록 否定的이고 危險한 심리상태를 보였고, 이는 極端的인 行動으로 발전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表 4-25〉 加害者數別 虐待 結果 나타난 精神的 症狀有無 및 類型 (단위: %)

정신적 증상 유무 및 유형	1명	2명 이상	전체
정신적 증상 유무			
증상없음	27.7	19.1	23.4
증상있음	72.3	80.9	76.6
계	100.0	100.0	100.0
(명)	(47)	(47)	(94)
정신적 증상 유형 <sup>1)</sup>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26.7	34.8	30.8
매사에 불안, 우울함	37.8	21.7	29.7
죽고 싶다는 생각	17.8	26.1	22.0
기타 <sup>2)</sup>	17.8	17.4	17.6
(명)	(45)	(46)	(91)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에게 나타난 정신적 증상 유무수로 중복응답임.  
 2) 기타에는 본인이 죽을 것 같은 생각, 가해자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 화가남, 안타까움, 섭섭함, 따로 살고싶음, 집을 나가고 싶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다. 醫療處置 經驗率

학대결과 신체적·정신적으로 증상이 나타난 被害 老父母의 19.4%가 醫療處置를 한 經驗이 있었다. 被害老人의 特性別로 의료처치 경험률 제시한 것은 <表 4-26>과 같다. 의료처치 경험률은 성별에 의해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前期 老人層의 의료처치 경험률은 후기 노인층보다 3.4배나 높았다. 이와 같은 傾向은 학대로 인하여 나타난 신체 및 정신적 증상이 전기 노인층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는 調查結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신체적 증상을 가진 경

우는 전기 노인층이 후기 노인층보다 2.7배나 높게 나타났고, 정신적 증상 역시 전기 노인층이 1.5배나 많은 것과 비교해 볼 때 後期 老人層은 의료처치 경험률이 낮을 수밖에 없음을 推定할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이하의 低學歷을 가진 노인이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 노인보다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아서, 教育水準이 낮을수록 虐待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한동희(1996년) 研究結果<sup>21)</sup> 生活水準이 낮을수록 虐待에 露出되기 쉽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신체적 건강상태에 따른 의료처치 경험률은 건강이 나쁜 노인의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았는데, 이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정신적 증상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다.

〈表 4-26〉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身體的·精神的 症狀이 있는 경우 醫療處置 經驗率<sup>1)</sup>

(단위: %, 명)

구분	의료처치 경험률	(수)
성		
남자	18.2	(11)
여자	19.7	(61)
연령		
65~74세	22.8	(57)
75세 이상	6.7	(1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0	(13)
고등학교 이상	10.0	( 1)
건강상태		
좋은 편	18.8	(16)
보통	18.2	(11)
나쁜 편	20.0	(45)
전체	19.4	(72)

註: 1)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의 의료처치 경험률이며, 중복응답임.

21) 한동희,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와 딸·사위·조카 등의 가족원인 경우 피해노인의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았고, 며느리인 경우는 가장 낮았다. 그리고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가 비동거하는 노인보다 의료처치를 받은 경험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加害者가 血肉일 때와 同居할 경우 피해가 더욱 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表 4-27 參照).

〈表 4-27〉 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醫療處置 經驗率<sup>1)</sup>

(단위: %, 명)

구분	의료처치 경험률	(수)
노인과의 관계		
아들	23.3	(30)
며느리	15.2	(33)
기타 <sup>2)</sup>	22.2	( 9)
동거여부		
동거	25.0	(32)
비동거	15.0	(40)
전체	23.4	(72)

註: 1)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2) 기타에는 딸·사위, 손자녀, 조카, 시동생·시누이, 동생 등의 가족원을 포함함.

가해자의 수가 1명인 경우가 2명 이상보다 피해노인의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나 加害者數가 醫療處置의 經驗에는 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虐待頻度別로는 관련성이 있었다. 즉 가해자에게 매일 학대를 받는 노인의 경우 의료처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주 1회나 월 1~2회 간격으로 학대를 받은 경우의 피해노인은 의료처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表 4-28 參照).

〈表 4-28〉 加害者數 및 虐待頻度別 醫療處置 經驗率<sup>1)</sup>

(단위: %, 명)

구분	의료처치 경험률	(수)
가해자수		
1명	23.5	(34)
2명 이상	15.8	(38)
학대빈도		
거의매일	23.2	(30)
주 1회	-	( 4)
월 1~2회	-	( 5)
기타	25.0	(28)
전체	23.4	(72)

註: 1) 신체적·정신적 증상이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 5. 老父母 虐待 發生時 被害老人의 對應

학대가 발생할 당시에 被害老人이 어떻게 對應하고 있는 지를 보고자 한다. 따라서 피해노인이 대응하는 方法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具體的인 內容을 檢討하고자 한다.

#### 가. 對應方法

자녀 및 가족원에 의해 老父母 虐待가 발생할 당시에 피해노인의 과반수 이상인 62.8%가 끝까지 참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상당수의 노인이 학대에 매우 受動的으로 對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집안 밖으로 무조건 피하는 경우’(7.4%)와 ‘주위의 도움을 요청’(4.3%)하는 적극적인 대응도 있었고, 가해자에게 ‘함께 맞대응’(24.5%)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表 4-29 參照). 형사정책연구원(1995년)의 研究結果를 보면 학대를 당한 노인들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아는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거나 그냥 참았으며’(63.7%),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대응은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 경

우'(22.8%), '상대방을 나무라거나 화를 낸 경우'(12.6%),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0.8%)한 경우 등으로 나타났다. 김현수(1997년)<sup>22)</sup>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의 절대 다수(91.3%)는 자신이 학대받은 사실에 대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大部分의 老人들이 학대받은 사실에 대해 매우 消極的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학대 사실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혼자서 속으로 삭인다고 응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本 研究結果에서 나타난 자녀 및 가족에게 虐待 받은 被害 老父母의 對應은 형사정책연구결과에 비해서 상당히 소극적이고도 수동적인 경향을 보였고, 김현수의 연구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被害老人의 特性別로 대응한 방법을 살펴보면 여자노인(65.3%)이 남자노인(54.5%)보다 학대를 끝까지 참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약간 많았다. 그리고 남자노인의 경우는 '무조건 피하거나'(남자: 13.6%, 여자: 22.2%), '함께 폭력을 행사'(남자: 31.8%, 여자: 22.2%)하는 등의 能動的이고 積極的으로 학대에 대처하는 경우가 많았다. 後期 老人層(75세 이상)은 消極的인 對應인 '끝까지 참는 경우'(73.1%)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기 노인층(65~74세)은 '함께 맞 대응'(29.4%)도 상당수 있었다. 중학교 이하의 低學歷 老人의 對應은 '끝까지 참는 것'(66.3%)이었고, 고등학교 이상의 高學歷 老人은 가해자에게 '함께 맞 대응'(45.5%)하거나 '주위의 도움을 요청'(18.2%)하는 能動的인 對應을 하였다.

22) 김현수,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1997.



〈表 4-29〉 社會人口學的 特性別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方法<sup>1)</sup>

(단위: %)

구분	함께 맞 대응	무조건 피함	주의 도움요청	끝까지 참음	기타	계(명)
성						
남자	31.8	13.6	-	54.5	-	100.0(22)
여자	22.2	5.6	5.6	65.3	1.4	100.0(72)
연령						
65~74세	29.4	5.9	5.9	58.8	-	100.0(68)
75세 이상	11.5	11.5	-	73.1	3.8	100.0(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1.7	8.4	2.4	66.3	1.2	100.0(83)
고등학교 이상	45.5	-	18.2	36.4	-	100.0(11)
전체	24.5	7.4	4.3	62.8	1.1	100.0(94)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이 대응한 수로 중복응답임.

勤勞所得이 있거나 경제상태가 좋은 편인 노부모는 학대에 대하여 ‘함께 맞 대응’(근로소득 있음: 60.0%, 경제상태 좋은 편: 31.3%)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고, 근로소득이 없거나 經濟狀態가 나쁜 경우는 ‘끝까지 참는다’(근로소득 없음: 64.6%, 경제상태 나쁜 편: 69.6%)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健康狀態와 학대에 대한 對應類型은 關聯性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이 좋은 노인의 대응은 끝까지 참는 것이었고(79.2%), ‘함께 맞 대응’하는 경우는 건강이 보통(33.3%)인 노인이 많았다.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은 ‘끝까지 참거나’(58.97%), ‘함께 맞 대응’(23.2%)하는 등의 極端的인 方法으로 대처하였다(表 4-30 參照).

〈表 4-30〉 勤勞所得 有無, 經濟狀態 및 健康狀態別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方法<sup>1)</sup>

(단위: %)

구분	함께 맞 대응	무조건 피함	주의 도움요청	끝까지 참음	기타	계(명)
근로소득 유무						
없음	22.8	7.6	5.1	64.6	-	100.0(79)
있음	60.0	20.0	-	20.0	-	100.0( 5)
경제상태						
좋은 편	31.3	18.8	-	50.0	--	100.0(16)
보통	33.3	3.3	3.3	60.0	-	100.0(30)
나쁜 편	15.2	9.4	6.5	69.6	2.2	100.0(46)
건강상태						
좋은 편	20.8	-	-	79.2	-	100.0(24)
보통	35.7	7.1	7.1	50.0	-	100.0(14)
나쁜 편	23.2	10.7	5.4	58.9	5.3	100.0(56)
전체	24.5	7.4	4.3	62.8	1.1	100.0(94)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이 대응한 수로 중복응답임.

노부모를 학대하는 가해자가 1명일 때는 학대가 ‘끝날 때까지 참는다’(1명: 66.0%, 2명 이상: 59.6%)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가해자가 2명인 경우는 ‘무조건 피하는’ 대응이 많았다(1명: 4.3%, 2명: 10.6%). 또한 虐待頻度와 상관없이 ‘끝날 때까지 참는다’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 1회인 경우는 ‘함께 맞 대응’(60.0%)을 한다고 응답한 노인이 10명 중 6명이었다.

〈表 4-31〉 加害者數 및 虐待頻度別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方法<sup>1)</sup>  
(단위: %)

구분	함께 맞 대응	무조건 피함	주위의 도움요청	끝날 때 까지 참음	기타	계(명)
가해자수						
1명	25.5	4.3	4.3	66.0	-	100.0(47)
2명 이상	23.4	10.6	4.3	59.6	2.1	100.0(47)
학대빈도						
거의 매일	23.7	10.5	2.6	60.5	2.6	100.0(38)
주 1회	60.0	-	-	40.0	-	100.0(10)
월 1~2회	20.7	3.4	6.9	69.0	-	100.0(29)
기타	16.7	-	8.3	75.0	-	100.0(12)
전체	24.5	7.4	4.3	62.8	1.1	100.0(94)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이 대응한 수로 중복응답임.

虐待類型別로 피해노인의 對應方法이 多樣하게 나타나는 것을 <表 4-32>은 보여주고 있다. 먼저 身體的으로 학대를 받은 노인 3명 중 2명은 ‘무조건 피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言語·心理的 虐待를 받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참으면서’(62.2%)도 ‘함께 맞 대응’(25.6%)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經濟的으로 搾取를 당한 노인의 대응방법은 주로 ‘끝날 때까지 참는 것’(78.3%)으로 나타났고, 放任을 당한 노인의 과반수도 ‘끝날 때까지 참는 것’(57.6%)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함께 맞 대응’하거나 ‘무조건 피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다른 학대를 당한 노인에 비해서 能動的으로 대처하였다.

虐待經驗數가 2가지 이하인 경우는 ‘끝날 때까지 참는다’(75.0%)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3가지 이상인 경우는 ‘함께 맞 대응’(29.3%)하거나 ‘무조건 피하는’(10.3%) 비율도 상당수 되었다.

〈表 4-32〉 虐待類型 및 虐待經驗別 虐待 被害老人의 對應方法<sup>1)</sup>  
(단위: %)

구분	함께 맞 대응	무조건 피함	주위의 도움요청 까지 참음	끝날 때 까지 참음	기타	계(명)
학대유형						
신체적학대	-	66.7	-	33.3	-	100.0( 3)
언어·심리적 학대	25.6	7.8	3.3	62.2	1.1	100.0(90)
경제적 착취	4.3	13.0	4.3	78.3	-	100.0(23)
방임	21.2	15.2	6.1	57.6	-	100.0(33)
기타	6.3	-	-	93.8	-	100.0(16)
학대경험수						
1~2	16.7	2.8	2.8	75.0	2.8	100.0(36)
3 이상	29.3	10.3	5.2	55.2	-	100.0(58)
전체	24.5	7.4	4.3	62.8	1.1	100.0(94)

註: 1) 학대유형별 대응방법은 피해노인 67명 중 학대유형별로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이 가해자별로 대응한 수로 중복응답임.

학대받은 老人이 男子인 경우, 加害者에 따른 對應方法은 차이가 있었으나, 여자노인은 비슷하게 대응하였다. 즉 남자노인은 가해자가 아들일 경우는 ‘끝날 때까지 참는다’(50.0%)는 受動的인 대응이 과반수를 보인 반면, 며느리인 경우는 과반수가 ‘함께 맞 대응’(50.0%)한다는 능동적인 반응을 보여서 아들과 며느리인 경우 對照的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男子 中心의 家父長的인 思考方式에서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女子老人은 가해자가 아들이나 며느리인 경우 ‘끝날 때까지 참는다’(아들: 67.9%, 며느리: 69.4%)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밖의 딸·사위, 조카 등의 家族員이 학대를 하는 경우는 남자노인의 일부는 ‘끝날 때까지 참는다’는 상당히 受動的인 反應을 보인 반면, 여자노인의 과반수는 ‘함께 맞 대응’(25.0%)하거나 ‘무조건 피한다(25.0%) 등의 能動的인 反應을 보였다. 그리고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의 주된 대응은 ‘끝날 때까지

지 참거나’(52.3%), ‘함께 맞 대응’(36.4%)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해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72.0%)으로 나타나서 가해자와 동거하는 노인에 비해 能動的인 態度를 보였다.

〈表 4-33〉 加害者と虐待被害老人과의關係 및 加害者同居與否別被害老人의 對應方法

(단위: %)

구분	함께 맞 대응	무조건 피함	주위의 도움요청	끝날 때 까지 참음	기타	계(명)
노인과의 관계						
남자노인	31.8	13.6	-	54.5	-	100.0(22)
아들	33.3	16.7	-	50.0	-	100.0(12)
며느리	50.0	16.7	-	33.3	-	100.0( 6)
기타 <sup>1)</sup>	-	-	-	100.0	-	100.0( 4)
여자노인	22.2	5.6	5.6	65.3	1.4	100.0(72)
아들	21.4	3.6	3.6	67.9	3.6	100.0(28)
며느리	22.2	2.8	5.6	69.4	-	100.0(36)
기타 <sup>1)</sup>	25.0	25.0	12.5	37.5	-	100.0( 8)
동거여부						
동거	36.4	9.1	2.3	52.3	-	100.0(44)
비동거	14.0	6.0	72.0	2.0	-	100.0(50)
전체	24.5	7.4	4.3	62.8	1.1	100.0(94)

註: 1) 기타에는 딸·사위, 손자녀, 조카, 시동생·시누이, 동생 등의 가족원을 포함함.

#### 나. 避하는 場所

학대받은 피해 노부모의 대응방법 중 避한다고 應答한 老人 7名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대받은 노인이 피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먼저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따로 사는 子女와 老人會館으로 피하였다. 이와 같은 경향은 노인이 창피해서 친구 및 친척에게 갈 수 없거나 도움을 要請할 機關이 없음을 보여준다. 老人特性別로 피하는 장소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남자노인은 주로 갈곳이 없이 배회하는 반면 여자노인

은 갈곳이 없어 배회도 하지만 따로 사는 자녀의 집이나 노인회관으로 피하였다. 연령별로는 後期 老人層은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전기 노인층은 多樣하였다. 학대빈도별로는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노인은 주로 갈 곳이 없어 배회하거나 노인회관으로 피하였고, 월 1~2회 정도 학대를 받는 경우는 따로 사는 자녀의 집으로 피하였다. 그리고 加害者가 아들인 경우는 갈곳이 없어 배회하거나 따로 사는 자녀의 집으로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며느리인 경우는 갈곳이 없이 배회하거나 노인회관을 이용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同居하는 노인은 주로 갈곳 없어 배회하는 반면,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노인의 경우는 따로 사는 자녀의 집으로 피하였다.

#### 다. 도움 要請者

학대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응답한 노인 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학대당시 노인의 도움요청 대상으로 ‘따로 사는 子女’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이웃, 친구’와 ‘목사, 신부님’이었다. 김현수(1997년) 연구결과에 의하면 虐待받은 老人의 경우 援助要請은 親舊에게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家族과 聖職者로 나타나서 본 조사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김현수(1997년)는 이와 같이 私的資源의 援助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老人層이 이용할만한 公的인 사회적·법적 서비스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만한 기관이 우리 나라에 없다는데 기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노인특성별로 도움요청 대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여자노인과 前期 老人層은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주된 대상이 따로 사는 자녀이었고, 그 다음은 이웃·친구와 목사·신부님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고학력층의 노인은 따로 사는 자녀가 가장 주된 도움요청 대상인 반면,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저학력층의 노인은 이웃·친구나 목사·신부님이었다. 한편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 노인의 도움요청 대상은 따로 사는 자녀로 나타난 반면, 며느리인 경우는 따로 사는 자녀와 목사·신부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가해자와同居하는 노인은 이웃·친구에게 도움을 구하였고, 가해자와 비동거하는 경우는 따로 사는 자녀와 목사·신부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 라. 참는 理由

피해노인 중 자녀 및 가족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참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59명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참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인이 죽고싶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는 가장 주된 이유는 ‘子女(家族)이기 때문’(28.6%)이었고, 그 다음은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18.6%)와 ‘해결방법이 없어서’(16.9%),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15.3%)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기타(22.0%) 이유로는 대응하면 학대가 심해지거나, 노인이 잘못된 것이거나, 신세를 지고 있어서, 경제력이 없어서 등이었다(表 4-32 參照). 이와 같은 사실은 학대를 받으면서도 血肉을 重要視하는 家族主義的인 價値觀과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自立할 能力이 없기 때문에 環境에 順應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노인의 性向을 반영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表 4-34〉 虐待當時 老人이 참는 理由<sup>1)</sup>

(단위: %)

참는 이유	비율
자녀(가족)이기 때문에	27.1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15.3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18.6
해결방법이 없어서	16.9
기타	22.0
계	100.0
(명)	(59)

註: 1) 피해노인의 대응방법 중 참는다고 응답한 노인 59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2) 기타로는 대응하면 학대가 심해지므로·내가 잘못된 것이므로·신세를 지고 있어서·경제력이 없어서 등이 포함됨.

피해노인의 특성별 참는 이유를 <表 4-35>은 보여주고 있다. 남자노인의 과반수는 ‘자녀이기 때문에’(25.0%)와 ‘解決方法이 없어서’(25.0%)로 나타나서 家族的 要因과 環境에 의한 理由로 밝혀졌고, 그 밖에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16.7%) 등이었다. 여자노인이 학대를 참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27.7%),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19.1%),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17.0%) 순으로 나타나, 남자노인에 비해 창피함이나 자존심 등의 타인을 의식한 感情的인 요인과 回避的인 성향이 상당히 작용하였다. 그리고 전기 노인은 ‘자녀이기 때문에’(32.5%),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22.5%),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15.0%)로 나타나서 주로 자녀를 이해하려는 가족적인 이유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후기 노인의 참는 이유는 ‘해결방법이 없어서’(26.3%)인 환경적인 요인이었고, 그 다음은 ‘자녀이기 때문에’(15.8%)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15.8%) 등의 가족적 요인과 감정적인 이유 때문으로 나타났다. 被害老人의 教育水準에 따라 참는 이유는 다르게 나타



났다. 즉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低學歷層의 노인은 ‘자녀이기 때문에’(29.1%)라는 혈육을 중요시하는 가족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에 반해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층의 노인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25.0%)와 ‘해결방법이 없어서’(25.0%)로 나타나 他人을 의식한 感情的인 요인 및 環境的 理由가 支配的이었다(表 4-35 參照).

〈表 4-35〉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참는 理由<sup>1)</sup>

(단위: %)

구분	자녀이기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해결방법 이 없어서	기타 <sup>2)</sup>	계(명)
성						
남자	25.0	8.3	16.7	25.0	25.0	100.0(12)
여자	27.7	17.0	19.1	14.9	21.3	100.0(47)
연령						
65~74세	32.5	15.0	22.5	12.5	17.5	100.0(40)
75세 이상	15.8	15.8	10.5	26.3	31.6	100.0(1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9.1	14.5	20.0	16.4	20.0	100.0(55)
고등학교 이상	-	25.0	-	25.0	50.0	100.0( 4)
전체	27.1	15.3	18.6	16.9	22.0	100.0(59)

註: 1) 피해노인의 대응방법 중 참는다고 응답한 노인 59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로, 가해자별로 학대받는 노인이 참는 이유수로 중복응답임.

2) 기타로는 대응하면 학대가 심해지므로·내가 잘못된 것이므로·신세를 지고 있어서·경제력이 없어서 등이 포함됨.

加害者數에 따라 피해노인이 참는 이유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해자가 1명인 경우 피해노인이 참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41.9%)와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25.8%) 등으로 나타나서 혈육을 중요시하는 家族的인 要因이 지배적이었고, 회피적인 성향에 의한 요인도 다소 차지하였다. 2名 以上の 加害者에게 학대를 받는 피해노인의 과반수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25.0%)와 ‘해결방법이 없어서’(25.0%)로 나타나 주로 감정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이유가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가해자가 1명이었을 때보다 2명 이상이었을 때 身體的 및 經濟的으로 스스로를 扶養할 능력도 없고, 다른 解決方法이 없기 때문에 절망적인 環境을 受容하고 살아가는 피해노인들의 무능력함을 유추할 수 있다.

<表 4-36> 加害者數別 虐待 被害老人이 참는 理由<sup>1)</sup>

(단위: %)

가해자수	자녀(가족)이기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해결방법이 없어서	기타 <sup>2)</sup>	계(명)
1명	41.9	6.5	25.8	9.7	16.1	100.0(31)
2명 이상	10.7	25.0	10.7	25.0	28.6	100.0(28)
전체	27.1	15.3	18.6	16.9	22.0	100.0(59)

註: 1) 피해노인의 대응방법 중 참는다고 응답한 노인 59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2) 기타로는 대응하면 학대가 심해지므로·내가 잘못된 것이므로·신세를 지고 있어서·경제력이 없어서 등이 포함됨.

虐待類型 및 虐待頻度別 학대당시 피해노인의 참는 이유를 <表 4-37>은 보여주고 있다. 학대유형별로 보면 身體的 虐待를 받는 노인이 학대를 참는 이유는 ‘자녀(가족)이기 때문에’로 血肉을 중요시하는 家族的인 要因이었고, 言語·心理的 虐待를 참는 이유는 ‘자녀(가족)이기 때문에’(25.0%)와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19.6%) 등 家族的 要因과 逃避的 要因이 작용하였다. 經濟的 榨取는 ‘자녀(가족)이기 때문에’(33.3%)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33.3%)로 나타나서 경제적 및 신체적으로 無能力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環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放任을 참는 주된 이유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31.6%)와 ‘자녀(가족)이기 때문에’(26.3%)로 피해노인들이 扶養을 책임지고 있는 加害者에게 順應하는 無氣力한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表 4-37 參照).

〈表 4-37〉 虐待類型 및 虐待頻度別 虐待 被害老人이 참는 理由<sup>1)</sup>  
(단위: %)

구분	자녀(가족) 이기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기타	계(명)
<b>학대유형</b>						
신체적학대	100.0	-	-	-	-	100.0( 1)
언어·심리적학대	25.0	16.1	19.6	16.1	23.2	100.0(56)
경제적 착취	33.3	5.6	5.6	33.3	22.2	100.0(18)
방임	26.3	15.8	10.5	31.6	15.8	100.0(19)
기타	13.3	40.0	-	40.0	6.7	100.0(15)
<b>학대빈도</b>						
거의 매일	8.7	21.7	13.0	34.8	21.8	100.0(23)
주 1회	33.3	-	66.7	-	-	100.0( 3)
월 1~2회	33.3	16.7	50.0	-	-	100.0( 6)
기타	45.8	12.5	4.2	8.3	29.2	100.0(24)
전체	28.6	16.1	16.1	16.9	22.0	100.0(56)

註: 1) 피해노인의 대응방법 중 참는다고 응답한 노인 59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2) 기타로는 대응하면 학대가 심해지므로·내가 잘못된 것이므로·신세를 지고 있어서·경제력이 없어서 등이 포함됨.

虐待頻度別로 피해노인이 참는 이유를 보면 거의 매일 학대를 당하는 노인의 경우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34.8%)인 受動的인 要因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해자인 자녀에게 經濟的인 도움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대를 참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주 1회나 월 1~2회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의 과반수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주 1회: 66.7%, 월 1~2회: 50.0%)로 나타나서 피해노인의 消極的인 회피성향이 반영되어 있다(表 4-37 參照).

加害者와의 關係에 따라 학대를 참는 이유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는 ‘자녀이기 때문에’(32.0%)와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24.0%) 학대를 참는 것으로 밝혀졌다. 며느리인 경우는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25.9%)와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25.9%) 등이

었다. 그리고 딸·사위 등 기타 가족원의 학대를 참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28.6%)와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28.6%)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加害者가 아들인 경우는 주로 혈육을 중요시하는 家族的인 要因과 扶養을 意識하여 環境에 順應하려는 요인이 지배적인 것에 반해, 며느리인 경우는 他人을 의식한 感情的인 요인 및 회피적인 성향이 작용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에 나타난 학대를 참는 이유는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30.4%), ‘자녀(가족)이기 때문에’(19.4%)로 나타나서 학대에 대한 피해노인의 수동적이고도 혈육을 중요시하는 家族中心的인 성향이 반영되어 있다. 반면 가해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는 ‘자녀이기 때문에’(33.3%)와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19.4%) 그리고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19.4%) 등이어서 혈육에 치우친 가족적 요인과 감정적인 요인 및 학대에 순응하는 무능력한 요인 등이 複合的으로 作用하였다(表 4-38 參照).

〈表 4-38〉 加害者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加害者 同居與否別 虐待 被害老人이 참는 理由<sup>1)</sup>

(단위: %)

구분	자녀(가족)이기 때문에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기타 <sup>2)</sup>	계(명)
노인과의 관계						
아들	32.0	8.0	8.0	24.0	28.0	100.0(25)
며느리	22.2	25.9	25.9	11.1	14.8	100.0(27)
기타 <sup>3)</sup>	28.6	-	28.6	14.3	28.6	100.0(7)
동거여부						
동거	17.4	8.7	30.4	13.0	30.4	100.0(23)
비동거	33.3	19.4	11.1	19.4	16.7	100.0(36)
전체	27.1	15.3	18.6	18.6	39.0	100.0(59)

註: 1) 피해노인의 대응방법 중 참는다고 응답한 노인 59명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임.

2) 기타로는 대응하면 학대가 심해지므로·내가 잘못된 것이므로·신세를 지고 있어서·경제력이 없어서 등이 포함됨.

3) 기타에는 딸·사위, 손자녀, 조카, 시동생·시누이, 동생 등의 가족원을 포함함.

#### 마. 加害者와의 同居與否

피해노인이 학대를 받은 후에 加害者와 同居를 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면 동거는 가해자와 物理的으로 接觸할 確率이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노인이 학대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環境에 露出된 程度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결과 학대받은 노인이 가해자와 同居하는 比率은 46.8%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어서 虐待가 繼續 發生할 確率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被害老人의 特性別로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을 제시한 것이 <表 4-39>이다. 同居率은 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남자노인(54.5%)이 여자노인(44.4%)보다 동거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또한 前期 老人層(48.5%)이 후기 노인층(42.3%)보다 현재 동거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고,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低學歷層(47.0%)이 고학력층(45.5%)보다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表 4-39〉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加害者와의 同居率<sup>1)</sup>  
(단위: %, 명)

구분	동거율	(수)
성		
남자	54.5	(22)
여자	44.4	(72)
연령		
65~74세	48.5	(68)
75세 이상	42.3	(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7.0	(83)
고등학교 이상	45.5	(11)
전체	46.8	(94)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이 동거하는 비율로 중복응답임.

이와 같은 사실은 여자노인보다 男子老人이, 후기 노인층(75세 이상)보다 前期 老人層(65~74세)이, 低學歷層의 노인이 고학력층보다 학대를 받을 수 있는 環境에 약간 더 露出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勤勞所得, 經濟 및 健康狀態別 가해자와의 동거율을 <表 4-41>은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근로소득이 없는 피해노인 중 과반수는 가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경제상태가 보통(66.7%)인 노인의 과반수 이상은 가해자와 동거하였고, 경제상태가 나쁜 노인의 1/3 이상인 39.0%가 현재 가해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은 피해노인(41.7%)에 비하여 보통(57.1%)이거나 나쁜 노인(46.4%)인 경우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虐待頻도가 높을수록 가해자와 동거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경우의 가해자와의 동거율은 57.9%, 주 1회로 학대를 받는 피해노인의 동거율은 100%이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 없거나 경제 및 건강상태가 나쁜 피해노인은 國家나 地域社會 및 家族으로부터 保護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역사회의 보호망에서 외면 당한 채, 부양의 가장 기초단위인 家族이나 子女로부터 虐待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으로는 피해노인의 경제적·신체적으로 나쁜 興件이나 條件은 가해자에게 扶養負擔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학대로 유발시키는 發生原因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노인은 이렇게 劣惡한 環境 때문에 가해자와 함께 同居하므로써 계속 학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위험스러운 狀況에 露出되어 惡循環이 계속됨을 예상할 수 있다.

同居率은 加害者と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加害者가 아들인 경우는 피해노인의 40.0% 즉 피해노인 5명중 2명이 가해자와 同居하였다. 며느리인 경우는 64.3% 즉 피해노인 10명중 6명이 동거하고 있었고, 其他 家族員인 경우는 동거율이 상당히 낮았다.

〈表 4-40〉 勤勞所得 有無, 經濟狀態 및 健康狀態別 虐待 被害老人의 加害者와의 同居率<sup>1)</sup>

(단위: %, 명)

구분	동거율	(수)
근로소득 유무		
없음	50.6	(79)
있음	20.0	( 5)
경제상태		
좋은 편	25.0	(16)
보통	66.7	(30)
나쁜 편	39.1	(46)
건강상태		
좋은 편	41.7	(24)
보통	57.1	(14)
나쁜 편	46.4	(56)
전체	46.8	(94)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이 동거하는 비율로 중복응답임.

〈表 4-41〉 虐待頻度別 虐待 被害老人의 加害者와의 同居率<sup>1)</sup>

(단위: %, 명)

학대빈도	동거율	(수)
거의 매일	57.9	(38)
주 1회	100.0	(10)
월 1~2회	37.9	(29)
기타	8.3	(12)
전체	49.4	(89)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이 동거하는 비율로 중복응답임.

따라서 가해자가 아들이나 며느리인 경우는 피해노인이 학대를 받으면서도 가해자와 계속 동거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우리 나라의 傳統的인 家族主義에 근거한 아들중심의 老人扶養構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表 4-42 參照).

〈表 4-42〉 加害자와 虐待 被害老人과의 關係別 加害者와의 同居率  
(단위: %)

가해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	동거율	(수)
아들	40.0	(40)
며느리	64.3	(42)
기타 <sup>1)</sup>	8.3	(12)
전체	46.8	(94)

註: 1) 기타에는 딸·사위, 손자녀, 조카, 시동생·시누이, 동생 등의 가족원을 포함함.

바. 警察 申告與否

학대를 받은 피해노인이 警察에 申告하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년)<sup>23)</sup>의 연구결과인 0.8%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被害老人의 特性別로 경찰에 신고한 經驗이 있는 比率을 제시하면 <表 4-43>과 같다. 경찰에 신고한 經驗이 있는 피해노인은 성별로는 女子老人, 연령별로는 前期 老人層(65~74세), 그리고 중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은 저학력층의 피해노인이었다. 반면 남자노인이나 75세 이상의 후기 노인층과 高學歷層의 피해노인은 경찰에 신고한 經驗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피해노인 중 전기 노인층(65~74세)과 저학력층의 노인이 후기 노인층(75세 이상)이나 고학력층에 비해서 학대가 더욱 심하였을 가능성도 있겠으나, 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3) 1995년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서울시의 60세 이상 노인 5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임.



〈表 4-43〉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警察 申告經驗率<sup>1)</sup>

(단위: %, 명)

구분	신고경험률	(수)
성		
남자	0.0	(22)
여자	1.4	(72)
연령		
65~74세	1.5	(68)
75세	0.0	(2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2	(83)
고등학교 이상	0.0	(11)
전체	1.1	(94)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이 경찰에 신고한 경험비율로 중복응답임.

피해노인의 勤勞所得, 經濟 및 健康狀態에 따른 警察申告 經驗率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거나,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가 나쁜 편인 피해노인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반면, 근로소득이 없거나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가 좋거나 보통인 피해노인은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상태 및 건강상태가 나쁜 노인에게서 一般的으로 虐待에 露出되기 쉽다는 研究結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24)</sup>. 즉 이러한 事件의 노인일수록 학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되므로 이로 인한 被害 및 苦痛을 참기가 훨씬 어려웠음을 示唆하고 있다.

加害者와의 關係 및 同居與否에 따라 警察申告 經驗率은 다르게 나타났다. 즉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와 가해자와 함께 살지 않고 非同居하는 경우의 피해노인은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가해자가 며느리와 딸·사위 및 조카 등의 다른 가족원인 경우

24) 건강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노인학대에 노출되어 있음(Pillemer & Finkelhor, 1988; 최혜경, 1993; 한동희, 1996; 김미경, 1998). 또한 생활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학대에 노출되기 쉬움(한동희, 1996; 김미경, 1998).

와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들에 의한 학대가 다른 자녀나 기타 가족원에 의한 것보다 더욱 심하고, 피해노인이 精神的으로 겪는 苦痛도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現象은 앞서서도 설명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의 男子를 중심으로 한 家父長的인 文化에 근거한 부양구조속에서 기인된다고 사료된다.

〈表 4-44〉 勤勞所得 有無, 經濟狀態 및 健康狀態別 虐待 被害老人의 警察 申告經驗率<sup>1)</sup>

(단위: %, 명)

구분	신고경험률	(수)
근로소득 유무		
없음	0.0	(79)
있음	20.0	( 5)
경제상태		
좋은 편	0.0	(16)
보통	0.0	(30)
나쁜 편	2.2	(46)
건강상태		
좋은 편	0.0	(24)
보통	0.0	(14)
나쁜 편	1.8	(56)
전체	1.1	(94)

註: 1) 가해자별로 피해노인이 경찰에 신고한 경험비율로 중복응답임.

또한 가해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 경찰신고 경험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가해자와 物理的으로 接觸할 機會가 적어서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表 4-45〉 加害者と虐待被害老人과의 關係 및 同居與否別 被害老人의 警察申告 經驗率

(단위: %, 명)

구분	신고경험률	(수)
노인과의 관계		
아들	2.5	(40)
며느리	0.0	(42)
기타 <sup>1)</sup>	0.0	(12)
동거여부		
동거	0.0	(44)
비동거	2.0	(50)
전체	1.1	(94)

註: 1) 기타에는 딸·사위, 손자녀, 조카, 시동생·시누이, 동생 등의 가족원을 포함함.

## 6. 老父母虐待 事例

老父母 虐待는 노인과 그 가족간의 相互關係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原因도 복잡하고 또한 多樣한 原因들이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虐待狀況의 構造的인 分析 즉 發生原因과 가해자, 피해자의 관계 및 학대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면 虐待類型 및 虐待原因間의 力學的인 關係를 糾明하므로써 학대발생을 豫防 및 改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老父母-子女關係 實態調査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 중 일부를 사례들로 발췌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대유형인 신체적 학대, 언어·심리적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의 틀에 맞추어 제시하고자 한다.

### 가. 身體的 虐待

신체적 학대란 暴力 등에 의한 신체적 손상 또는 정신적 타격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피해자에게 恐怖心을 일으키게 하는 위협 행위도

포함된다.

#### 事例 1

78세의 할아버지로 시골에서 자작농으로 생활하다가, 만아들이 행패를 부리고 학대를 하여 할머니는 심장병으로 사망하였고, 그 후 행패가 더욱 심해져서 딸집으로 옮겼다.

事例 1은 학대원인이 신체적·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活用할 價値가 없는 노인을 부양하는 데서 오는 피부양자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된 예로써, 이때 가해자는 長男에 해당되며 결국 피해노인 중 한 분은 학대에 의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이다.

#### 事例 2

71세의 할머니는 40세 전에 남편이 사망하여 아이들을 데리고 살수가 없어서 44세에 재혼하였다. 5년쯤 동거하다가 그 남편도 사망하여 아이들과 고생이 많았다. 그후 만아들은 어머니가 재혼한 것을 미워하여 할머니를 계속 학대하였다. 아들이 그러자 며느리까지도 어머니에게 심하게 학대하여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事例 2는 과거에 피해노인이 再婚한 것 때문에 만아들 부부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이다. 이때 학대원인은 社會·文化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女子는 死別하여도 정절을 지키며 계속 살아야 한다는 家父長的인 文化에 근거한 가치가 가해자인 장남에게 被害意識을 형성하였다. 이때 학대로 인한 피해노인의 고통은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다.

### 事例 3

69세의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사별한 후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는 중에 막내아들이 술만 먹으면 사업자금 등을 주지 않는다고 형제와 어머니께 행패를 부려서 시설에 넣고 싶은 생각이 들만큼 두렵고 무섭다고 한다. 그러다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할아버지를 만나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곳까지도 막내아들이 언제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불안하다고 한다.

事例 3은 피해노인에게 事業資金 등 經濟的인 支援을 목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이다. 가해자는 막내아들로 행패가 심하여 피해노인이 아들을 격리시키고 싶을 만큼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경우이다

#### 나. 言語·心理的 虐待

언어·심리적 학대는 依存的인 노인이 모욕당하거나 어린아이처럼 취급받거나 위협, 협박당하는 것을 말한다(Douglass, 1983). 또한 노인을 위협하고 노인의 要求를 무시하며 대화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다루고, 가족원이 가진 감정적 문제를 언어로서 심리적인 부담을 갖게 하거나 情緒的 苦痛 또는 虐待를 수반하는 것이다(한동희, 1996).

事例 4와 事例 5, 事例 6, 事例 7은 가해자가 피해노인의 부양을 담당하고 있는 며느리에 해당된다. 이때 학대원인은 피해노인의 肉體的인 障礙때문에 경제적·신체적으로 수발을 들기 어려울 때 생기는 부양스트레스로 인하여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 事例 4

65세 할머니는 사별하고 외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 현재 중풍으로 잘 걷지도 못하여 노인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

다.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기 이전에는 외아들 내외와 사이가 좋았는데 그후부터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말도 잘 안하고 심지어 모욕적인 말도 일삼고 있어서 시설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다.

事例 4는 피해노인에게 말을 안하여 무시하거나,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므로써 精神的인 苦痛을 주는 경우에 해당된다.

#### 事例 5

62세의 할머니로 아들 내외가 맞벌이를 하므로 3년 동안 손자들을 돌보아 주던 중 6개월 전부터 담이 들어서 손자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아들 내외가 냉담하고 부양부담을 느끼는 것을 노골적으로 나타내서 집에서 분가해 현재 독신가구로 생활하고 있다.

事例 5는 가족 내에서 孫子女를 돌봄으로써 가사역할의 일부를 맡아왔던 피해노인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손자들을 돌볼 수 없게되자 피해노인에게 냉담하게 행동하므로써 심리적 학대를 한 경우이다.

#### 事例 6

장남내외와 같이 살던 중 할아버지가 중풍이 되어 할머니가 병수발을 하여서 할아버지는 어느 정도 완쾌되었으나 할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현재 오른쪽이 마비되었다. 병 수발하는 것을 며느리가 너무 싫어하고 남편(아들)에게 이간질을 하는 등 불화를 일으키고, 병원을 다녀오는 것을 보면 현관문을 닫고 들어가서 내다보지도 않아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나가서 살자고 하여, 현재 노인 두 분이 딸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事例 6은 학대원인이 피해노인부부가 육체적인 장애로 인하여 며느

리가 身體的으로 수발을 들기 어려워짐에 따라 생기는 不滿을 노인부부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경우이다. 즉 며느리가 부모와 아들간을 이간질시키고, 병원 다녀오는 부모를 무시하는 것 등이다.

#### 事例 7

69세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오시고, 할아버지와 사별하신 채로 딸아들과 살고 있는데, 경제적인 상태는 좋으시나 건강은 당뇨와 신경통으로 안 좋으신 편이다. 그런데, 딸며느리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할머니에게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대하며, 또한 어찌다가 할머니의 친구나 친지들이 방문하면 싫어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 특히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전혀 말을 하지 않아서 할머니도 며느리 앞에서는 병어리인 채로 살아간다.

事例 7은 며느리가 피해노인에게 말을 전혀 안하여서 피해노인 역시 병어리인 채로 살아가는 경우로 姑婦間에 의사소통이 전혀 없다.

#### 事例 8

건강상태가 나쁜 72세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사별한 후 아들내외와 함께 살고 있는데 며느리가 전혀 말을 안하고 심지어는 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데 급기야는 방 앞에 밥상을 갖다 놓고 문만 “똑똑” 두드리고 가서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한끼 식사를 얻어먹기도 몹시 고역스럽다.

事例 8은 며느리가 피해노인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을 뿐더러, 식사때에는 밥상을 차려서 놓고 방문만 두드리고 가는 등 非人格的인 대접을 하므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이다.

事例 9
------

72세의 외아들을 둔 할머니로 아들내외와 동거하다가 며느리와 마음이 맞지 않아서 혼자서 나와 살고 있다. 현재 생활비를 30만원씩 아들이 주고 있는데 며느리가 그것으로 인한 부담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시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불손해 친정어머니를 만나 항의도 했다.

事例 9는 학대원인이 고부간의 性格이나 價値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 다. 經濟的 搾取

경제적 착취는 친척 또는 부양을 제공하는 자 등이 노인의 金錢 혹은 財産 등을 노인의 뜻에 관계없이 이전을 하거나 또는 훔치는 것을 말한다. 가끔 폭력, 사기행위, 허위의 대행권 행사 등이 수단으로 사용된다(多久良紀夫, 1994).

事例 10
-------

건강상태가 나쁜 76세 할머니는 장남에게 사업밑천으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장남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그 이후 할머니에게 학대가 심하다. 할머니의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차압된 상태라서 생활하기가 몹시 불안하다.

事例 10은 피해노인이 부양자인 장남에게 사업할 자금을 주었는데, 사업을 하다 실패하자, 돈도 갚지 않고 오히려 학대를 하는 경우로 피해노인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모든 것을 참고 살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 事例 11

노인에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가 있는 것을 이유로 장남이 사업자금으로 쓴다고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도와주지 못하는 부모도 부모나는 등의 심한 말을 하여 할 수 없이 허락하자 집을 담보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경매직전 아파트를 처분하여 노인은 1,000만원으로 전세를 마련하였고 생활비는 차남이 10만원씩 보내 준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부모 속을 많이 썩여서 구타를 한 적이 많고, 상대적으로 성실한 차남과 편애를 하여 키웠다.

事例 11은 장남이 피해노인의 집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요구했으나 거절하자 부모를 대상으로 언어·심리적 학대를 하였고, 결국 노인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사업자금을 제공하게 되었고, 그후 장남이 사업에 실패하자 노인은 집을 잃고 전세를 마련하여 차남의 생활비로 생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虐待原因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받으며 자라난 長男이 父母로부터의 虐待가 轉移된 경우<sup>25)</sup>이다.

### 事例 12

73세 할머니로 며느리가 가출하여 혼자서 손자 2명을 키우고 있으며, 며느리 가출시 할머니 돈 1,000만원 맡긴 것과 집을 몰래 처분한 것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事例 12은 며느리가 가해자로 피해노인 몰래 돈과 집을 처분하여 가출한 경우에 해당된다.

25) 아내나 아동의 학대에서 어린 시절 학대를 경험했거나 부모가 학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학대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폭력유희이론(cycle of violence)은 노인학대의 경우에는 아직 합의된 것은 없으나 노인학대를 이해하는 도움을 줄 수 있음(Rathbone-McCuran, 1980;Steinmetz, 1988; 多久良紀夫, 1994).

## 라. 放任

방임이란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이 노인들이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김한곤, 1994)를 말한다. 방임에는 受動的 放任과 能動的 放任이 있는데 수동적 방임은 부양자의 무능력이나 부적절함 때문에 의존적인 노인이 무시되거나 혼자 방임되어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등 서비스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능동적 방임은 의존하는 노인에게 사회적 접촉, 먹는 것, 입는 것, 약 혹은 다른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의도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한동희, 1996).

### 事例 13

83세 할아버지는 75세에 할머니와 사별한 후 딸들이 집 팔아서 같이 지내자고 하였으나 거절하고 사업을 하다 실패를 하였다. 그 이후 딸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할아버지가 찾아 갈까봐 겁을 내고 연락을 안하고 있다. 돈이 없는 아버지를 떠맡게 될까봐서 말이다.

事例 13는 부양대상자인 피해노인이 經濟的인 能力이 있다가 없어져서 무능력한 부양자로 전락한 후, 자녀들이 扶養動機를 상실하므로써 부모에게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때 가해자는 딸들로 노인과 연락을 끊어서 피해노인이 방치된 경우이다.

### 事例 14

69세 할머니는 장남과는 4년 정도 같이 살다가 혼자 살기 시작한 것이 10년째인 분으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남의 빚 보증을 서는 바람에 집이 넘어가서 지금은 단칸 전세방에 살고 있다. 친구나 친척들이 모두 잘 살고 있어 전세에 사는

것이 창피해 작은 아파트라도 구입하려고 할머니의 적금 900만원과 전세금 등을 마련하고 그 외에 모자라는 비용을 2명의 아들에게 빌려달라는 말을 하였더니 큰며느리가 그 뒤로 연락도 없고 큰아들까지도 덩달아 어머니를 섭섭하게 했다. 올해가 칠순인데 연락도 없이 그냥 넘기고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화가 없었다고 무척이나 비참해 하였다. 원래부터 큰며느리는 성격이 나빠서 예전부터도 아들이 있을 때는 잘 하고, 없을 때는 냉담했다.

事例 14는 피해노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가 없어져서 無能力하게 됨에 따라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요구했으나, 그 후부터 며느리와 아들이 연락을 끊고 있으며, 칠순이나 어버이 날 조차도 전화조차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 事例 15

73세의 아들 4명, 딸 3명을 둔 할머니는 큰 며느리가 도박으로 재산을 날리고 가출해서 그후부터 큰 아들은 일도 안하고 어머니께 연락도 안하고 있어 현재 어떻게 사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할머니 걱정 많이 하고 잘 지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현재 돌보지도 않고 있으며, 게다가 둘째 며느리는 첫째 며느리가 집을 나가 할머니를 부양하게 될까봐 아예 무관심하고, 생활비도 전혀 대주지 않아 할머니는 현재 딸들이 도와주는 것으로 겨우 살고 있다.

事例 15은 부양할 아들들이 家庭의 問題나 經濟的 無能力으로 인하여 부모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로 첫째 며느리가 가출하자 그때부터 둘째 며느리는 노인의 부양을 책임지기 싫어서 외면하고, 生活費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事例 16

77세이신 할아버지는 사별하시고, 혼자서 생활하시는데, 학력이나 경제력이 높고, 노후에도 사회봉사 활동을 하시는 상당히 상류층에 속한 분이다. 그런데 맏며느리가 집안의 제사를 비롯한 대소사나, 행사때 무관심하고, 상당히 소홀하며, 맏며느리로서 행사를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년째 참석 안하고 있으며, 시댁에 전혀 교통이 없다. 처음 맏아들과 결혼해서는 시부모님께 잘 하던 맏며느리이었는데, 결혼기간이 지남에 따라 며느리의 태도가 변하게 되었다. 이 유는며느리의 친정집은 남존여비 환경 하에서 홀대를 받으며 자랐는데, 시댁은 남녀평등의 분위기로 맏아들(남편)이라고 해서 재산을 비롯한 다른 것에서도 특혜없이 시집간 시누이들하고 똑같이 대해주는 시댁의 가풍과 시부모님께 불만을 품게 되었다.

事例 16은 맏며느리가 집안의 제사를 비롯한 대소사나 행사에 무관심하여, 행사를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참석을 안하고, 평소에도 교통이 전혀 없다. 처음에 결혼해서는 시댁에 잘하던 며느리이었는데 시댁의 가풍이 친정집의 남존여비 환경하고는 달리 남녀평등 분위기로 맏아들(남편)과 다른 딸들을 재산을 비롯한 모든 것에서 평등하게 대해주는 것에 不滿을 품은 것이 학대의 원인인 경우이다.

## 事例 17

84세이신 할머니는 사별하시고, 혼자서 생활하시는데, 無學에다, 경제력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할머니는 아들형제가 둘이나 있는데 큰 아들내외하고는 16년간 함께 살다가 며느리와의 종교불화로 집을 나왔다. 처음에 아들네 집을 나와서는 근처에 집을 얻고 혼자 살았는데, 지금은 아들내외 들이 경제적으로 전혀 도와주지를 않아서, 교회 안

에 있는 전도사님 방에 함께 기거하며, 교회 후원금으로 교회 일을 도와주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事例 17은 고부간의 宗教葛藤으로 인하여 피해노인이 집을 나온 경우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인에게 보살핌을 전혀 提供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 第5章 老父母虐待 關聯 法·制度의 認知 및 態度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길러준 父母를 保護하고 奉養하는 것은 우리의 미덕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價値觀의 變化, 자식의 逸脫的 行動 등으로 말미암아 적절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부모 학대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老人의 認知水準을 파악하고자 한다.

### 第1節 老父母 虐待 關聯 法·制度

노부모에 대한 학대에 관련된 법·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노부모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家庭暴力에 대한 定義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의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노부모 학대의 개념도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時代的 背景, 社會文化的 背景 등 복잡한 요인에 의하여 그 基準과 範圍를 달리하고 또한 變化하기 때문이다(김승권 외, 1998). 즉, 학대의 대상노인은 어느 범위인지, 어느 만큼이나 심각한 행위를 학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이 論議의 焦點이라고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노부모 학대의 對象이다. 이는 노부모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家族關係가 어느 範疇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同居家族員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非同居 家族員까지 가정폭력의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또한 法的으로 認定된 家族關係에 한정할 것인가? 事實婚의 關係를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法的으로 家族關係를 終了한 전 배우자의 부모까지로 擴大할 것인가?

둘째, 노부모 학대의 範圍이다. 이는 身體的 危害行爲에 국한할 것인가? 신체적 폭력일지라도 直接的으로 危害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間接的인 行爲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이다. 아울러 적극적 행위인 폭력만 포함할 것인지 소극적인 遺棄 및 放任의 행위까지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虐待頻度의 問題이다. 단 한번의 학대행위라도 노부모 학대에 포함되는 것인가? 아니면 反復的이고 常習的인 학대만을 노부모 학대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 1. 老父母 虐待의 對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가족구성원을 광의로 개념화하고 있어 노부모 학대의 대상은 매우 넓다고 하겠다. 즉, ①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②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嫡母庶子の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③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다(동법 제2조 2항).

### 2. 老父母 虐待의 範圍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부모에 대한 학대의 범위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부모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존속)상해, (존속)중상해,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둘째, 노후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경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존속)유기, (존속)학대 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형법 제271조, 제273조, 제274조)

셋째, 가정폭력의 대상인 노부모를 逮捕 또는 監禁하는 경우이며 未遂犯도 처벌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의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존속)체포, (존속)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준하며, 특히 상습범은 가중처벌 된다(형법 제276조, 제279조, 제278조, 제279조).

넷째, 가정폭력의 대상인 노부모에 대하여 脅迫하는 경우로서 형법의 (존속)협박, 특수협박 등에 해당하며, 未遂에 그친 경우도 포함된다(형법 제283조, 제284조).

다섯째, 노부모의 名譽를 毀損하는 경우와 侮辱을 하는 행위는 노부모 학대의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여섯째, 노부모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建造物, 自動車, 船舶이나 航空機 또는 占有하는 傍室을 搜索하는 경우에도 노부모 학대로 인정된다. 이는 형법의 주거침입의 죄 중 주거·신체수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형법 제321조).

일곱째, 暴行 또는 脅迫에 의하여 노부모의 權利行使를 妨害하거나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노부모 학대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는 未遂에 그치더라도 학대의 범위에 포함된다(형법 제324조).

여덟째, 노부모를 恐嚇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는 경우와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未遂에 그친 경우에도 노부모 학대의 범위 내에 해당된다(형법 제350조).

아홉째, 노부모의 財物, 文書 또는 電磁記錄 등 特殊媒體記錄을 毀損 또는 隱匿 등 기타 방법으로 그 效用을 害한 경우에도 노부모 학대에 해당된다(형법 제366조).

이상에서 형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노부모 학대와 관련된 내용에서 학대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노부모 학대에 관련된 행위를 身體的 危害行爲에 국한하지 않고 遺棄 및 虐待, 名譽毀損, 侮辱, 脅迫, 權利行使妨害, 재산의 손괴 등 소극적인 행위, 비작위적 행위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虐待의 頻度

학대의 빈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명시된 규정이 없다. 한번의 학대에도 노부모 학대로 인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특정행위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常習犯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는 조항이 있어 노부모 학대행위의 유형에 따라서는 이의 적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노부모 학대에 관련된 정책수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노부모 봉양의 가치관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적절한 노부모 부양의 형태를 정립해 줄 수 있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 가치관 정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 第 2 節 老父母 虐待 關聯 法·制度의 認知

本節에서는 노부모 학대와 관련된 法인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여부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알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였다.

동 법의 시행여부의 인지도를 알기 위해서는 자녀 등에 의하여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全體 虐待經驗 老人의 44.1%가 동 법의 시행을 알고 있었다. 인지율을 노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살펴보면 <表 3-1>과 같이 제시된다.

여자노인(47.1%)이 남자노인(35.3%)보다 높은 법 인지율을 보였으며, 74세 이하의 젊은 층의 노인(50.0%)이 75세 이상의 고령층의 노인(27.8%)보다 동 법의 인지를 많이 하고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수준을 가진 노인(62.5%)이 그렇지 못한 노인(41.7%)보다, 자녀 등 기타 가족원과 같이 살고 있는 노인(53.7%)이 老人單獨家口의 노인(29.6%)보다, 그리고 經濟狀態가 높을수록 (좋은 편 61.5%, 보통 56.5%, 나쁜 편 29.0%) 법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同法 시행의 인지실태를 파악한 김승권 외(1998)의 연구와는 相異한 結果를 보이는 것이다. 즉, 전체 조사대상의 인지율은 78.4%로 본 조사의 결과보다 무려 34.0%포인트나 높았다. 그들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은 학대경험 여부에 상관없으며, 또한 노인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고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비노인 계층이 대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表 5-1〉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의 認知率<sup>1)</sup>

(단위: %)

특성	인지율
성	
남자	35.3
여자	47.1
연령	
65~74세	50.0
75세 이상	27.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1.7
고등학교 이상	62.5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29.6
자녀동거 및 기타가구	53.7
경제상태	
좋은 편	61.5
보통	56.5
나쁜 편	29.0
전체	44.1

註: 1)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 68명을 분석대상으로 함.

특히 김승권 외(1998)의 연구에서 同 法의 인지여부를 家庭暴力被害者에 국한하여 파악한 결과를 보면, 여성피해자 88.1%, 남성피해자 96.8%, 아동피해자 39.6%였다(表 3-2 참조).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여준 노인피해자의 법 인지율 44.1%는 兒童에 비하여는 다소 높은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表 5-2〉 家庭暴力被害者の『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施行 認知率

(단위: %, 명)

응답자	인지율	(수)
여성피해자	88.1	(159)
남성피해자	96.8	( 31)
아동피해자	39.6	( 48)
전체	79.4	(238)

資料: 김승권·조애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1998. 재인용.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피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認知經路 즉, 누구를 통해서, 또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를 질문한 결과 全體 應答者의 90.6%가 TV 및 신문을 통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비록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웃·친구 등을 통해서 6.3%가 인지경로로 밝혀졌다.

〈表 5-3〉 虐待 被害老人의 特性別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施行의 認知經路

(단위: %)

인지경로	비율
이웃·친구	6.3
TV·신문	90.6
기타	3.1
계	100.0
(명)	(32)

註: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인지하고 있는 피학대 노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이와 같은 결과는 金勝權 外(1998)의 연구에서 보여준 가정폭력피해자별 동 법 시행의 인지경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그들의

연구에서는 TV 및 신문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수용되어 있는 시설이었으며, 그 외 이웃·친구 등은 매우 낮았다. 특히 그들의 연구는 피해대상이 시설에 수용된 경우가 있어 시설을 통하여 알게 된 경우가 높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에 수용되었거나 학대피해자가 아닌 노인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한 결과를 보면, 모든 노인이 TV 및 新聞이 인지경로였다(表 5-4 參照). 따라서 약 1년만에 일부 노인이 이웃이나 친구를 통해 이러한 知識을 습득하게 되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表 5-4〉 家庭暴力被害 對象者別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 施行 認知經路<sup>1)</sup>

(단위: %)

응답자	이웃·친구	TV·신문	시설	기타	계 (명)
여성피해자	4.5	68.4	23.3	3.8	100.0 (133)
남성피해자	6.6	93.3	-	-	100.0 ( 30)
아동피해자	5.3	78.9	5.3	10.5	100.0 ( 19)
노인피해자	-	100.0	-	-	100.0 ( 34)
전체	4.2	77.8	14.8	3.2	100.0 (216)

註: 1)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관련법 시행여부를 모른다는 89명과 무응답 22명 제외 하였으며, 노인의 경우에는 피해무경험자를 포함함.

資料: 김승권·조애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1998. 재인용.

이상의 결과에서 우리 나라 노인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家庭暴力 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노부모를 잘 모시고 適切한 扶養을 하는 자녀들이 동 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임을 틀림없다. 그러나 노인자신들도 동 법의 시행과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그들의 權利를 제대로 保障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식들에게 適切한 扶養을 要求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럼으로써 가족구성원에 의하여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학대를 효율적으로 豫防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第 3 節 老父母 虐待에 대한 老人의 態度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1998. 7. 1일부터 시행되면서 老父母 虐待를 포함한 家庭暴力도 일종의 犯罪로 규정하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물론 同 法이 시행되기 전에도 刑法은 노부모 학대에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법이 시행됨으로써 노부모 학대를 포함한 제반 유형의 가정폭력에 대하여 國民的 警覺心을 일깨우고 있으며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이 요망되고 있는 시점이다. 특히 家族關係에서 노부모를 잘 부양하려는 자녀의 태도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포함한 노인들의 權利를 지키려는 노인자신들의 노력도 노인에게 대한 다양한 家庭暴力을 豫防하는데 크게 寄與할 것이다.

따라서 本 節에서는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본인가정과 이웃가정에 노부모 학대가 발생할 경우 申告할 意向이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이는 신고할 경우 虐待 加害者인 子女 등의 가족원이 法의 저촉을 받기 때문에 피학대자인 노부모의 신고태도는 同 法의 適用 및 實效性 增大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노부모 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필요여부와 입소의향, 그리고 노부모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건의를 피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保護施設에 대한 意見은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女性被害者에 국한되어 설치되

어 있으며, 남성피해자 보호시설은 전무하고, 노인피해자는 양로원 등 노인수용시설에서 단순보호 차원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정 폭력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정책마련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 1. 老父母 虐待 發生時 申告

#### 가. 本人家庭의 家庭暴力에 대한 申告

노부모 학대의 被害經驗이 있는 노인의 26.9%가 본인가정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1998년에 실시된 본인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63.3%가 신고하겠다고 한 것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金勝權 外, 1998).<sup>26)</sup>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노부모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이었지만, 金의 研究는 일반인을 조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즉, 실제로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경우는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現實的인 制約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지 않았나 짐작된다.

본인가정에서 노부모 학대가 발생할 경우 여자노인보다는 男子老人이, 年齡이 많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노인단독가구의 노인이, 勤勞所得이 있는 노인이, 경제상태가 보통이거나 나쁜 경우에 申告意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인지여부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이 40.0%의 높은 신고의향을 보였다.

학대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노인의 73.1%가 신고하지

26) 본인가정에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무조건 신고 54.8%,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원하고 비밀보장이 될 경우 신고 8.5%로 전체 63.3%가 신고의향이 있음을 보였음(김승권 외, 1998).

않겠다는 의향을 보였는데, 그럼 이들이 왜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살펴보았다. 신고하지 않겠다는 노인의 83.7%가 ‘가족이므로’로 응답하였으며, ‘대화로 풀기를 원함’, ‘창피해서’, 그리고 ‘더 학대받을 까봐’ 등도 다소 있었다. 한 마디로 노인들의 家族主義的 價値觀이 집안에서 자신들을 학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告發 등에 의하여 外部로 표출시키지 않고 혼자서 속 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족’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경향은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등 가족과 同居하고 있는 노인이, 勤勞所得이 없는, 家口經濟狀態가 보통인 노인이 높았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비록 낮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학대를 더 받을까 봐’ 또는 ‘생활비가 중단될까 봐’가 4.1%가 있었는데 이들 노인에 대한 주의 깊은 關心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대를 경험한 노인의 身體的 健康狀態別 신고의향과 신고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表 5-6>과 같다. 간략히 요약하면,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일관되지 않았는데, 건강이 나쁜 노인의 28.9%, 건강이 좋은 노인의 27.8%가 신고의사를 표한 반면, 보통의 건강상태에 있는 노인은 18.2%만이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일상생활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에 따른 신고의향여부도 별다른 특징을 보이지 않았는데, 약간 어렵거나 보통인 상태에 있는 노인이 가장 높은 38.1%의 신고의향을 비추었다. 또한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 상 어려움의 정도가 약간 어렵거나 보통인 노인이 31.6%의 가장 높은 신고의향을 가지고 있었다.



〈表 5-5〉 虐待 被害老人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本人家庭 內 老人 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단위: %)

특성	신고율	비신고 이유 <sup>1)</sup>				계(명)
		가족 이므로	대화로 풀기를 원함	더 학대받을 까봐·생활비 중단할까봐	창피해서 (집안 일)	
성						
남자	31.3	72.7	27.3	-	-	100.0(11)
여자	25.5	86.8	-	5.3	7.9	100.0(38)
연령						
65~74세	26.5	83.3	5.6	5.6	5.6	100.0(36)
75세 이상	27.8	84.6	7.7	-	7.7	100.0(1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8.3	83.7	7.0	2.3	7.0	100.0(43)
고등학교 이상	14.3	83.3	-	16.7	-	100.0( 6)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34.6	82.4	-	5.9	11.8	100.0(17)
자녀동거 및 기타가구	22.0	84.4	9.4	3.1	3.1	100.0(32)
근로소득 유무						
없음	26.3	83.3	4.8	4.8	7.1	100.0(42)
있음	40.0	66.7	33.3	-	-	100.0( 3)
경제상태						
좋은 편	7.7	83.3	8.3	8.3	-	100.0(12)
보통	34.8	93.3	6.7	-	-	100.0(15)
나쁜 편	30.0	81.0	-	4.8	14.3	100.0(21)
법 인지여부						
인지	26.7	90.9	4.5	-	4.5	100.0(22)
비인지	27.0	77.8	7.4	7.4	7.4	100.0(27)
전체	26.9	83.7	6.1	4.1	6.1	100.0(49)

註: 1) 신고의향이 없는 노인 5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1명 제외됨.

2) 응답자가 10명 이하인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이들 노인이 本人家庭에서 노부모 학대가 발생할 경우 申告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家族이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

지만 이 외에 다른 이유를 많이 보이는 경우만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의 15.4%가 ‘창피해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며, 건강상태가 보통인 노인의 11.1%는 ‘대화로 풀기를 원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에도 應答者가 적어 統計學的으로 有意味하지는 않지만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상 어려움의 정도가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는 노인들은 ‘대화로 풀기를 원함’ 또는 ‘창피해서’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表 5-6〉 虐待 被害老人의 健康狀態別 本人家庭 內 老人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단위: %)

특성	신고율	비신고 이유 <sup>1)</sup>				계(명)
		가족 이므로	대화로 풀기를 원함	더 확대받을 가봐·생활비 중단할까봐	창피해서 (집안일)	
건강상태						
좋은 편	27.8	76.9	7.7	-	15.4	100.0(13)
보통	18.2	88.9	11.1	-	-	100.0( 9)
나쁜 편	28.9	85.2	3.7	7.4	3.7	100.0(27)
일상생활 수행상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음	22.0	90.6	-	3.1	6.3	100.0(32)
약간 어려움+보통	38.1	76.9	15.4	7.7	-	100.0(13)
매우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	20.0	50.0	25.0	-	25.0	100.0( 4)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상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음	23.7	89.7	3.4	-	6.9	100.0(29)
약간 어려움+보통	31.6	84.6	7.7	7.7	-	100.0(13)
매우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	30.0	57.1	14.3	14.3	14.3	100.0( 7)
전체	26.9	83.7	6.1	4.1	6.1	100.0(49)

註: 1) 신고의향이 없는 노인 5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1명 제외됨.

2) 응답자가 10명 이하인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학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는 노인들의 虐待類型, 虐待經驗의 數, 加害者의 數에 따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학대가 가볍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대가 우발적으로 가끔씩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문제가 있는 特定人에 의해서 학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가족을 고려해서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假定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비록 응답자가 적어 통계학적으로는 무의미하지만 身體的 虐待를 경험한 노인은 전혀 신고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家族이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을 法的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적 학대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노인의 財産을 擄取하는 경우에는 신고의향이 가장 높은 31.3%였으며, 言語 및 心理的 虐待의 경우는 25.0%, 그리고 노부모를 放任하는 경우에는 23.8%가 신고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이 다양한 학대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살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이 받은 虐待經驗의 數에 따라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1~2번의 학대를 받은 노인의 신고의향은 25.9%임에 비하여 3번 이상 학대를 경험한 노인은 무려 59.7%나 높은 신고의향을 비추었다. 이는 常習的인 학대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가해자가 1명인 경우는 26.1%,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1.3%가 신고를 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대경험수의 증가에 비하여 높은 신고의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결국 加害者의 數보다는 虐待經驗의 數가 피학대 노인으로 하여금 申告意志를 높게 만드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非申告 理由는 ‘家族이므로’가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경우를 살펴보면, 학대유형이 放任인 경우는 ‘가족이므로’ 외에도 ‘대화로 풀기를 원함’ 또는 ‘창피해서’가 25.0%나 되었다. 그런데 학대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인 3번 이상의 학대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와 ‘대화로 풀기를 원함’이 제법 있었으며, 더군다나 ‘虐待를 더 받을까 봐 또는 生活費가 中斷될까 봐’가 있음은 극히 우려된다.

〈表 5-7〉 虐待 被害老人의 虐待類型, 虐待經驗數 및 加害者數別 本人 家庭 內 老人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단위: %)

특성	신고율	비신고 이유 <sup>1)</sup>				계(명)
		가족이 므로	대화로 풀기를 원함	더 학대받을 까봐·생활비 중단할까봐	창피해서 (집안일)	
학대유형 <sup>1)</sup>						
신체적학대	-	100.0	-	-	-	100.0( 2)
언어·심리적 학대	25.0	83.3	6.3	4.2	6.3	100.0(48)
경제적 착취	31.3	81.8	-	9.1	9.1	100.0(11)
방임	23.8	68.8	12.5	6.3	12.5	100.0(16)
기타	50.0	50.0	-	25.0	25.0	100.0( 4)
학대경험수						
1~2	25.9	95.0	5.0	-	-	100.0(20)
3 이상	59.7	75.9	6.9	6.9	10.3	100.0(29)
가해자수						
1명	26.1	85.3	2.9	2.9	8.8	100.0(34)
2명 이상	31.3	80.0	13.3	6.7	-	100.0(15)
전체	26.9	83.7	6.1	4.1	6.1	100.0(49)

註: 1) 신고의향이 없는 노인 5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1명 제외됨.

2) 응답자가 10명 이하인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나. 이웃家庭의 家庭暴力에 대한 申告

노부모 학대의 피해경험이 있는 노인의 58.8%가 이웃가정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신고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본인가정에 노부모 학대가 발생할 경우의 申告率 26.9%의 무려 2배가 넘는 비율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인가정은 家族이기 때문에 차마 신고할 수 없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며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승권 외(1998)의 연구에서는 이웃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을 경우 65.6%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것과 비교하면 약간 낮은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승권 외의 연구에서 제시한 본인가정의 暴力發生時 신고율 63.3%, 이웃가정에서의 발생시 신고율 65.6%는 겨우 2.3%포인트의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대노인의 發生家庭에 따른 신고율 차이는 31.9%포인트로 엄청났다. 따라서 이는 우리 사회의 노부모의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하겠다는, 심지어는 본인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肉體的, 財産的, 精神的 被害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측면을 示唆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웃가정에서 노부모 학대가 발생할 경우 여자노인보다는 男子老人이, 年齡이 많을수록, 教育水準이 높을수록, 자녀 등 기타 가족원과 같이 살고 있는 노인이, 근로소득이 없는 노인이,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의 인지가 낮은 노인이 신고할 의향이 높음을 보여주었다(表 5-8 參照).

그런데 이웃가정에서 노부모 학대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하는 노인의 非申告 理由는 ‘남의 일이므로’가 74.1%로 가장 높았으며, ‘보복이 두려워’ 11.1%, ‘직접 충고’가 11.1%, 그리고 ‘젊은이들을 경찰서에 보내면 안되므로’가 3.7%로 나타

27) 응답자의 53.3%는 이웃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되었을 경우 무조건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며,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이거나 피해자가 원하고 비밀보장이 될 경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경우는 12.3%였음(김승권 외, 1998).

났다. 응답노인이 1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노인특성별 신고를 하지 않는 주요 이유를 살펴보면, 여자노인은 ‘보복이 두려워’(13.6%)가 많았으며, 65~74세 이하와 勤勞所得이 없는 노인은 ‘보복이 두려워’와 ‘직접충고’ 등이 비교적 많았다.

〈表 5-8〉 虐待 被害老人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이웃家庭 內 老人 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단위: %)

특성	신고율	비신고 이유 <sup>1)</sup>				계(명)
		남의 일이므로	보복이 두려워	직접충고	젊은 이들을 경찰서에 보내면 안되므로	
성						
남자	70.6	60.0	-	20.0	20.0	100.0( 5)
여자	54.9	77.3	13.6	9.1	-	100.0(22)
연령						
65~74세	58.0	65.0	15.0	15.0	5.0	100.0(20)
75세 이상	61.1	100.0	-	-	-	100.0( 7)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3.3	74.1	11.1	11.1	3.7	100.0(27)
고등학교 이상	100.0	-	-	-	-	-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48.1	76.9	23.1	-	-	100.0(13)
자녀동거 및 기타가구	65.9	71.4	-	21.4	7.1	100.0(14)
근로소득 유무						
없음	62.1	71.4	14.3	14.3	-	100.0(21)
있음	60.0	50.0	-	-	50.0	100.0( 2)
경제상태 <sup>2)</sup>						
좋은 편	69.2	25.0	50.0	25.0	-	100.0( 4)
보통	65.2	100.0	-	-	-	100.0( 8)
나쁜 편	51.6	78.6	7.1	7.1	7.1	100.0(14)
법 인지여부						
인지	56.7	90.9	9.1	-	-	100.0(11)
비인지	60.5	78.6	7.1	7.1	7.1	100.0(14)
전체	58.8	74.1	11.1	11.1	3.7	100.0(27)

註: 1) 신고의향이 없는 노인 2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1명 제외됨.

2) 응답자가 10명 이하인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이웃가정에서 노부모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신고하겠다는 노인의 비율을 자신이 經驗한 虐待의 類型, 經驗數, 加害者數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表 5-9>와 같이 나타난다.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경제적 착취’를 경험한 노인이 58.8%로 가장 높은 신고의향을 보였으며, 언어·심리적 학대 경험노인은 56.3%, 그리고 放任을 경험한 노인은 47.6%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학대를 많이 경험한 노인보다는 적게 경험한 노인이 높은 신고의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본인가정 내의 노부모 학대발생의 경우에 나타난 虐待類型別 申告率과 유사하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인가정의 신고율 보다는 전반적으로 높은 隔差를 보이고 있었다.

虐待 經驗數에 따른 이웃가정에서의 노부모 학대 신고여부는 학대 경험이 낮은 노인(1~2회)이 64.3%, 경험이 많은 노인(3회 이상)은 55.0%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가정에서의 학대발생시 신고태도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러한 경향은 가해자수에서도 나타났는데, 본인가정에서의 학대 발생시 신고태도와는 달리 이웃가정에서의 신고를 하겠다는 비율은 加害者數가 적은 노인이 더 높게 나타났다(1명: 63.8%, 2명 이상: 57.1%).

이와 같이 본인가정 내에서의 노부모 학대 발생의 경우보다 이웃가정에서의 학대발생시 신고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노부모 학대의 유형, 학대경험수, 가해자수 등에 구분없이 ‘남의 일이므로’가 가장 높았다. 결국 본인가정 및 이웃가정 내의 노부모 학대 非申告 理由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각자의 집안 일로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본인이 경험한 학대의 고통을 감안하여 본인가정의 학대는 신고하지 못하지만 이웃가정의 학대는 대신 신고를 해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하게 있음을 보여준다.

〈表 5-9〉 虐待 被害老人의 虐待類型, 虐待經驗數 및 加害者數別 이웃 家庭 內 老人虐待 發生時 申告率 및 非申告 理由  
(단위: %)

특성	신고율	비신고 이유 <sup>1)</sup>				계(명)
		남의 일이므로 두려워	보복이 두려워	직접충고	젊은이들을 경찰서에 보내면 안되므로	
<b>학대유형</b>						
신체적학대	2.9	100.0	-	-	-	100.0( 2)
언어·심리적 학대	56.3	74.1	11.1	11.1	3.7	100.0(27)
경제적 착취	58.8	71.4	14.3	14.3	-	100.0( 7)
방임	47.6	81.8	-	9.1	9.1	100.0(11)
기타	50.0	74.0	25.0	-	-	100.0( 4)
<b>학대경험수</b>						
1~2	64.3	70.0	20.0	10.0	-	100.0(10)
3 이상	55.0	76.5	5.9	11.8	5.9	100.0(17)
<b>가해자수</b>						
1명	63.8	75.0	6.3	12.5	6.3	100.0(16)
2명 이상	57.1	72.7	18.2	9.1	-	100.0(11)
전체	58.8	74.1	11.1	11.1	3.7	100.0(27)

註: 1) 신고의향이 없는 노인 2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응답 1명 제외됨.  
2) 응답자가 10명 이하인 경우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2. 老父母 虐待 被害老人 保護施設

이 부분에서는 학대 피해노인을 위한 保護施設의 設置가 必要한지의 여부와 보호시설에 入所할 意向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대상인 학대경험이 있는 노인에게 질문한 결과를 논의한다. 전체 노인의 88.2%가 노인피해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로 入所할 意向이 있는 노인은 55.9%로 나타났다.

이를 노인의 人口社會學的 特性에 따라 간략히 살펴보면, 노인의 性에 구분없이 必要率은 同一하였으며 入所意向은 여자노인(52.9%)보



다는 남자노인(64.7%)이 높았다. 노인의 年齡에 따라서는 필요율과 입소의향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教育水準은 保護施設에 관련된 態度決定에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중학교 이하의 노인은 86.7%가 설치의 필요성을, 고등학교 이상의 노인은 모두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고학력층 노인들의 비율이 높는데 비해 입소의향은 중학교 이하 노인은 65.4%가, 그리고 고등학교 이상의 노인은 57.1%로 중학교 이하 저학력층 노인들의 입소의향이 더 높았다.

家口形態에 따라서는 시설의 필요율과 입소의향이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즉, 노인끼리만 살고 있는 경우보다는 자녀 등 다른 家族員과 同居하고 있는 노인들이 보호시설의 필요성과 입소율이 높이 나타났다. 그런데 老人單獨家口의 노인들도 시설이 필요하고 입소의향이 있다는 것은 자녀 등 학대자가 노인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는데 대항우려가 있으며, 특히 生活費 支援中斷 등 생계걱정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설보호를 원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피해자 보호시설의 필요성은 勤勞所得이 없는 피학대 노인(89.7%)이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0.0%)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입소의향도 전자(56.9%)가 후자(40.0%)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학대받는 노인이 가족과 사느니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家口의 經濟狀態에 따라서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老人 自身의 所得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가구경제는 노인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엿보게 한다.

노인학대 피해자보호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노인의 건강상태, 일상생활 수행상 어려움, 그리고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상의 어려움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表 5-11>이 잘 보여준다.

〈表 5-10〉 虐待 被害老人의 人口社會學的 特性別 老人被害者保護施設 必要率 및 入所意向

(단위: %)

특성	필요율 <sup>1)</sup>	입소의향 <sup>2)</sup>
성		
남자	88.2	64.7
여자	88.2	52.9
연령		
65~74세	88.0	56.0
75세 이상	88.9	55.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86.7	34.0 ?
고등학교 이상	100.0	4.0 ?
가구형태		
노인단독가구	81.5	51.9
자녀동거 및 기타가구	92.7	58.5
근로소득 유무		
없음	89.7	56.9
있음	60.0	40.0
경제상태		
좋은 편	84.6	46.2
보통	100.0	78.3
나쁜 편	83.9	45.2
전체	88.2	55.9

註: 1) 학대경험노인 6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율 88.2%를 제외한 11.8%는 '필요없음' 4.4%, '잘 모르겠음' 7.4%임.

2) 입소의향이 있는 55.9%를 제외한 44.1%는 '입소의향 없음' 30.9%, '잘 모르겠음' 13.2%임

피학대 노인의 健康狀態가 나쁠수록 施設의 必要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健康상태가 나쁜 노인은 무려 9.7%나 되었다. 그러나 입소의향은 健康상태가 나쁜 노인이 가장 낮은 50.0%에 불과하였고 健康상태가 보통인 노인이 66.7%를 보였는데 이는 健康이 나쁜 경우 施設에서의 생활이 여의치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응답이 아닐까 짐작된다.

일상생활 수행상 어려움의 정도가 낮을수록 시설의 필요성이 높아 전혀 어렵지 않은 노인이 90.5%, 일상생활을 하기에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수 없는 노인은 80.0%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시설에의 입소의향은 日常生活의 수행이 어렵거나 전혀 불가능한 노인이 40.0%로 가장 낮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건강상태에서 논의한 것과 같은 이유인 것으로 추측된다.

手段的 日常生活의 어려움 정도에 따른 老父母 虐待 被害施設의 설치 필요성은 매우 어렵거나 전혀 할 수 없는 노인이 90.0%로 가장 높았고, 약간 어렵거나 보통인 노인은 가장 낮은 84.2%를 보여 일관되지 않은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入所意向도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이상에서 학대경험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특성에 의하여 시설의 필요성과 입소의향을 살펴보았는데, 必要率과 入所意向이 가장 근접한 비율을 보인 노인계층은 健康狀態가 좋은 노인으로 밝혀졌다. 즉, 이들 노인의 施設必要性은 72.2%, 入所意向은 61.1%로 비록 시설의 필요성은 낮게 나타났지만 실제 입소할 마음가짐이 되어있는 노인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약 85%나 되었다.

피해자 보호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 노인의 虐待類型, 虐待經驗數, 그리고 加害者數에 따라 살펴보면 <表 5-12>와 같다. 노인이 경험한 학대유형이 신체적 학대인 경우는 비록 응답자수가 적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시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경제적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는 노인의 94.1%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언어 및 심리적 학대의 경험이 있는 노인은 가장 낮은 87.5%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입소의향은 56.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5-11> 虐待 被害老人의 健康狀態別 老人被害者 保護施設 必要率 및 入所意向

(단위: %)

특성	필요율 <sup>1)</sup>	입소의향 <sup>2)</sup>
건강상태		
좋은 편	72.2	61.1
보통	91.7	66.7
나쁜 편	94.7	50.0
일상생활 수행상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음	90.5	54.8
약간 어려움+보통	85.7	61.9
매우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	80.0	40.0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상 어려움		
전혀 어렵지 않음	89.7	56.4
약간 어려움+보통	84.2	52.6
매우 어려움+전혀 할 수 없음	90.0	60.0
전체	88.2	55.9

註: <表 5-10>과 동일.

또한 노인이 받은 虐待의 經驗數와 학대를 가하는 家族員數는 필요율을 증대시키고 입소의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학대경험이 3회 이상인 노인의 92.5%가 시설의 필요성을 보였고 입소의향은 63.3%로 높았으며, 가해자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시설 필요율 90.5%, 입소의향 60.0%로 높았다.

이상에서 노부모 학대의 피해노인을 위한 시설의 필요성과 입소의향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피해자 보호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의 노인이 실제로 입소할 의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이 단순히 가해자의 인격적 결함이나 피해노인의 잘못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個人的, 家族的, 社會的인 다양한 요인이 相互作用하여 나타난다고 한다(김승권 외, 1998).

〈表 5-12〉 虐待 被害老人의 虐待類型, 虐待經驗數 및 加害者數別  
老人被害者 保護施設 必要率 및 入所意向

(단위: %)

특성	필요율 <sup>1)</sup>	입소의향 <sup>2)</sup>
학대유형		
신체적학대	100.0	-
언어·심리적 학대	87.5	56.3
경제적 착취	94.1	52.9
방임	90.5	52.4
기타	100.0	62.5
학대경험수		
1~2	82.1	50.0
3 이상	92.5	63.3
가해자수		
1명	87.2	53.2
2명 이상	90.5	60.0
전체	88.2	55.9

註: <表 5-10>과 동일.

또한 가정폭력의 특성상 특정 개인에게만 폭력이 행사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가족원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설의 필요성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政策的 考慮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시설에 보호하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精神的 治療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 3. 老父母 虐待豫防을 위한 政策的 建議

이 부분에서는 老父母 虐待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건의를 피학대 경험이 있는 노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런데 본 연구를 위한 조사 대상 노인이 지난 1년 동안 자녀 등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

힘이 있는 노인인데도 불구하고 26.4%는 노부모 학대 예방을 위한 건의할 내용이 없다고 응답하여 의외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많은 노인이 이러한 행위가 순수한 개별가족의 문제로 치부해 가족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노인이 있기 때문으로 짐작되기도 한다. 하지만 가정폭력의 한 유형으로서의 老父母 虐待는 家族問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弘報啓蒙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아무튼 전체 피학대 노인의 73.6%가 정책적 건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건의내용은 ‘老人保護施設의 擴充’으로 무려 41.0%나 되었다. 이어서 ‘연금확대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독립’(25.6%)을 바라고 있어 資源不足으로 인하여 학대를 받고 있거나 경제적 문제로 학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측면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들 노인의 17.9%는 ‘교육 및 계몽’을 지적하고 있었는데 노부모 봉양의 가치관이 사라지고 있음을 개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며, 『孝 思想』의 鼓吹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들 외에도 피학대 노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내용으로는 ‘노인 복지시설 확충’, ‘치매환자 보호시설의 확충’, ‘복지관의 무료이용’ ‘무료숙식’, ‘노인학대자 처벌 관련 법제정’, 등 다양하였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主要 政策建議 內容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保護 및 利用施設의 擴充이 주류를 이루었다. 또한 노인의 소득을 보장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成人子女에 대한 『孝 思想』의 강조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表 5-13〉 虐待 被害老人의 老父母 虐待 豫防을 위한 建議內容  
(단위: %)

구분	비율
건의여부	
없음	26.4
있음	73.6
계	100.0
(명)	(53)
건의내용	
노인보호시설 확충	41.0
연금확대로 자녀로부터 경제적 독립	25.6
교육·계몽	17.9
노인복지시설(이용시설) 확충	5.1
치매환자 만을 보호해주는 시설 확충	2.6
복지관을 무료로 이용가능케 함	2.6
통·반을 통한 무료숙식	2.6
노인학대자 처벌 관련 법 제정	2.6
계	100.0
(명)	(39)

우리 나라 刑法은 모든 暴力에 대하여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모든 유형의 폭력에 대하여 엄격한 法適用을 하고 있다. 이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족내부의 문제로 보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에서 조차도 크게 문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부모 학대의 경우에도 이런 양상을 강하게 보이고 있다. 즉,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노인들조차도 노부모 학대를 가족문제로 보는 등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는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며 일종의 미봉책일 뿐이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이와 같은 행위는 재발될 것이며 폭력의 유형은 다양

해지고 그 수준도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는 家族次元의 對策, 政策的 考慮, 法·制度的 뒷받침 등이 종합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한층 좋아졌다는 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은 한층 약화된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夫婦中心의 價値觀, 父母-未婚子女 중심의 가치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진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한 마디로 家族共同體 意識과 『孝 價値觀』의 약화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겠다. 따라서 이에 대한 效率的 對策이 없는 한 노인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유형의 신체적 및 정신적 학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 第 6 章 老父母 虐待 豫防 및 治療對策

### 第 1 節 老父母 虐待의 豫防對策

#### 1. 老父母 虐待의 社會問題로서의 認識을 위한 教育·弘報

노부모학대는 다른 가정폭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가정 내에서 家族員, 특히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신문지상 등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것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내의 문제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 문화의 특성과 일반인들의 무관심으로 그리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家庭暴力犯罪의 處罰 등에 관한 特例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는 있으나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미흡으로 정확한 이해와 개념 등에 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립과 社會問題로서의 인식 확대를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2. 老父母 虐待에 대한 老人들의 認識轉換을 위한 教育實施

대부분의 노인들의 경우 자녀들에 의한 학대를 경험하여도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법에 呼訴하거나 申告하지 않으며,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이나 그로 인하여 학대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노부모 학대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학대 피해노인들의 경우 그 원인이 본인의 무능력

에 있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가해자들의 노부모 학대가 常習的, 持續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要因이 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노인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손상에 의한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는 피해노인들의 老人虐待에 관한 認識이 부족한 결과에 기인하며, 가족내의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消極的인 態度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全般的인 教育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認識轉換과 가족들의 不適切한 처우에 積極的으로 對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3. 老父母 虐待 豫防을 위한 相談서비스 提供

노인을 부양한다는 사실은 가족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스트레스가 되거나 긴장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안적 부양자나 지원이 유용하지 못할 때는 부양자와 노인 중 어느 쪽을 학대자와 피해자로 분류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虐待의 惡循環을 막을 수 있도록 학대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相談서비스의 提供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專門相談機關의 擴充과 專門相談人力의 養成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외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第 2 節 老父母 扶養家庭의 支援

### 1. 扶養者의 扶養負擔 減少를 위한 支援

노인들의 日常生活能力에 따른 依存性, 認知障礙에 따른 의존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양스트레스가 높으며, 신체적, 생리적 건강쇠퇴와 치매와 같은 精神健康障礙 역시 성인자녀와의 갈등 및 스트레스를 심화시켜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양자의 扶養負擔 減少를 위해서는 노인부양을 주부양자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의 역할 분담이 어려울 경우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을 이용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이를 위해 在家老人福祉施設의 擴充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 扶養者의 老父母 扶養 및 看護方法을 위한 教育實施

노부모중 치매나 妄想중인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를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노인의 問題行動에 대한 적절한 對處와 간호방법에 대한 教育을 실시하여 부양자의 扶養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한다.

## 第 3 節 老父母 虐待의 被害者 保護對策

### 1. 老父母 虐待 被害者 保護施設

학대를 경험하는 노인들 중 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무조건 피한다는

경우 적당히 피할 곳이 없어 배회한다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학대 피해노인들을 保護하기 위한 施設이 요구된다. 가정폭력 관련 법에 의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호시설은 주로 남편에 의한 아내학대의 피해자 및 그 아동을 위한 시설로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기존의 노인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결과에서도 학대 피해노인들의 55.9%가 老人保護施設의 入所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욕구는 충분히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2. 老父母 虐待 被害者를 위한 醫療서비스 提供

본 연구결과,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자녀들로부터의 학대로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각각 8.5%와 76.6%를 나타내고 있다. 학대 피해노인들의 경우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난 경우는 비율이 낮은 편이나 그 증상에 있어서는 만성적인 두통, 팔·다리 골절상,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쇼크 등으로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정신적 증상은 많은 학대피해 노인이 보이고 있으며, 그 증상은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과 매사에 불안, 우울하며, 죽고싶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피해노인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 第 4 節 老父母 虐待 加害者 處罰

### 1. 老父母 虐待 加害者에 대한 嚴格한 法 適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노인들은 자녀 등에 의한 학대로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고 있으며, 학대빈도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한 폭력이나 학대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가해자의 경우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노부모에 대한 학대나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감호시설의 설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老父母 虐待 加害者治療 및 相談

노부모 학대원인도 학대자 개인의 精神病理學的인 要因이나 社會的인 要因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요인일 경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하도록 한다.,

## 第 5 節 老父母 虐待의 關聯 法の 補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내학대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법안의 제정에 앞서 노인학대를 초래할 수 있는 要因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豫防對策에 대한 배려없이 處罰規定만 明文化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앞으로 더욱 심하게 은폐될 可能性이 內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선이, 1998:2). 또한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이나 보호시설 등도 모두 아내학대에 관련된 것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 法案의 補完을 통해 노인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 第 7 章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성인자녀의 노부모학대의 실태를 파악하여 학대피해 노인 및 노부모 부양 자녀를 위한 支援對策 등을 강구하고 노부모 학대의 豫防對策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6개 대도시의 12개 노인(종합)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부모 학대 實態調查를 실시한 것으로, 그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응답노인의 8.2%가 그들의 자녀 및 그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 학대 피해노인들 중 65~74세 연령층에서는 여자노인의 학대경험률이 높았고(8.4%), 75세 이상에서는 남자노인의 학대경험률(16.1%)이 높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고령층의 여자노인의 학대경험률이 높은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 학대 피해노인의 대부분이 고령층, 저학력, 무배우자로서 주 수입원은 자녀로부터의 보조액이며, 일상생활능력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도 상당수 있어 身體的, 經濟的 依存性이 높은 편이었다.

둘째, 학대유형별로는 言語·心理的 학대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방임, 경제적 착취 순이었으며, 신체적 학대 경험률은 가장 낮았다. 학대빈도는 전체 노부모 학대 건수 중 44.4%가 거의 매일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대의 가장 주된 원인은 經濟的인 問題(39.5%)이었다.

셋째, 학대 피해노인중 9.5%가 신체적 증상을, 그리고 76.6%는 정신적 증상을 보였으며, 이들 중 19.4%가 의료처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 10명중 약 2명은 학대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자녀 등으로 부터의 학대에 대한 대응으로 피해노인의 62.8%는 끝까지 참는다고 하여 상당수의 노인이 학대에 매우 受動的으로 대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학대 피해노인은 학대를 피하기 위해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노인이 도움을 요청할 기관이 마땅히 없음을 間接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학대 피해노인이 가해자인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46.8%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어서 학대가 계속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학대 발생시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1.1%로 상당히 낮았으며, 본인 가정에 학대발생시 申告意向은 26.9%로 낮은 반면, 이웃 가정의 학대발생시는 본인 가정 학대발생시 신고율의 2배인 58.8%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의 認知率 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따라서 노부모 학대 문제를 가정 내 私的인 문제로 취급하려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학대 피해노인의 88.2%가 노인피해자 보호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에 비해 실제로 입소할 의향이 있는 노인은 55.9%이었으며, 노부모 학대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피해노인들은 노인보호시설의 확충과 자녀로부터의 경제적인 독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年金擴大 등을 희망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한 노부모학대 豫防 및 治療對策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노부모학대의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방안으로 전문상담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아울러 피해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요구된다. 또한 노부모 부양가정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支援方案으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노부모학대 관련 법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를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내적인 문제로 간주하여 隱蔽하거나 放置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社會的, 國家的 次元에서의 對策을 講究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보다 광범위한 實態調査와 發生原因에 관한 深層的인 研究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학대피해자인 노인과 가해자인 부양가족 모두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事後治療的인 接近 보다는 학대발생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즉, 노인 인적자원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자녀의 노부모 扶養負擔을 輕減시켜 줄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家族員 모두의 삶의 質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김미경,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청주시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8.
- 김승권·조애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김태현·한은주,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한국노년학』, 제17권 제1호, 한국노년학회, 1997, pp.51~73.
- 김한곤,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제18권 제1호, 통권 제26호, 한국노년학회, 1998, pp.184~197.
- 김현수,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1997.
- 반형욱, 『노인학대의 실태조사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송현애, 전길량,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II-노인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6권 제3호, 대한가정학회, 1998, pp. 145~159.
- 이선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8.
- 이영숙,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대한가정학회, 1997, pp. 359~372.

- 이해영,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1996 추계호, 통권 제3호, 한국노인문제연구소, 1996, pp.300~328
- 전길량, 송현애,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I-기혼 성인남녀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5권, 제3호, 한국가정관리학회, 1997, pp. 83~94.
- 정경희,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pp. 123~146.
- 최선화·공미혜·한동희,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34권, 1998, pp.189~214.
- 최해경,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22집, 1993, pp. 273~286.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 한동희·김정옥,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제4호, 1994, pp.45~56
- 한동희·김정옥, 「노년기 특성에 관련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제7권, 1995, pp.185~209.
- 한은주·최배영,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1997, pp.373~383.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 \_\_\_\_\_, 「1999 한국의 사회지표」, 1999(a).
- \_\_\_\_\_, 「1998 경제활동인구연보」, 1999(b).

多久良紀夫, 二宮加鶴香(譯), 「老人虐待」, 筒井書房, 1994.

Christine L. & McDaniel, J. D, *Elder Abuse in Domestic Setting Internet*, 1997.

Doglass, R. L., Domestic Neglect and Abuse of the Elderly :  
Implicationsfor Research and Service, *Family Relations*, 1983.

Eastman, M., *Old Age Abuse*, Age Concern England, 1984.

Goodkin, M. A., Wolf, R. S., & Pillemer, K. A., *A Case Comparison  
Analysis of Elder Abuse and Neglect in R. A., Kalish & D. K.,  
Reynolds(Eds.). Death and Ethnicity: A Psychocultural Study*, 20  
7~225, Amityville, NY: Baywood, 1989.

Hickey, T., & Douglass, R. L., Mistreatment of the Elderly in the  
Domestic Setting: An Expolratory Study,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71, 1981, pp.500~507.

Hwalek, M. A., & Sengstock, M. C, Assessing the Prohability of Abuse  
of the Elderly: Toward Development of a Clinical Screening  
Instrament,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5, 1986, pp.153~  
173.

King, N. R., Exploitation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 *Abuse of  
the Elderly*, 1986.

Penhale, B., The Abuse of Elderly People: Consideration for Practice,  
*Brit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Vol. 23. 1993.

Penhale, K., & Surtor, J. J, Violence and Veolent Feelings: What Causes  
them among family are givers *Journal of Gerontology*, Vol. 47,  
1992.

- Pillemer, K. A., & Finkelhor, D., Causes of Elder Abuse: Caregiver Stress Versus Problem Relativ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Vol. 59(2), 1989, pp.179~187.
- Sengetock, M., & Hawlek, M., Assessing the Probability of Elder Abuse: Toward the Development of a Clinical Instrument,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Vol. 5(2), 1986, pp.153~173.
- Steinmetz, S. K., & Amsden, D. J., Dependent Elders Family Stress and Abuse, In Brubaker, T. H (Eds.), *Families Relationships in latter life*, Sage Pub, Inc., 1st Printing, 1983, pp.173~192.
- Straus, M. A.,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1, 1979.
- Tatara, *Elder Abuse in the United States: An Issue Paper*, Prepared for the Administration on Aging,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National Resource Center on Elder Abuse, 1990.

# 附 錄

附錄 1. 1999年度 老父母-子女關係 實態把握을  
위한 豫備 調查票

附錄 2. 1999年度 老父母-子女關係 實態調查票

附錄 3. 家庭暴力의 類型

〈附錄 1〉







180

〈附錄 2〉























〈附錄 3〉

家庭暴力的 類型

가. 일반적인 폭력

번호	내 용	번호	내 용
A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또는 행동	A4	손·발·몽둥이 등으로 때리는 행위
A2	물건을 던지는 행위	A5	몽둥이나 칼 등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A3	꼬집거나 할퀴는 행위	A6	몽둥이나 칼 등 흉기를 사용하는 행위

나. 노인학대 및 폭력

번호	내 용
C1	노인을 강제로 지하실이나 방에 가두는 행위
C2	노인을 강제로 의자나 침대에 묶어두는 행위
C3	노인을 밀어 넘어뜨리는 행위
C4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C5	스스로 식사준비를 할 수 없는 노인을 2~3일이상 혼자 집에 방치하는 행위
C6	부양자가 부양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노인에게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C7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행위
C8	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C9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C10	노인에게 집을 나가라는 폭언을 하는 행위
C11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는 행위
C12	노인이 보는 앞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면서 화풀이를 하는 행위
C13	노인을 향해 발을 구르거나 방문을 세게 닫는 등 거친 행동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C14	노인의 허락없이 부양자 마음대로 노인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과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행위
C15	연금이나 임대료 등 노인의 소득을 가족이나 친지가 가로채는 행위
C16	
C17	노인의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C18	노인에게서 빌린 노인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 행위
C19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행위
C20	부양자나 가족들이 노인에게 무관심하거나 냉담하게 대하는 행위
C21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보기, 보청기, 틀니 등 필수적인 보장구를 마련해 주지 않는 행위
C2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시지 않는 행위
C23	목욕이나 배변시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행위